제429회국회(정기회)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

# 2026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 교도작업특별회계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 【목　　차】

Ⅰ. 개　관 ····· 1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 1
가. 총수입·총지출 ····· 1
나. 예산안 ····· 2
다. 기금운용계획안 ····· 3
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 4
(1) 2026년도 예산안의 특징 ····· 4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특징 ····· 5
2. 일반회계 ····· 6
가. 세　입 ····· 6
나. 세　출 ····· 7
(1) 지출성질별·프로그램별 내역 ····· 7
(2) 증액사업 ····· 9
(3) 감액사업 ····· 10
(4) 세부사업별 주요사업비 현황 ····· 11
3. 교도작업특별회계 ····· 16
가. 세　입 ····· 16
나. 세　출 ····· 17
4.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19
가. 수　입 ····· 19
나. 지　출 ····· 20

Ⅱ. 검토의견 ····· 23
1. 일반회계 ····· 23
◈ 세 입 ◈ ····· 23
(1) 총 괄 ····· 23
▢ 일부 세입항목에 대한 예산안 추계방식 재검토 필요 ····· 25
(2) 면허료 및 수수료(65-651) ····· 28
▢ K-ETA 면제 연장을 반영한 세입예산안 감액조정 필요 ····· 29
(3)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65-651) ····· 31
▢ 세입예산 과다편성 여부 점검 필요 ····· 32

◈ 세 출 ◈ ····· 35
가. 총괄 및 기획조정실 등 ····· 35
(1) 총 괄 ····· 35
▢ 실질적·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개선·보완 필요 ····· 35
▢ 업무용 전기차 비중 확대를 고려하여 유류비 감액 필요 ····· 44
(2)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0) ····· 48
▢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포상금 예산 집행 활성화 필요 ····· 49
(3)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7032-301) ····· 53
▢ 실제 집행방식에 맞는 워크숍 예산안 편성 필요 ····· 54
(4)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7037-300) ····· 57
▢ 홍보브로셔 제작 내실화 및 홍보 활성화 필요 ····· 58
(5) 법무부 기록관 운영(7039-302) ····· 61
▢ 타 예산을 여유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필요 예산을 통합·관리 필요 ···· 62

나. 법무실 ····· 65
(1) 공익법무관 운용에 관한 총괄적 검토 ····· 65

▢ 공익법무관 감소 대응방안 마련 필요 ····· 66
▢ 공익법무관의 실제 채용인원수에 따라 일부 예산 조정 필요 ····· 70
(2) 국가배상금 지급(1031-301) ····· 71
▢ 최근 과거사 사건의 항소포기를 감안하여 예산 증액 필요 ····· 71
(3) 기업환경지수 개선(1032-307) ····· 76
▢ 사업 간 연계 추진 등을 통한 집행관리 철저 필요 ····· 76
(4)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1038-305) ····· 82
▢ 해외출장 예산 편성 시 사전계획 수립 및 구체화 필요 ····· 82
(5) 법무실 기본경비(7011-201, 7011-253) ····· 87
▢ 조직개편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 반영 필요 ····· 87

**다. 인권국 ····· 92**
(1) 법률구조(1131-300) ····· 92
▢ 홍보 및 법계몽활동비 예산 자부담 검토 필요 ····· 93
(2) 인권교육(1133-300) ····· 98
▢ 인권감수성 훈련 임차료 예산절감 집행방안 마련 필요 ····· 99
(3) 아동인권 증진(1133-302) ····· 103
▢ 아동인권증진 교육예산의 비목변경 및 감액 검토 필요 ····· 103

**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108**
(1) 이민정책개발지원(1231-300) ····· 108
▢ 핵심사업이 결여된 세부사업 추진의 필요성 재점검 필요 ····· 109
▢ 출입국관리공무원 상호 교환프로그램 제도 운영 점검 필요 ····· 112
(2) 이민정책연구원운영(1231-302) ····· 115
▢ 이민정책연구원 임차료 예산편성액의 적정성 확인 필요 ····· 116
(3)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1232-305) ····· 119

▢ 신설 출입국정보화전산센터 화재 대비 시설 구축에 만전을 기할 필요 ····· 120
(4) 외국인보호관리(1233-300) ····· 123
▢ 보호외국인 의약품 구입 사업비 편성 적절성 점검 필요 ····· 124
(5) 외국인사회통합지원(1233-301) ····· 126
▢ 투자이민제도 실적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127
(6)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1233-304) ····· 131
▢ 한국이민재단 대행사업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 노력 필요 ····· 132
(7) 외국인본부 기본경비(7011-255) ····· 136
▢ 수요포럼 강연 활성화 필요 ····· 137
▢ 온라인미디어 다국어 번역·감수 예산 활용 다각화 검토 필요 ····· 138

**마. 검찰국 ····· 140**
(1) 검찰국 총괄 ····· 140
▢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설치 등 관련 예산안 검토 필요성 ····· 141
▢ 검찰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편성 현황 ····· 143
(2)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1333-302) ····· 147
▢ 영상녹화조사장비·시설 관련 비용 절감방안 검토 필요 ····· 148
(3)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1333-306),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1337-301) ····· 153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따른 공공요금 삭감 편성 재검토 필요 ····· 155
▢ 수사기록전자화 사업 예산안 산출근거 보완·제시 필요 ····· 159
(4) 형사부 등 수사지원(1335-301) 등 ····· 162
▢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을 실소요에 맞게 계상 필요 ····· 163
▢ 영장심의위원회 등 개최경비를 실소요에 맞게 감액조정 필요 ····· 167
(5) 공공수사(1335-302) ····· 171
▢ 국가보안유공자 등 포상금 감액조정 검토 필요 ····· 172
(6)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1335-303) ····· 176
▢ 특정범죄신고자구조금 감액조정 검토 필요 ····· 177

(7) 마약수사(1335-304) ····· 180
▢ 가상자산 추적도구 도입 예산안 신규편성 관련 신중검토 필요 ····· 181
(8)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1335-305) ····· 183
▢ 연례적 실적부진 내역사업에 대한 예산안 감액조정 검토 필요 ····· 184
(9) 형사보상(1337-302) ····· 187
▢ 형사보상금 예산안 편성규모 재검토 필요 ····· 188
(10)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총액, 7018-202) ····· 191
▢ 검찰청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 예산안 일부 감액조정 필요 ····· 192

**바. 국제법무국 ····· 195**
(1) 국제법무국 총괄 ····· 195
▢ 법무활동 프로그램으로의 통합에 신중할 필요 ····· 196
(2)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 지원(1032-300) ····· 199
▢ 해외진출기업 법률자문을 하나의 세부사업에 통합하여 지원할 필요 199
(3)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1032-301) ····· 204
▢ 유사 성격의 예산 통합 및 정비 노력 필요 ····· 205
(4)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ODA, 1032-302) ····· 208
▢ ODA 대상 국가 편중 문제 검토 필요 ····· 209

**사. 교정본부 ····· 212**
(1) 교도소 행정지원(1531-300) ····· 212
▢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운영경비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 ···· 212
(2)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1531-304) ····· 218
▢ 대체복무 예비군 훈련비 지급을 위한 적정예산 검토 필요 ····· 218
(3)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1532-300) ····· 223
▢ 가석방 활성화 등 수용시설 과밀화 해소 노력 필요 ····· 223

(4) 교정교화(1532-301) ····· 231
▢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은 신중할 필요 ····· 231

아. 범죄예방정책국 ····· 235
(1)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1631-304) ····· 235
▢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시설장비유지비 예산 배분의 균형성 제고 필요 ····· 236
(2) 소년원생수용(1632-300) ····· 239
▢ 소년 수용인원 증가추세를 고려한 적정예산 편성 필요 ····· 240
▢ 급식관리위원회 및 채용관련 회의 외부위원 참석 활성화에 따른 예산집행률 제고 필요 ····· 243
▢ 출원생 외래진료비 지원 활성화 필요 ····· 249
(3) 갱생보호활동(1633-300) ····· 252
▢ 전남기술교육원 건립사업의 면밀한 사업계획수립 등 집행관리 철저 필요 ··· 253
(4) 보호관찰활동(1635-300) ····· 257
▢ 위기상황자 심리치료비 지원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 마련 필요 ····· 257

자. 법무연수원 ····· 262
(1) 법무·검찰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5131-301) ····· 262
▢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 예산 편성 및 표절 논문 관리 철저 필요 ··· 263

2. 교도작업특별회계 ····· 266
(1) 교도작업(1535-300) ····· 266
▢ 공무직 근로자 처우개선 등 채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266
(2) 시설보완(1535-302) ····· 271
▢ 여성수형자 교도작업장 확대방안 모색 필요 ····· 271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276
(1)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1135-301) ····· 276
▢ 형사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한 관련 예산 계상 필요 ····· 277
▢ 공증수수료 예산 증액 검토 및 집행률 개선방안 마련 필요 ····· 279
(2)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1135-300) ····· 282
▢ 원스톱솔루션센터 설치·운영의 성과관리 시스템 마련 필요 ····· 283
▢ 원스톱솔루션센터 추가 개소 예산 미반영으로 인한 사업 차질 우려 해소 필요 ····· 286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일정 지연 예상에 따른 예산액 조정 필요 ····· 288

# Ⅰ. 개 관

##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법무부 소관 총수입은 1조 6,421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83억원(1.8%) 증가함. 세부적으로, 예산은 1조 6,362억원으로 전년 대비 279억원(1.7%) 증가하고, 기금은 6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억원(6.0%) 증가함.

2026년도 법무부 소관 총지출은 4조 6,973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253억원(5.0%) 증가함. 세부적으로, 예산은 4조 5,948억원으로 전년 대비 2,174억원(5.0%) 증가하고, 기금은 1,025억원으로 전년 대비 79억원(8.4%) 증가함.

**<2026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수입 · 총지출(내부거래 제외)>**

(단위: 백만원, %)

| 구 분 | | 2025년 예산·기금 | | 2026년 예산·기금(안)(B) | 2025년 대비 | |
|---|---|---|---|---|---|---|
| | | 본예산 | 추경(A) | | 증감(B-A) | % |
| 수입 | 예산 | 1,608,229 | 1,608,229 | 1,636,153 | 27,924 | 1.7 |
| | 기금 | 5,613 | 5,613 | 5,950 | 337 | 6.0 |
| | 계 | 1,613,842 | 1,613,842 | 1,642,103 | 28,261 | 1.8 |
| 지출 | 예산 | 4,322,718 | 4,377,413 | 4,594,779 | 217,366 | 5.0 |
| | 기금 | 94,593 | 94,593 | 102,533 | 7,940 | 8.4 |
| | 계 | 4,417,311 | 4,472,006 | 4,697,312 | 225,306 | 5.0 |

* 자료: 법무부

## 나. 예산안

일반회계와 교도작업특별회계를 포괄하는 2026년도 법무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1조 6,991억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317억 5,300만원(1.9%) 증액되었음.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5,688억 3,2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 1조 5,436억 8,300만원 대비 1.6%에 해당하는 251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음.

2026년도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302억 8,4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 1,236억 8,000만원 대비 5.3%에 해당하는 66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와 교도작업특별회계를 포괄하는 2026년도 법무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4조 7,378억 3,4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약 2,190억 3,200만원(4.8%) 증액되었음.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조 6,075억 5,000만원으로, 2025년도 추경예산 4조 3,951억 2,200만원 대비 4.8%에 해당하는 2,124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음.

2026년도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302억 8,4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 1,236억 8,000만원 대비 5.3%에 해당하는 66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음.

<2026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 분 | | 2025년 예산 | | 2026년 예산안(B) | 2025년 대비 | |
|---|---|---|---|---|---|---|
| | | 본예산 | 추경(A) | | 증감(B-A) | % |
| 세입 | 일반회계 | 1,543,683 | 1,543,683 | 1,568,832 | 25,149 | 1.6 |
| | 교도작업특별회계 | 123,680 | 123,680 | 130,284 | 6,604 | 5.3 |
| | 계 | **1,667,363** | **1,667,363** | **1,699,116** | **31,753** | **1.9** |
| 세출 | 일반회계 | 4,340,427 | 4,395,122 | 4,607,550 | 212,428 | 4.8 |
| | 교도작업특별회계 | 123,680 | 123,680 | 130,284 | 6,604 | 5.3 |
| | 계 | **4,464,107** | **4,518,802** | **4,737,834** | **219,032** | **4.8** |

* 자료: 법무부 (총계 기준)

## 다. 기금운용계획안

법무부 소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수입·지출액은 1,451억 4,200만원으로 2025년도 수입·지출액 1,448억 7,700만원 대비 0.2%에 해당하는 2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음.

<2026년도 법무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범죄피해자보호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년 | | 2026년 계획안(B) | 2025년 대비 | |
|---|---|---|---|---|---|
| | 당초 | 수정(A) | | 증감(B-A) | % |
| 수 입 | 144,877 | 144,877 | **145,142** | 265 | 0.2 |
| 지 출 | 144,877 | 144,877 | **145,142** | 265 | 0.2 |

* 자료: 법무부 (총계 기준)

## 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 (1) 2026년도 예산안의 특징

법무부는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편성방향으로 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②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③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환경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국민 안전을 위해 재범 고위험군 등 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청소년 범죄 특성을 고려한 소년사법 집행 체계 개선 등 범죄예방 통합체계를 구축하며 마약류 전담 교정시설과 보이스피싱 '찐센터' 등 피해 예방 제고를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음.

둘째, 취약 계층 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 생활안정비 등 생계지원을 강화, 심리치료 주말·야간 확대와 살인유가족 프로그램으로 온전한 회복을 실현하며, 인공지능 기반 법무행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 범죄예방 정책 고도화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음.

셋째, 현장 인력을 중심으로 수당·활동비·안전장비 지원을 확대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화재·지진 등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여성 수유실과 성별 구분된 휴게실 등 인권 친화적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음.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특징

2026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지원 확대 및 심리 서비스 강화 등으로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사업의 예산을 2025년 214억 4,200만원에서 2026년 278억 2,300만원으로 증액하였음.

둘째, 범죄피해구조금 사업의 예산을 2025년 95억 7,300만원에서 2026년 117억 8,100만원으로 증액하였음.

셋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의 예산을 2025년 394억 1,300만원에서 2026년 403억 9,400만원으로 증액하였음.

## 2. 일반회계

### 가. 세 입

2026년도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조 5,688억 3,200만원은 2025년도 예산 1조 5,436억 8,300만원 대비 1.6% 증액 계상된 것임.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음.

-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1조 4,804억 3,300만원
- 면허료 및 수수료 740억 8,100만원
- 기타경상이전수입 90억 9,400만원
- 관유물 대여료 14억 1,900만원
- 기 타 35억 500만원

**<2026년도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년 예산(A) | 2026년 예산안(B) | 2025년 대비 | |
|---|---|---|---|---|
| | | | 증감(B-A) | % |
| **합 계** | **1,543,683** | **1,568,832** | **25,149** | **1.6** |
|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 1,471,967 | 1,480,433 | 8,466 | 0.6 |
| 면허료 및 수수료 | 59,307 | 74,081 | 14,774 | 24.9 |
| 기타경상이전수입 | 7,945 | 9,094 | 1,149 | 14.5 |
| 관유물 대여료 | 1,111 | 1,419 | 308 | 27.7 |
| 기타 | 3,353 | 3,805 | 452 | 13.5 |

* 자료: 법무부

## 나. 세　출

### (1) 지출성질별·프로그램별 내역

2026년도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조 6,075억 5,000만원은 2025년도 추경예산 4조 3,951억 2,200만원 대비 4.8% 증액 계상된 것임.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출성질별로 인건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 기금전출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 | |
|---|---|---|
| - 인건비 | 2조 7,653억 5,800만원 | (비중: 60.0%) |
| - 기본경비 | 1,691억 6,100만원 | (비중: 3.7%) |
| - 주요사업비 | 1조 5,818억 8,500만원 | (비중: 34.3%) |
| - 기금전출금 | 911억 4,600만원 | (비중: 2.0%) |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업비는 총 9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 | |
|---|---|---|
| - 법무활동 | 1,738억 2,200만원 | (비중: 3.8%) |
| - 인권활동 | 718억 9,100만원 | (비중: 1.6%) |
| - 출입국관리 | 1,871억 7,800만원 | (비중: 4.1%) |
| - 검찰활동 | 3,592억 7,100만원 | (비중: 7.8%) |
| - 교정활동 | 4,734억 800만원 | (비중: 10.3%) |
| - 범죄예방활동 | 1,805억 300만원 | (비중: 3.9%) |
| - 특별감찰관활동 | 4억 400만원 | (비중: 0.0%) |
| - 법무교육훈련 | 83억 3,500만원 | (비중: 0.2%) |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1,270억 7,300만원 | (비중: 2.8%) |

## <2026년도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계상내역 및 전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년 예산 | | | 2026년 예산(안) (B) | | 2025년 대비 | |
|---|---|---|---|---|---|---|---|
| | 본예산 | 비중 | 추경(A) | | 비중 | 증감(B-A) | 증감율 |
| 합 계 | 4,340,427 | 100.0 | 4,395,122 | 4,607,550 | 100.0 | 212,428 | 4.8 |
| ◇ 인 건 비 | 2,661,080 | 61.3 | 2,661,080 | 2,765,358 | 60.0 | 104,278 | 3.9 |
| ◇ 기 본 경 비 | 167,311 | 3.9 | 167,311 | 169,161 | 3.7 | 1,850 | 1.1 |
| ◇ 주요사업비 | 1,423,274 | 32.8 | 1,477,969 | 1,581,885 | 34.3 | 103,916 | 7.0 |
| ■ 법무활동 | 159,373 | 3.7 | 159,373 | 173,822 | 3.8 | 14,449 | 9.1 |
| ■ 인권활동 | 73,162 | 1.7 | 73,162 | 71,891 | 1.6 | △1,271 | △1.7 |
| ■ 출입국관리 | 162,914 | 3.8 | 162,914 | 187,178 | 4.1 | 24,264 | 14.9 |
| ■ 검찰활동 | 294,858 | 6.8 | 349,553 | 359,271 | 7.8 | 9,718 | 2.8 |
| ■ 교정활동 | 456,158 | 10.5 | 456,158 | 473,408 | 10.3 | 17,250 | 3.8 |
| ■ 범죄예방활동 | 171,584 | 4.0 | 171,584 | 180,503 | 3.9 | 8,919 | 5.2 |
| ■ 특별감찰관활동 | 404 | 0.0 | 404 | 404 | 0.0 | - | - |
| ■ 법무교육훈련 | 8,159 | 0.2 | 8,159 | 8,335 | 0.2 | 176 | 2.2 |
| ■ 행정지원 | 96,662 | 2.2 | 96,662 | 127,073 | 2.8 | 30,411 | 31.5 |
| ◇ 기금전출금 | 88,762 | 2.0 | 88,762 | 91,146 | 2.0 | 2,384 | 2.7 |

* 자료: 법무부

### (2) 증액사업

2026년도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사업 중 주요 증액사업은 다음과 같음.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1038-301) 사업 예산이 전송형 전자영장시스템 구축을 위해 271억 6,600만원 증액되었음(증가율 130.9%).

-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1033-305) 사업이 전자중재시스템 구축으로 18억 6,100만원 증액되었음(증가율 71.7%).

- 재범징후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기술 연구개발사업(R&D)(1631-305)이 개인 일상모델 기반 일탈탐지 AI전자감독 기술개발로 10억원 증액되었음(증가율 50.0%).

**<2026년도 주요 증액사업(2025년도 예산 대비 50% 이상)>**

(단위: 백만원, %)

| 연번 |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 2025년 예산 | | 2025년 예산안 (B) | 증액 규모 (B-A) | 증액율 (%) (B-A)/A | 증액사유 |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1 | 차세대형사사법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7038-301) | 20,751 | 20,751 | 47,917 | 27,166 | 130.9 | 전송형 전자영장시스템 구축 |
| 2 | 성장동력확충을위한기업법제선진화(1033-304) | 2,595 | 2,595 | 4,456 | 1,861 | 71.7 | 전자중재시스템 구축 |
| 3 | 재범징후선제적감지및대응력강화기술연구개발사업(R&D)(1631-305) | 2,000 | 2,000 | 3,000 | 1,000 | 50.0 | 개인 일상모델 기반 일탈탐지 AI전자감독 기술개발 |

* 자료: 법무부

### (3) 감액사업

2026년도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사업 중 주요 감액사업은 다음과 같음.

- 국제형사협력지원(ODA)(1333-303) 사업 예산이 유사사업 통·폐합 등으로 3억 8,100만원 감액되었음(감액율 15.2%).

- 국가송무수행및공익법무관운영(1031-300) 사업 예산이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등으로 4억 1,800만원 감액되었음(감액율 14.1%).

- 법무부 기록관 운영(7039-302) 사업 예산이 기록물 보존 장비 도입 완료 등으로 7억 6,900만원 감액되었음(감액율 13.8%).

**<2026년도 주요 감액사업(2025년도 예산 대비 감액율 순)>**

(단위: 백만원, %)

| 연번 |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 2025년 예산 | | 2026년 예산안 (B) | 감액 규모 (B-A) | 감액율 (%) (B-A)/A | 감액사유 |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1 | 국제형사 협력지원(ODA) (1333-303) | 2,509 | 2,509 | 2,128 | △381 | △15.2 | 유사사업 통·폐합 |
| 2 |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운영 (1031-300) | 2,961 | 2,961 | 2,543 | △418 | △14.1 |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
| 3 | 법무부 기록관 운영 (7039-302) | 5,566 | 5,566 | 4,797 | △769 | △13.8 | 기록물 보존 장비 도입 완료 |

* 자료: 법무부

### (4) 세부사업별 주요사업비 현황

2026년도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세부사업별 주요사업비 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법무활동, 인권활동, 출입국관리, 검찰활동, 교정활동, 범죄예방활동, 특별감찰관활동, 법무교육훈련,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등 9개 프로그램 하에 세부사업 77개가 있음.

**<2026년도 세부사업별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 부 사 업 명 | 2025 예산 | | 2026 예산(안) (B) | 2025 대비 | |
|---|---|---|---|---|---|
| | 본예산 | 추경(A) | | 증△감 (B-A) | (%) |
| **합 계** | **1,423,274** | **1,477,969** | **1,581,885** | **158,611** | **11.1** |
| **법무활동** | **159,373** | **159,373** | **173,822** | **14,449** | **9.1** |
|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 2,961 | 2,961 | 2,543 | △418 | △14.1 |
| 국가배상금 지급 | 131,765 | 131,765 | 144,835 | 13,070 | 9.9 |
|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 | 678 | 678 | 702 | 24 | 3.5 |
|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 지원 | 516 | 516 | 510 | △6 | △1.2 |
|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 734 | 734 | 742 | 8 | 1.1 |
|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ODA) | 150 | 150 | 216 | 66 | 44.0 |
|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 4,717 | 4,717 | 4,723 | 6 | 0.1 |
| 기업환경지수개선 | 2,653 | 2,653 | 2,653 | - | - |
|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 4,659 | 4,659 | 4,554 | △105 | △2.3 |
| 성장동력확충을위한 기업법제선진화 | 2,595 | 2,595 | 4,456 | 1,861 | 71.7 |
|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 | 826 | 826 | 947 | 121 | 14.6 |

(단위 : 백만원)

| 세 부 사 업 명 | 2025 예산 | | 2026 예산(안) (B) | 2025 대비 | |
|---|---|---|---|---|---|
| | 본예산 | 추경(A) | | 증△감 (B-A) | (%) |
| 변호사제도의선진화 | 779 | 779 | 767 | △12 | △1.5 |
|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 5,283 | 5,283 | 5,109 | △174 | △3.3 |
| 통일대비법률통합 실질화 | 771 | 771 | 774 | 3 | 0.4 |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 286 | 286 | 291 | 5 | 1.7 |
| **인권활동** | **73,162** | **73,162** | **71,891** | **△1,271** | **△1.7** |
| 법률구조 | 67,337 | 67,337 | 65,470 | △1,867 | △2.8 |
|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 5,143 | 5,143 | 5,718 | 575 | 11.2 |
| 인권교육 | 191 | 191 | 192 | 1 | 0.5 |
| 아동인권증진 | 245 | 245 | 245 | - | - |
| 국제인권 역량강화 | 246 | 246 | 266 | 20 | 8.1 |
| **출입국관리** | **162,914** | **162,914** | **187,178** | **24,264** | **14.9** |
| 이민정책개발지원 | 190 | 190 | 196 | 6 | 3.2 |
| 이민정책연구원운영 | 3,455 | 3,455 | 3,786 | 331 | 9.6 |
| 출입국외국인관서 시설운영 | 55,163 | 55,163 | 63,354 | 8,191 | 14.8 |
| 외국인등록증발급 수입대체경비 | 9,849 | 9,849 | 10,000 | 151 | 1.5 |
|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 30,410 | 30,410 | 41,015 | 10,605 | 34.9 |
| 외국인보호관리 | 21,372 | 21,372 | 23,961 | 2,589 | 12.1 |
| 외국인사회통합지원 | 17,639 | 17,639 | 19,509 | 1,870 | 10.6 |
|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 10,927 | 10,927 | 11,402 | 475 | 4.3 |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운영 | 13,909 | 13,909 | 13,955 | 46 | 0.3 |
| **검찰활동** | **294,858** | **349,553** | **359,271** | **9,718** | **2.8** |

(단위 : 백만원)

| 세 부 사 업 명 | 2025 예산 | | 2026 예산(안) (B) | 2025 대비 | |
|---|---|---|---|---|---|
| | 본예산 | 추경(A) | | 증△감 (B-A) | (%) |
| 검찰청시설운영 | 82,703 | 82,703 | 83,131 | 428 | 0.5 |
|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 7,957 | 7,957 | 7,937 | △20 | △0.3 |
| 과학수사인프라구축 | 12,097 | 12,250 | 11,410 | △840 | △6.9 |
| 국제형사협력지원 (ODA) | 2,509 | 2,509 | 2,128 | △381 | △15.2 |
|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 19,187 | 23,967 | 29,538 | 5,571 | 23.2 |
| 첨단기술 융합형 차세대 검찰 Forensic 기술연구개발(R&D) | 2,400 | 2,400 | 2,200 | △200 | △8.3 |
|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 33,339 | 33,339 | 29,307 | △4,032 | △12.1 |
|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정보화) | 9,861 | 10,004 | 12,427 | 2,423 | 24.2 |
| 형사부 등 수사지원 | 47,838 | 85,664 | 88,940 | 3,276 | 3.8 |
| 공공수사 | 1,346 | 3,246 | 3,238 | △8 | △0.2 |
|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 9,918 | 14,456 | 15,726 | 1,270 | 8.8 |
| 마약수사 | 7,823 | 9,584 | 10,591 | 1,007 | 10.5 |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 2,760 | 3,702 | 3,787 | 85 | 2.3 |
|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 4,858 | 6,124 | 6,158 | 34 | 0.6 |
| 공판활동지원 | 1,265 | 2,037 | 1,928 | △109 | △5.4 |
| 형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 | 6,648 | 7,262 | 6,476 | △786 | △10.8 |
| 형사보상 | 42,000 | 42,000 | 44,000 | 2,000 | 4.8 |
| 형사법정비 | 349 | 349 | 349 | - | - |
| **교정활동** | **456,158** | **456,158** | **473,408** | **17,250** | **3.8** |
| 교도소행정지원 | 51,516 | 51,516 | 52,223 | 707 | 1.4 |
|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 85,596 | 85,596 | 91,017 | 5,421 | 6.3 |

(단위 : 백만원)

| 세 부 사 업 명 | 2025 예산 | | 2026 예산(안) (B) | 2025 대비 | |
|---|---|---|---|---|---|
| | 본예산 | 추경(A) | | 증△감 (B-A) | (%) |
| 대체복무시설개선 및 운영 | 17,241 | 17,241 | 14,926 | △2,315 | △13.4 |
| 교정시설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 290,348 | 290,348 | 302,342 | 11,994 | 4.1 |
| 교정교화 | 11,457 | 11,457 | 12,900 | 1,443 | 12.6 |
| **범죄예방활동** | **171,584** | **171,584** | **180,503** | **8,919** | **5.2** |
|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 | 17,373 | 17,373 | 19,554 | 2,181 | 12.6 |
| 재범장후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기술 연구개발사업(R&D) | 2,000 | 2,000 | 3,000 | 1,000 | 50.0 |
| 소년원생수용 | 26,971 | 26,971 | 28,516 | 1,545 | 5.7 |
| 청소년비행예방 | 5,577 | 5,577 | 5,656 | 79 | 1.4 |
| 갱생보호활동 | 46,856 | 46,856 | 48,468 | 1,612 | 3.4 |
| 치료감호자수용관리 | 12,581 | 12,581 | 14,770 | 2,189 | 17.4 |
| 보호관찰활동 | 17,102 | 17,102 | 17,595 | 493 | 2.9 |
| 전자감독 | 36,847 | 36,847 | 37,266 | 419 | 1.1 |
|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 6,277 | 6,277 | 5,678 | △599 | △9.5 |
| **특별감찰관활동** | **404** | **404** | **404** | **-** | **-** |
| 특별감찰활동 | 404 | 404 | 404 | - | - |
| **법무교육훈련** | **8,159** | **8,159** | **8,335** | **176** | **2.2** |
| 연수원 시설관리 및 운영 | 5,437 | 5,437 | 5,611 | 174 | 3.2 |
| 법무검찰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 1,577 | 1,577 | 1,579 | 2 | 0.1 |
|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 | 137 | 137 | 137 | - | - |
| 신임검사 양성 및 교육 지원 | 1,008 | 1,008 | 1,008 | - | - |
| **법무 및 검찰 행정지원** | **96,662** | **96,662** | **127,073** | **30,411** | **31.5** |

(단위 : 백만원)

| 세 부 사 업 명 | 2025 예산 | | 2026 예산(안) (B) | 2025 대비 | |
|---|---|---|---|---|---|
| | 본예산 | 추경(A) | | 증△감 (B-A) | (%) |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 608 | 608 | 608 | - | - |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 120 | 120 | 120 | - | - |
| 행정서비스지원 인력경비 | 20,107 | 20,107 | 20,436 | 329 | 1.6 |
| 정보기획지원 | 37 | 37 | 37 | - | - |
| 양성평등정책 지원 | 233 | 233 | 213 | △20 | △8.6 |
|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 41,485 | 41,485 | 44,554 | 3,069 | 7.4 |
|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강화 | 811 | 811 | 848 | 37 | 4.6 |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정보화) | 2,803 | 2,803 | 2,442 | △361 | △12.9 |
| 차세대형사사법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 20,751 | 20,751 | 47,917 | 27,166 | 130.9 |
| 기타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 4,141 | 4,141 | 5,101 | 960 | 23.2 |
| 법무부 기록관 운영 | 5,566 | 5,566 | 4,797 | △769 | △13.8 |

## 3. 교도작업특별회계

교도작업특별회계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교도작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1]에 근거를 두고 있음.

### 가. 세 입

2026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 1,302억 8,400만원은 2025년도 예산액 1,236억 8,000만원 대비 5.3%(66억 400만원)가 증액된 것이며,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 | | |
|---|---|---|
| - 교도소수입 | 671억 1,800만원 | (4.3% 증) |
| - 기금예탁원금회수 | 495억 원 | (5.3% 증) |
| - 전년도세계잉여금 | 111억 6,800만원 | (19.0% 증) |
| - 기금예탁이자수입 | 22억 9,500만원 | (16.4% 감) |
| - 기타경상이전수입 | 1억 300만원 | (전년동) |
| - 잡수입 | 1억 원 | (전년동) |

---

1)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8조(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운용) ① 교도작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무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그 밖에 교도작업에 부수되는 수입금
2. 제10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11조에 따른 차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작업의 관리, 교도작업 관련 시설의 마련 및 유지·보수, 그 밖에 교도작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2항의 작업장려금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위로금 및 조위금
4. 수용자의 교도작업 관련 직업훈련을 위한 경비

<2026년도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년 예산(A) | 2026년 예산(안)(B) | 2025년 대비 | |
|---|---|---|---|---|
| | | | 증감 (B-A) | % |
| **합 계** | **123,680** | **130,284** | **6,604** | **5.3** |
| 교도소수입 | 64,343 | 67,118 | 2,775 | 4.3 |
| 잡수입 | 100 | 100 | -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 103 | 103 | - | - |
| 전년도세계잉여금 | 9,388 | 11,168 | 1,780 | 19.0 |
| 기금예탁원금회수 | 47,000 | 49,500 | 2,500 | 5.3 |
| 기금예탁이자수입 | 2,746 | 2,295 | △451 | △16.4 |

* 자료: 법무부

## 나. 세 출

2026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 1,302억 8,400만원은 2025년도 예산액 1,236억 8,000만원 대비 5.3%(66억 400만원)가 증액된 것이며,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교도작업 650억 400만원 (4.7% 증)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 519억 900만원 (1.4% 감)
- 시설보완 75억 7,000만원 (94.3% 증)
- 직업훈련 51억 4,900만원 (17.0% 증)
- 기본경비 6억 5,200만원 (전년동)

## <2026년도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년 예산(A) | 2026년 예산(안)(B) | 2025년 대비 | |
|---|---|---|---|---|
| | | | 증감 (B-A) | % |
| **합 계** | **123,680** | **130,284** | **6,604** | **5.3** |
| 교도작업 | 62,105 | 65,004 | 2,899 | 4.7 |
| 직업훈련 | 4,399 | 5,149 | 750 | 17.0 |
| 시설보완 | 3,897 | 7,570 | 3,673 | 94.3 |
| 기본경비 | 652 | 652 | - | - |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 | 52,627 | 51,909 | △718 | △1.4 |

* 자료: 법무부

## 4.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2]에 근거를 두고 있음.

### 가. 수 입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 수입액은 1,451억 4,200만원으로 2025년도 수입액 1,448억 7,700만원 대비 0.2%(2억 6,5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 | | |
|---|---|---|
| - 일반회계전입금 | 911억 4,600만원 | (2.7% 증) |
|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480억 4,600만원 | (4.9% 감) |
| - 기타경상이전수입 | 31억 900만원 | (1.7% 감) |
| - 변상금 | 18억 1,800만원 | (5.8% 증) |
| - 기타재산이자수입 | 10억 2,300만원 | (40.1% 증) |

2)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3.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2026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수입액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년 기금 (A) | 2026년 기금(안) (B) | 2025년 대비 | |
|---|---|---|---|---|
| | | | 증감(B-A) | % |
| 합 계 | 144,877 | 145,142 | 265 | 0.2 |
| 기타재산이자수입 | 730 | 1,023 | 293 | 40.1 |
| 변상금 | 1,719 | 1,818 | 99 | 5.8 |
| 기타경상이전수입 | 3,164 | 3,109 | △55 | △1.7 |
| 일반회계전입금 | 88,762 | 91,146 | 2,384 | 2.7 |
| 예치금회수 | 50,502 | 48,046 | 4,500 | △4.9 |

* 자료: 법무부

## 나. 지 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 지출액은 1,451억 4,200만원으로 2025년도 지출액 1,448억 7,700만원 대비 0.2%(2억 6,5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지출유형별로는 다음과 같음.

- 주요사업비 1,024억 7,300만원 (8.4% 증)
- 통화금융기관 예치 426억 900만원 (11.3% 감)
- 기금운영비 6,000만원 (25.0% 증)

한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사업비 1,024억 7,300만원은 세부적으로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 2가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프로그램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전년 대비 20.7% 증액된 482억 8,100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범죄피해구조금 확대 등에 기인함.

-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전년 대비 0.6% 감액된 541억 9,200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당 감액 등에 기인함.

## <2026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비 증감내역>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년 기금(A) | 2026년 기금(안)(B) | 2025년 대비 | |
|---|---|---|---|---|
| | | | 증감(B-A) | % |
| **합 계** | **144,877** | **145,142** | **265** | **0.2** |
| **◇ 주요사업비** | **94,545** | **102,473** | **7,928** | **8.4** |
| **<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 **40,005** | **48,281** | **8,276** | **20.7** |
|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 21,442 | 27,823 | 6,381 | 29.8 |
| ■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 3,450 | 3,277 | △173 | △5.0 |
| ■ 범죄피해구조금 | 9,573 | 11,781 | 2,208 | 23.1 |
| ■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 5,540 | 5,400 | △140 | △2.5 |
| **<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 **54,540** | **54,192** | **△348** | **△0.6** |
| ■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 1,632 | 1,653 | 21 | 1.3 |
|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39,413 | 40,394 | 981 | 2.5 |
|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 13,495 | 12,145 | △1,350 | △10.0 |
| **◇ 기금운영비** | **48** | **60** | **12** | **25.0** |
| **◇ 통화금융기관 예치** | **48,039** | **42,609** | **△5,430** | **△11.3** |
|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원금 상환** | **2,230** | **-** | **△2,230** | **순감** |
|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이자 상환** | **15** | **-** | **△15** | **순감** |

* 자료: 법무부

# Ⅱ. 검토의견

## 1. 일반회계

### ◈ 세 입 ◈

#### (1) 총 괄

▢ 예산안 개요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 대부분은 형사재판 등에 따른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56)’가 차지하고, 그 외 각종 출입국 관련 수수료 등을 포함한 ‘면허료 및 수수료(65)’와 관사 임차보증금 회수액 등을 포함한 ‘기타경상이전수입(59)’ 등으로 구성됨.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251억 4,900만원(1.6%) 증액된 1조 5,688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 | 2025 | | 2026 | | |
|---|---|---|---|---|---|---|
| | 결산 | 본예산 | 추경예산 (A) |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세입 총계 | 1,514,352 | 1,543,683 | 1,543,683 | **1,568,832** | 25,149 | 1.6 |
| ・토지대여료 (51-511) | 365 | 485 | 485 | **699** | 214 | 44.1 |
| ・건물대여료 (51-512) | 694 | 613 | 613 | **703** | 90 | 14.7 |

| 사업명 | 2024 | 2025 | | 2026 | | |
|---|---|---|---|---|---|---|
| | 결산 | 본예산 | 추경예산 (A) |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기타관유물대여료 (51-513) | 13 | 13 | 13 | 17 | 4 | 30.8 |
|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 1,106 | 264 | 264 | 1,106 | 842 | 318.9 |
| ・기타재산이자외수입 (54-547) | 79 | 51 | 51 | 61 | 10 | 19.6 |
| ・벌금 및 과료 (56-561) | 1,302,066 | 1,337,329 | 1,337,329 | 1,337,329 | - | - |
| ・몰수금 및 추징금 (56-562) | 147,006 | 123,093 | 123,093 | 130,898 | 7,805 | 6.3 |
| ・과태료 (56-563) | 11,124 | 11,514 | 11,514 | 12,167 | 653 | 5.7 |
| ・징계부과금 (56-564) | 61 | 31 | 31 | 39 | 8 | 25.8 |
| ・변상금 (57-571) | 83 | 202 | 202 | 252 | 50 | 24.8 |
| ・위약금 (57-572) | 766 | 1,826 | 1,826 | 1,296 | △530 | △29.0 |
| ・가산금 (58-581) | 10 | 2 | 2 | 4 | 2 | 100.0 |
|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 6,884 | 7,945 | 7,945 | 9,094 | 1,149 | 14.5 |
| ・면허료 및 수수료 (65-651) | 23,925 | 32,427 | 32,427 | 47,919 | 15,492 | 47.8 |
| ・기타잡수입 (69-691) | 821 | 871 | 871 | 935 | 64 | 7.3 |
|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대체경비, 65-651) | 19,195 | 26,881 | 26,881 | 26,162 | △718 | △2.7 |
| ・기타잡수입 (수입대체경비, 69-691) | 147 | 137 | 137 | 151 | 14 | 10.2 |
| ・기타고정자산매각대 (71-713) | 8 | - | - | - | - | - |

### ▢ 일부 세입항목에 대한 예산안 추계방식 재검토 필요

세입예산안 편성은 최근 세입실적과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고, 향후 세입전망 등 주요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그러나 법무부는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 시 다수 세입항목을 합리적 근거 없이 과다추계한 문제가 있음.

먼저, 토지대여료(51-511)의 경우 지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는 “최근 3년간 실제 수납 평균”을 고려하여 4억 8,5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그 추계기준을 “2022년~2024년 편성 수준”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6억 9,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음.[3)]

**<토지대여료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2026년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B) | 수납액(C) | 수납률(C/A) | 수납률(C/B) | 미수납액 | 불납결손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2022 | 699 | 699 | 699 | 679 | 542 | 77.5 | 79.8 | 137 | - |
| 2023 | 699 | 699 | 699 | 662 | 477 | 68.2 | 72.1 | 185 | - |
| 2024 | 699 | 699 | 699 | 464 | 365 | 52.2 | 78.7 | 98 | - |
| 2025.7. | 485 | 485 | 485 | 290 | 200 | 41.2 | 69.0 | 90 | - |
| 2026(안) | 699 | - | | | | | | | |

자료: 법무부

3) 법무부는 이에 대하여 전기차충전소 확대에 따른 토지대여료 증가 예상,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독촉장 발급·소송 등을 통한 장기·과다 미수납액 해소 노력 등 적극적 세입관리 의지를 추가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임.

그러나 최근 4년간 토지대여료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5억 4,200만원, 2023년 4억 7,700만원을 수납하였고, 2024년에는 예산액 절반 수준인 3억 6,500만원 수납에 그쳤으며, 2025년도는 7월 기준 수납액이 2억원 수준으로 나타남.

이러한 최근 수납 추세를 고려한다면, 2026년도 토지대여료 세입예산안을 "2022년~2024년 편성 수준" 기준으로 추계함으로써 6억 9,900만 규모로 증액 편성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과다편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마찬가지로, 2023년 및 2024년 수납실적이 각각 59억 8,300만원 및 68억 8,400만원 수준이었던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의 2026년도 예산안을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2024년 편성 수준"만 고려하여 90억 9,400만원 규모로 추계한 것이나, 2023년 및 2024년 수납실적이 각각 1억 1,400만원 및 8,300만원 수준이었던 변상금(57-571)의 2026년도 세입예산안을 "2024년 편성 수준"만 고려하여 2억 5,200만원 규모로 추계한 것 또한 모두 합리적 근거 없이 세입예산안을 과다편성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4)]

세입예산의 과다편성은 국가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예측가능성 저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재정수입이 예산상 추계에 미달할 가능성을 높

4) 그 밖에도 법무부는 건물대여료(51-512), 기타관유물대여료(51-513), 몰수금 및 추징금(56-562), 과태료(56-563) 등에 대하여 세입예산안 추계를 기존의 '실적' 기준이 아니라 최근 '편성' 기준 등으로 변경하여 세입예산안을 증액 편성하였음.

여, 결과적으로 세출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거나 차입·국채발행과 같은 불필요한 추가 재원조달 등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합리적 근거 없이 추계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최근 실적 등에 비하여 과다편성한 위 세입항목들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으로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2) 면허료 및 수수료(65-651)

### ▢ 예산안 개요

‘면허료 및 수수료’는 변호사시험·법조윤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응시수수료, 전자여행허가제(K-ETA)에 따른 허가증 발급수수료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수수료 등 수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4억 9,200만원(47.8%) 증액된 479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 | 2025 | | 2026 | | |
|---|---|---|---|---|---|---|
| | 결산 | 본예산 | 추경예산 (A) |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면허료 및 수수료 | 23,925 | 32,427 | 32,427 | **47,919** | 15,492 | 47.8 |
| ·변호사시험 응시수수료 등 | 14,282 | 11,613 | 11,613 | **13,319** | 1,706 | 14.7 |
| ·전자여행허가제 수수료 등 | 9,643 | 20,814 | 20,814 | **30,400** | 9,586 | 46.1 |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수수료 등 | - | - | - | **4,200** | 4,200 | 순증 |

### ▢ K-ETA 면제 연장을 반영한 세입예산안 감액조정 필요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입국 시 우리나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 국가의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려는 경우 입국 전에 온라인을 통해 여행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임. K-ETA를 신청하는 자는 1만원(약 7~8달러)을 수수료로 지불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으로 수납됨.

다만, 지난 2023년 및 2024년 '한국 방문의 해' 등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미국·일본·프랑스·호주 등 22개 국가에 대한 K-ETA 한시면제를 실시하였고, 이후 1년간 면제를 연장함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K-ETA 면제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음. 이에 법무부는 K-ETA 면제 종료를 전제로 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 K-ETA 수수료 등 수입을 전년 대비 95억 8,600만원(46.1%) 증액된 304억원으로 편성하였음.

그러나 K-ETA 면제와 관련해서는 관광활성화 등을 위하여 면제 조치를 1년 추가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문화체육관광부 및 해외 일부 국가 등으로부터 제기되었으며, 이에 정부는 지난 2025년 9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이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음.[5]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2026년도 K-ETA 수수료 등 수입은 법무부가 당초 계상한 금액에 비하여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5)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케이-컬처' 열풍에 맞춰, 한국관광 혁신의 노를 젓다", 2025. 9. 25.

22개 국가에 대한 K-ETA 한시면제 조치 시행기간 중 K-ETA 수수료 등 수납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213억 4,000만원이 수납되었으나, 2024년에는 63억 4,600만원만 수납되었고, 2025년에는 8월 기준으로 61억 3,800만원이 수납된 상황임.

**<연도별 K-ETA 수수료 등 수납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 예산액 | 수납액 |
|---|---|---|
| 2021 | - | 570 |
| 2022 | 12,800 | 19,417 |
| 2023 | 44,660 | 22,471 |
| 2024 | 16,598 | 9,643 |
| 2025.8. | 20,814 | 6,138 |
| 2026(안) | 30,400 | - |

자료: 법무부

따라서 2026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65-651) 세입예산안 중 K-ETA 수수료 등 항목은 2026년 말까지로 연장된 K-ETA 한시면제 조치를 반영하여 적정 수준으로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음.[6)]

6) 참고로, 지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당시에도 K-ETA 한시면제 조치 결정에 따라 법무부가 당초 446억 6,000만원으로 작성·제출하였던 K-ETA 수수료 등 수입은 280억 6,200만원 감액한 165억 9,800만원으로 확정되어 집행한 바 있음.

### (3)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65-651)

#### ▢ 예산안 개요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증과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및 재발급 시 징수하는 수수료 수입 등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억 1,800만원(2.7%) 감액된 261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 | 2025 | | 2026 | | |
|---|---|---|---|---|---|---|
| | 결산 | 본예산 | 추경예산 (A) |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면허료 및 수수료 | 19,195 | 26,880 | 26,880 | 26,162 | △718 | △2.7 |

### ▢ 세입예산 과다편성 여부 점검 필요

법무부는 현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비용 3만 5천원,[7]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비용 3만 5천원, 사실증명 1통당 2천원 등의 수수료를 각각 부과하고 있음.[8] 2026년 세입예산안은 동 수수료 단가 기준으로 등록증 발급 예상수량 74.7만매를 산정하여 총 261억 6,200만원을 편성함.

그런데, 최근 6년간 등록증 발급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 66.7만 매, 2023년 63.8만매,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 50.3만매 등으로 과거 70만매 이상 발급실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예산편성 기준인 74.7만매의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최근 6년간 외국인등록증 등 발급현황>**

(단위: 매)

| 구 분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등록 외국인 | 신규 | 294,317 | 122,978 | 169,478 | 287,752 | 385,409 | 392,605 |
| | 재발급 | 131,763 | 133,911 | 117,281 | 124,488 | 148,491 | 177,737 |
| 거소신고 동포 | 신규 | 53,814 | 15,455 | 23,282 | 30,974 | 49,648 | 37,745 |
| | 재발급 | 22,993 | 58,024 | 61,698 | 64,304 | 54,914 | 58,419 |
| 합 계 | | 502,887 | 330,368 | 371,739 | 507,518 | 638,462 | 666,506 |

---

7)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0.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3만원<개정2023. 6. 14.>
10.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3만 5천원<개정 2024. 12. 24.>

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수수료)**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3만원<개정 2016. 9. 29.>
1.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3만 5천원<개정 2024. 12. 24.>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1통당): 2천원

이에 대해 법무부는 동 세입의 2026년 예산안 편성 시, 당초 2024년 실제 발급 등록증 수량 66.7만매를 기준으로, 최근 2개년(2023년, 2024년) 실제 발급량의 연평균 증가율 15.1%를 추가 반영한 76.8천매 기준 예산을 산정하였으나, 2025. 8월말 기준 등록증 실발급수량은 43만매에 그쳐 2.1만매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하지만, 2025년 월별 등록증 발급실적을 살펴보면, 최소 3.9만매(1월)와, 최대 7.3만매(4월)이고, 월평균 5.4만매로서 연간기준 환산 시 2025년도에는 64.5만 매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26년 예산이 기준으로 삼은 74.7만 매는 세입예산의 과도한 편성이 아닌지 재점검이 필요할 것임.

**<2025년 월별 외국인등록증 등 발급현황>**

(단위: 매)

| 구분 | | 2025.1 | 2025.2 | 2025.3 | 2025.4 | 2025.5 | 2025.6 | 2025.7 | 2025.8 | 합계 |
|---|---|---|---|---|---|---|---|---|---|---|
| 등록외국인 | 신규 | 20,712 | 21,192 | 27,628 | 47,573 | 36,224 | 31,621 | 32,237 | 23,517 | 240,704 |
| | 재발급 | 12,403 | 20,954 | 22,977 | 17,450 | 14,000 | 12,731 | 15,194 | 20,012 | 135,721 |
| 거소신고동포 | 신규 | 1,842 | 2,248 | 2,462 | 3,022 | 2,666 | 2,159 | 2,481 | 2,035 | 18,915 |
| | 재발급 | 3,898 | 4,203 | 4,008 | 4,871 | 4,815 | 4,372 | 5,158 | 4,283 | 35,608 |
| 합 계 | | 38,855 | 48,597 | 57,075 | 72,916 | 57,705 | 50,883 | 55,070 | 49,847 | 430,948 |

특히, 외국인등록증 발급수량 결정에 대한 영향요인으로는 신규등록,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지 변경에 따른 재발급 등 여러 유형인 바, 2026년 외국인력 도입 쿼터[9]나 경제여건 및 경기전망[10]에서

9) 취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중 국민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탄력 조정·운영이 필요한 계절근로자(E-8),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의 일부 체류자격에 대해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2026년 외국인력 쿼터는 아직 미정 상태임.

외국인등록증 발급수량 대폭 증가에 직접 영향을 줄 만한 정책적·환경적 변수가 현 시점에서는 예상되지 않음을 고려할 때, 발급규모는 예년 수준일 것으로 보임.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은 정확한 예측 곤란으로 예산액의 명확한 산정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동 세입예산의 과거수납률이 2024년 110.7%, 2023년 157.4%, 2021년 69.4%로 과대과소 현상이 지속적으로 교차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11] 예견되는 상황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여 차년도 예산액을 합리적으로 편성하는 등, 예산액과 징수결정액간 불일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것임.

**<최근 5년간 (수입대체경비) 면허료 및 수수료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A) | 예산 현액 | 징수 결정액(B) | 수납액 (C) | 수납률 (C/A) | 수납률 (C/B) |
|---|---|---|---|---|---|---|
| 2021 | 15,459 | 15,459 | 10,731 | 10,731 | 69.4 | 100.0 |
| 2022 | 15,459 | 15,459 | 14,296 | 14,296 | 92.5 | 100.0 |
| 2023 | 11,850 | 11,850 | 18,652 | 18,652 | 157.4 | 100.0 |
| 2024 | 17,338 | 17,338 | 19,256 | 19,195 | 110.7 | 99.7 |
| 2025.7 | 26,880 | 26,880 | 12,601 | 12,594 | 46.9 | 99.9 |

10)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의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2029」 발간 보도자료(2025.9.30.)에 따르면, 주요 기관의 2026년 실업률 및 고용률 전망치는 2025년과 비교할 때 전년 동 또는 0.1% 증가 수준일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단위: 전년대비, %)

| | NABO[a] | | 기재부[b] | | 한국은행[c] | | KDI[d] | |
|---|---|---|---|---|---|---|---|---|
| | 2025 | 2026 | 2025 | 2026 | 2025 | 2026 | 2025 | 2026 |
| 취업자수 증감 | 17.5 | 16 | 17 | 11 | 17 | 13 | 15 | 11 |
| 실업률 | 2.9 | 2.9 | - | - | 2.8 | 2.9 | 2.9 | 2.9 |
| 고용률 | 62.8 | 62.8 | 62.8 | 62.9 | 62.8 | 62.9 | - | - |

주: a) 2025년 9월 30일 전망 b) 2025년 8월 22일 전망 c) 2025년 8월 28일 전망 d) 2025년 8월 12일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11)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24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2025.8.)」 45p. 이하 참조

## ◈ 세 출 ◈

# 가. 총괄 및 기획조정실 등

## (1) 총 괄

### ▢ 실질적·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개선·보완 필요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2[12]에 따라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시행해야 함. 이는 종전 '투입 중심'이 아니라 '성과 중심' 사업관리가 되도록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 등 전 과정을 성과 위주로 운용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각 부처는 매년 예산·기금 관련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13] 이를 통하여 재정사업의 집행과정과 결과를 관리하는 것이 '성과목표관리' 제도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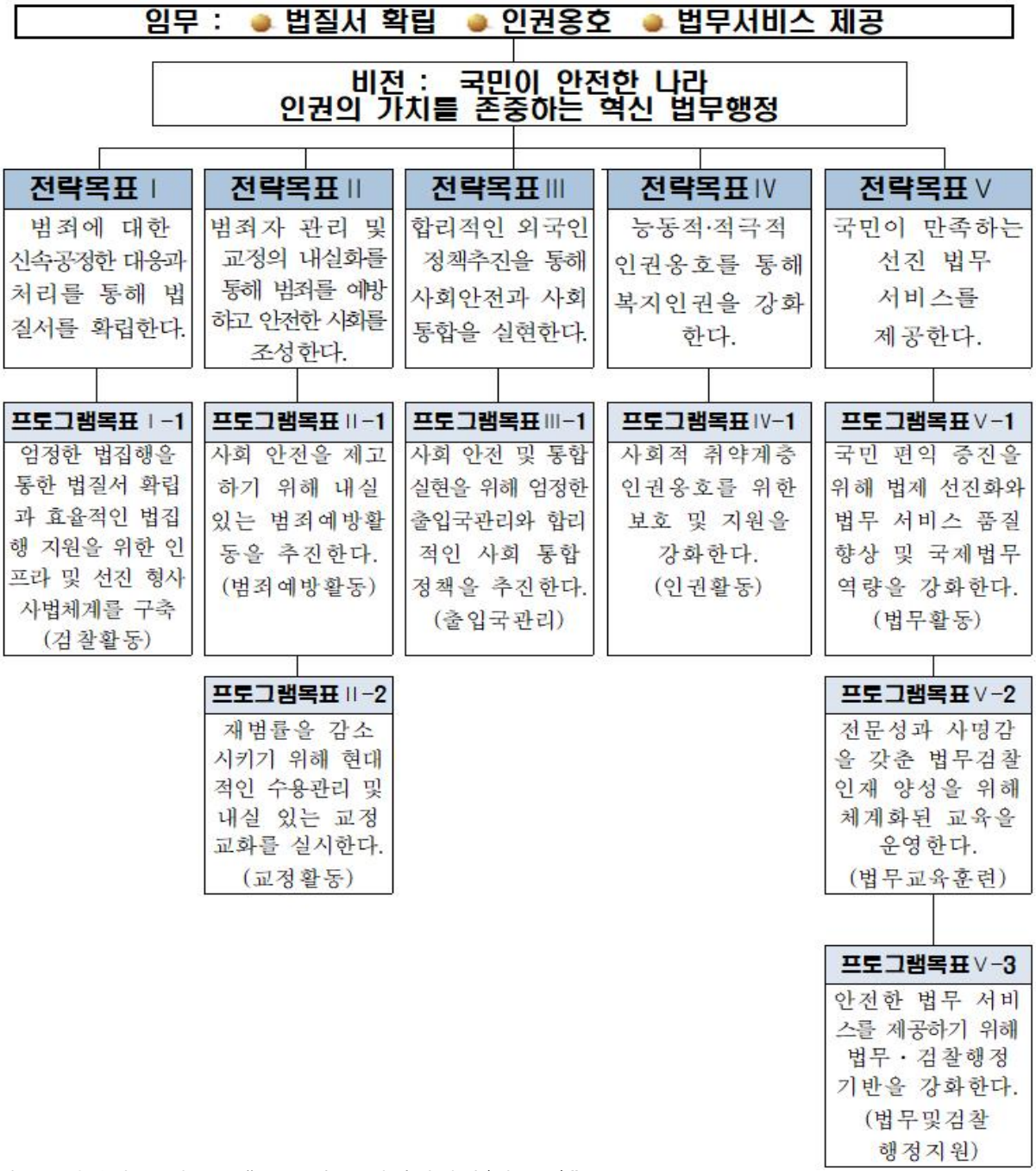
12) **「국가재정법」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결과의 관리
2.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분석·평가

②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대상이 되는 재정사업의 기준은 성과관리의 비용 및 효과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의 대상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13)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무부도 성과목표관리 제도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2026년도 성과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음. 동 계획서에 따른 법무부의 2026년도 성과계획 목표체계도는 다음과 같음.

**<법무부 2026년도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6년도 성과계획서(법무부)”, 2025. 9.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법질서 확립”, “인권옹호” 및 “법무서비스 제공”을 기관 임무로,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비전으로 제시하였으며, 총 33개 단위사업 및 74개 세부사업과 관련하여 5개 전략목표와 8개 프로그램목표 및 그에 따른 성과지표 등을 설정하였음.

**<법무부 2026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현황>**

(단위: 개)

| 전략목표 | 프로그램목표 | 관련사업 | |
|---|---|---|---|
| |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5 | 8 | 33 | 74 |

|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목표 | 성과지표(목표치) |
|---|---|---|
| **전략목표Ⅰ. 범죄에 대한 신속·공정한 대응과 처리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한다.** | | |
| Ⅰ-1 검찰활동 |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법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법집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선진 형사사법체계 구축 |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3,471건)** |
| **전략목표Ⅱ. 범죄자 관리 및 교정의 내실화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한다.** | | |
| Ⅱ-1 범죄예방활동 | 사회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내실있는 범죄예방활동을 추진한다. |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5.15%) |
| Ⅱ-2 교정활동 |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현대적인 수용관리 및 내실 있는 교정교화를 실시한다. | **재범고위험군 출소자 재복역률(33.0%)** |
| **전략목표Ⅲ. 합리적인 외국인정책 추진을 통해 사회안전과 사회통합을 실현한다.** | | |
| Ⅲ-1 출입국관리 | 사회 안전 및 통합 실현을 위해 엄정한 출입국관리와 합리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한다. |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소양 충족도 (54.7%)** |

|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목표 | 성과지표(목표치) |
|---|---|---|
| **전략목표Ⅳ. 능동적 · 적극적 인권옹호를 통해 복지인권을 강화한다.** | | |
| Ⅳ-1 인권활동 | 사회적 취약계층 인권옹호를 위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한다. | 사회적 취약계층 법률 지원 실적(18,076건) |
| **전략목표Ⅴ. 국민이 만족하는 선진 법무서비스를 제공한다.** | | |
| Ⅴ-1 법무활동 |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법제 선진화와 법무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국제법무 역량을 강화한다. | 변호사제도 개선 관련 활동 건수(59건) |
| Ⅴ-2 법무교육훈련 |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법무검찰 인재 양성을 위해 체계화된 교육을 운영한다. | 교육프로그램 만족도(91.8%) |
| Ⅴ-3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 안전한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 · 검찰행정 기반을 강화한다. |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성과관리(96.2점) |
| | |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서비스만족도(81.1점) |

*주: 음영 표시는 대표 성과지표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6년도 성과계획서(법무부)”, 2025. 9. 재구성

그러나 법무부는 성과목표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바, 그로 인해 성과관리가 실질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봄.

첫째, 5개 ‘전략목표’가 모두 추상적 표현을 사용하여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그 하위목표인 ‘프로그램목표’ 역시 전략목표를 동어반복하는 수준이고, ‘대표 성과지표’는 법무부 임무 및 상·하위 목표 등과 연계성이 떨어짐.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2항[14]에 따르면, 성과목표는 기관 임무 및

1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② 성과

상·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함. 또한, 각 기관이 성과계획서 작성 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획재정부 “2026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15]에 따르면, 전략목표는 향후 5년 동안 성과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설정하고, 일반적·추상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함.

그러나 법무부가 설정한 전략목표는 “법질서 확립”, “안전한 사회 조성”, “사회통합 실현”, “복지인권 강화” 및 “국민 만족” 등과 같이 모두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음. 전략목표를 이렇게 설정할 경우 재정운용 성과에 대한 예측·평가 또한 불명확해질 수밖에 없고, 전략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프로그램목표 등 설정도 곤란해진다는 문제가 있음.[16]

또한, 프로그램목표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목표이므로,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단기(연간) 목표를 제시하여 전략목표와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하나, 법무부가 설정한 프로그램목표는 전략목표와 동일한 내용을 일부 표현만 달리하여 반복하는 수준으로 보임.

---

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15) 기획재정부, “2026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2025. 4.

16) 기획재정부, 위 지침 p. 9
참고로, 지침에 따르면 전략목표는 기관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성과계획서에 이러한 연계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그에 따라 프로그램목표 또한 전략목표와 마찬가지로 모두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사업추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 성과를 내용으로 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명시한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프로그램목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한편, 법무부는 기관 대표 성과지표로 ①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 ② "재범고위험군 출소자 재복역률" 및 ③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소양 충족도"를 설정하였으나, 이는 법무부가 설정한 "법질서 확립", "인권옹호" 및 "법무서비스 제공" 등 기관 임무와 구체적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있음.[17)]

**<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전략목표' 및 '프로그램목표' 등 관련 문제점>**

| 구 분 | 문제점 | 세부내용 |
|---|---|---|
| 전략목표 | 추상적 표현으로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작성된 전략목표 | "법질서 확립", "안전한 사회 조성", "사회통합 실현", "복지인권 강화", "국민 만족" 등 추상적 · 포괄적 표현 |
| 프로그램목표 | 전략목표와 동어반복, 추상적 · 포괄적 목표 | 프로그램목표 대부분이 전략목표와 동일한 내용을 일부 표현만 달리하여 반복, 추상적 · 포괄적 표현 |
| 대표 성과지표 | 기관 임무 등과 낮은 연계성 | "법질서 확립", "인권옹호", "법무서비스 제공" 등 법무부 기관 임무와 연계성이 떨어짐 |

17) 구체적으로, 법무부의 세 가지 기관 임무는 각각 전략목표Ⅰ(검찰활동), 전략목표Ⅳ(인권활동), 전략목표Ⅴ(법무활동 등)에 관한 사항이나, 대표지표 ① 외에 ② 및 ③은 각각 전략목표Ⅱ(범죄예방활동 및 교정활동) 및 전략목표Ⅲ(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상호 간 연계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둘째, 각 ‘성과지표’가 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궁극적 결과를 대표하는 지표로 설정되지 않았고, 목표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결과·정량지표가 아니라 산출·정성지표로 설정한 경우도 있으며, 일부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소극적으로 설정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임.

먼저,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성과지표는 프로그램목표 달성정도를 측정(measure)할 수 있는 잣대’이므로, 프로그램의 궁극적 효과를 포괄적·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설정하여야 함.

그러나 법무부가 설정한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검찰활동 프로그램(Ⅰ-1)에 대한 성과지표는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로 설정하고, 출입국관리 프로그램(Ⅲ-1)에 대한 성과지표는 ‘이민자의 기본소양 충족도’로 설정하는 등, 일부 성과지표는 해당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사업 내용을 핵심적·포괄적으로 대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아울러, 위 두가지 성과지표는 모두 법무부 ‘대표 성과지표’로도 선정되었는바, 특히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는 일부 재산범죄 등에 한정되는 사항을 전체 범죄 대상 ‘수사·기소’가 주요내용인 ‘검찰활동’ 프로그램, 나아가 법무부라는 기관 전체의 대표지표로 설정한 것으로서, 기관의 기능·역할·임무에 대한 대표성 측면에서도 충분하지 않다고 봄.

한편, 성과지표는 ‘투입’·‘산출’지표가 아니라 프로그램 추진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대표하는 ‘결과’지표로 설정하여야 하나, 인

권활동 프로그램(Ⅳ-1)에 대한 성과지표인 ‘사회적 취약계층 법률지원 실적’과 법무활동 프로그램(Ⅴ-1)에 대한 성과지표인 ‘변호사제도 개선 관련 활동건수’는 결과지표가 아니라 산출지표에 해당함.

또한, ‘정성’지표로는 목표달성도 측정의 객관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가급적 ‘정량’지표로 설정하여야 하나, 법무부는 법무교육훈련 프로그램(Ⅴ-2)과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프로그램(Ⅴ-3)과 같이 정량평가가 가능한 사업의 성과지표에 ‘만족도’ 등 정성지표를 사용하기도 하였음.

아울러,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과거 추세치 및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 사업·국제수준과 비교, 외부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동 달성 정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설정하여야 하나, ‘범죄수익 보전결정 건수(Ⅰ-1)’, ‘교육프로그램 만족도(Ⅴ-2)’,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성과관리, Ⅴ-3)’ 등 지표는 달성 목표치가 전년도 성과에 비해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보임.

**<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목표치’ 관련 문제점>**

| 구 분 | 문제점 | 세부내용 |
|---|---|---|
| 성과지표 | 핵심성 및 포괄성 떨어지는 성과지표 | ‘검찰활동’의 성과지표를 ‘범죄수익 보전결정 건수’로 설정하고, ‘출입국관리’의 지표를 ‘이민자의 기본소양 충족도’로 설정 |
| | 결과·정량지표가 아닌 산출·정성지표로 설정 | ‘법률지원 실적’, ‘개선활동 건수’ 등 산출지표, ‘만족도’ 등 정성지표 설정 |
| 목표치 | 목표치를 소극적으로 설정 | ‘범죄수익 보전결정 건수’의 2024년 실적이 4,478건임에도 목표를 3,471건으로 설정, ‘교육프로그램 만족도’의 2024년 실적이 92.4점임에도 목표를 91.9점으로 설정,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의 2024년 실적이 99.51점임에도 목표를 96.2점으로 설정 |

이처럼 법무부 소관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관리는 실질적·체계적 실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법무부는 전략목표·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등을 비롯하여 성과목표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성과목표관리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업무용 전기차 비중 확대를 고려하여 유류비 감액 필요

법무부가 본부청사에서 2022년부터 최근 4년간 구입・보유한 차량 현황을 살펴보면, 구입 차량은 3대(승용1, 승합2), 임차(리스) 차량은 27대(승용26, 승합1)로서 총 30대이고, 이를 유종별로 구분하면 휘발유 11대, 경유 3대, 전기차 16대로 나타남.

**<최근 4년간 보유 차량 현황 예산액>**

(단위 : 백만 원, %)

| 구분 | 구입차 | | | 임차(리스)차 | | | 합계 |
|---|---|---|---|---|---|---|---|
| 차종/유종 | 휘발유 | 경유 | 전기 | 휘발유 | 경유 | 전기 | |
| 승용 | 1 | - | - | 10 | - | 16 | 27 |
| 승합 | - | 2 | - | - | 1 | - | 3 |
| 합계 | 1 | 2 | - | 10 | 1 | 16 | 30 |

그런데,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0) 내의 유류비(210-08)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은 예산 8,700만원 중 2,400만원 집행으로 집행률 27.6%이고, 2024년은 예산 8,200만원 중 2,3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28.0%이며, 2025년도의 경우 8월말 기준 집행률이 13.4%임을 고려할 때 예년 수준일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최근 3년간 평균 집행률은 30% 미만에 그칠 것으로 보임.

<최근 4년간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0)내 유류비 예·결산액>

(단위 : 백만 원, %)

| 연 도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등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집행률 (B/A)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2022 | 74 | 74 | 2 | 76 | 27 | - | 49 | 35.5 |
| 2023 | 87 | 87 | - | 87 | 24 | - | 63 | 27.6 |
| 2024 | 82 | 82 | - | 82 | 23 | - | 59 | 28.0 |
| 2025.8 | 82 | 82 | - | 82 | 11 | | | 13.4 |

법무부는 매년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18]에 따라 기존 내연기관 임차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유류비 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함.

결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4년간 전기차 비중이 총 30대 중 16대로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친환경 전기차 사용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내연기관 운행에 기반한 유류비 편성은 과도해 보이므로. 적정 규모로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18)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을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이하 "자동차판매자"라 한다)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이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라 한다)를 매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하 "무공해자동차"라 한다)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 자동차판매자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무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에는 저공해자동차의 개발현황, 자동차판매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에 따라 매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자동차판매자는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고 그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작성방법·승인절차 및 보급실적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아울러, 유류비 단가를 확인하기 위해 연비(전비(電比))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 여비규정은 휘발유 연비 11.97 대비 전기차 전비(電比)는 5.22로 낮은 단가를 규정하고 있어,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유류비는 기존 휘발유 대비 비중이 약 43.6%이므로, 보다 낮게 책정할 필요가 있음.

**<2025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상 승용차 유종별 연비(전비)>**

| 구 분 | 휘발유 | 경유 | LPG | 하이브리드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 전기 | 수소 |
|---|---|---|---|---|---|---|---|
| 연비 (km/L) | 11.97 | 12.52 | 8.83 | 15.37 | 10.61 | | |
| 전비 (km/kwh) | | | | | 2.84 | 5.22 | |
| 연비 (km/kg) | | | | | | | 94.9 |

이는 법무부가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서도 확인되는데, 전기차와 휘발유 차량 간 연간 주행거리별 주유비를 비교해 보면,[19] 약 12,000㎞ 운행 시 휘발유 차량A는 약 177만원(㉮)인 반면, 전기차B는 약 85만원(㉯) 가량으로 낮고, 금액 기준으로 약 120만원 가량의 유류비를 집행한 경우 휘발유 차량C는 10,597㎞(㉰)를 운행한 반면, 전기차D는 20,856㎞(㉱)를 운행한 것으로 나타나, 전기차 충전 비용이 휘발유 주유비용보다 50% 가량 저렴한 것으로 확인됨.

19) 비록 차종, 근·원거리, 시내·시외 주행, 유종별 단가 등의 주행환경이 달라 정확한 비교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수 사례를 살펴보면 비슷한 연간 주행거리에서는 휘발유 주유금액과 전기차 충전금액에는 명확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법무부 보유 차량 운행 사례〉

| 챠량 | 차종 | 리스기간 | 유종 | 연간사용거리 (㎞) | 연간 유류비(원) |
|---|---|---|---|---|---|
| A | 승용 | ‘21.06.07. ~ ‘24.06.07. | 휘발유 | 12,197(‘22)(㉮)<br>13,658(‘23)<br>14,516(‘24) | 1,772,572(‘22)<br>1,521,200(‘23)<br>1,715,150(‘24) |
| B | 승용 | ‘22.01.08. ~ ‘25.01.07. | 전기 | 10,618(‘22)<br>12,551(‘23)(㉯)<br>7,070(‘24)<br>2,793(‘25.6.) | 678,771(‘22)<br>849,147(‘23)<br>563,245(‘4)<br>261,902(‘25.6.) |
| C | 승용 | ‘21.03.30. ~ ‘24.03.30. | 휘발유 | 9,853(‘22)<br>10,597(‘23)(㉰)<br>3,871(‘24) | 1,158,752(‘22)<br>1,273,721(‘23)<br>370,570(‘24) |
| D | 승용 | ‘21.11.15. ~ ‘25.11.15. | 전기 | 13,489(‘22)<br>20,856(‘23)(㉱)<br>6,895(‘24)<br>1,68(‘25.3.) | 731,856(‘22)<br>1,184,053(‘23)<br>478,135(‘24)<br>186,604(‘25.6.) |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예산편성 기준인 “물량×단가”로 볼 때, 전기차 사용추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전기차 비중(물량)은 증가가 예상되고, 공무원 여비규정이나 실 운행 실적 자료에 기반할 때 휘발유 대비 전기차 충전요금(단가)이 절반 이하로 낮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유류비 예산은 삭감 여지가 있음.

따라서, 법무부는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본부 청사 내 운행차량 뿐만 아니라 소속기관을 포함한 전 공용차량 운행을 위해 편성한 유류비가 적정한지 확인・점검하고, 친환경 차량 도입 비중을 반영한 필요 예산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20]

20) 참고로, 앞서 살펴본 사례를 고려한 삭감 규모는 최근 3년간 평균 집행률 30%와 공무원여비 규정 및 실제운행 사례를 감안하면, 삭감율은 편성안 대비 최대 70%내지 최소 50%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앞선 사례인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0)” 중 유류비(210-08)는 2,460만원(70%감액 시) ~ 4,100만원(50%감액 시) 편성이 적정할 것으로 보임.

### (2)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0)

#### ▢ 예산안 개요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법무부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감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대변인실의 사무용품 구입, 자료 발간, 공공요금・임차료 납부 및 자산취득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200만원(0.8%) 증액된 40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기관운영 기본경비>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 | 2025 | | 2026 | | |
|---|---|---|---|---|---|---|
| | 결산 | 본예산 | 추경예산 (A) |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기관운영 기본경비 | 3,575 | 4,055 | 4,055 | **4,087** | 32 | 0.8 |

### ▢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포상금 예산 집행 활성화 필요

기재부「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상 포상금은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한 자(또는 기관, 공무원을 포함)에게 격려·포상을 위해 지급하는 상금, 상여금 및 격려금, 예산절약 상여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동 기본경비 내의 포상금 예산 불용률을 살펴보면, 2021년 33%, 2022년 40%, 2023년 60%, 2024년 80%로, 최근 4년간 평균 불용률은 53%로서 매우 낮았고,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5년간 기본경비 내 포상금 집행 및 불용 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 | 예산 현액(A)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B) | 불용률 (B/A) | 사유 |
|---|---|---|---|---|---|---|---|
| 2021 | 15 | 15 | 10 | - | 5 | 33.3 | 집행잔액 |
| 2022 | 15 | 15 | 9 | - | 6 | 40.0 | 집행잔액 |
| 2023 | 15 | 15 | 6 | - | 9 | 60.0 | 집행잔액 |
| 2024 | 15 | 15 | 2 | - | 12 | 80.0 | 집행잔액 |
| 2025.8 | 15 | 15 | 7.8 | - | 7.2 | 48.0 | |

법무부는 동 기본경비 내에서 5개 내역을 구분하여 ① 법무 검찰공무원 부조리 신고등에 대한 보상금, ② 법무·검찰 내부 공익신고에 대한 포상금(이상 감찰담당관실 소관), ③ 공무원제안 부상, ④ 국민제안 부상, ⑤ 성과관리 우수(이상 기획조정실 소관)로 포상금을 편성·집행하고 있음. 불용액 발생 사유는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포상금별 지급근거 및 주요내용〉

| 포상금 종류 (소 관) | 포상금 지급근거 | 주요내용 |
|---|---|---|
| ① 법무 검찰공무원 부조리 신고등에 대한 보상금<br>② 법무 · 검찰 내부 공익신고에 대한 포상금<br>(감찰담당관실) | 법무 · 검찰공무원 부조리 신고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 지침 (법무부훈령 제1198호) | 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 신고등에 대한 보상금/ 법무·검찰 내부 공익신고에 대한 포상금 |
| ③ 공무원제안 부상<br>(기획조정실) | 공무원제안규정 제16조 법무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제12조 | 공무원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의 창안등급에 따른 부상 |
| ④ 국민제안 부상<br>(기획조정실) | 국민제안규정 제18조, 제20조 | 법무부 민원행정 처리와 관련한 제도 · 관행 등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 · 개선함으로써 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법무행정 관련 규제룰 개선하여 행정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국민제안 공모 실시 |
| ⑤ 성과관리 우수<br>(기획조정실)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30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0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에 따라 정책성과 우수 공무원을 포상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성과중심의 조직 관리 도모 |

그런데, 동 기본경비 내 5개의 포상금 운영실적과 집행잔액의 내역별 불용사유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법무 검찰공무원 부조리 신고등에 대한 보상금(①), 법무·검찰 내부 공익신고에 대한 포상금(②), 공무원 제안 부상(③)은 2022년 이후 신고(제안)내역이 없어서 전액 미집행하였고, 국민제안 부상(④), 성과관리 우수(⑤)의 경우에도 채택 건수가 부족하여 집행률 50% 이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포상금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임.[21)]

21) 그 밖에도,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포상금 종류별 선정(채택) 건수는 존재하나, 당시 제안(신청) 건수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제안(신청) 및 선정(채택)과의 상관관계 파악이 곤란한 상황으로써, 전반적인 현황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포상금별 집행 내역 및 불용 사유>

(단위: 백만원, %)

| 연도 | 포상금 종류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률 | 집행 내역 및 불용사유 |
|---|---|---|---|---|---|
| 2021 | 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 신고등에 대한 보상금 등 | 1.5 | 0.5 | 33.3 | - 신고 포상금 지급(총 1명, 50만원 집행) |
| | 공무원 제안부상 | 1.8 | 0.2 | 11.1 | - 공무원제안 우수 포상(총 1명, 200천원 집행) |
| | 국민제안 부상 | 6 | 2.8 | 46.7 | - 국민제안채택 (총 10건, 1,000천원 집행)<br>- 국민제안 공모전(총 5건, 1800천원 집행) |
| | 성과관리 우수 | 5.5 | 4.2 | 76.4 | - 자체평가 매우우수 부서 담당 공무원 포상(총 5건, 1.5)<br>- BSC 성과평가 우수기관 담당 공무원 포상(총 5건, 1.5)<br>- 주요정책 홍보우수사례 공모전 포상(총 4건, 1.2) |
| 2022 | 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 신고등에 대한 보상금 등 | 1.5 | 0 | 0.0 | - 신고 내역이 없어 미집행 |
| | 공무원 제안부상 | 1.8 | 0 | 0.0 | - 포상대상 공무원제안이 없어 미집행 |
| | 국민제안 부상 | 6 | 5.5 | 91.7 | - 국민제안채택 (총 18건,1,800천원 집행)<br>- 국민제안 공모전(총 7건,1,500천원 집행)<br>-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총 3건, 2,200천원 집행) |
| | 성과관리 우수 | 5.5 | 3.4 | 61.8 | - 자체평가 매우우수 부서 담당 공무원 포상(총 5건, 1.5)<br>- BSC 성과평가 우수기관 담당 공무원 포상(총 3건 0.9)<br>- 주요정책 홍보우수사례 공모전 포상(총 3건, 1.0) |
| 2023 | 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 신고등에 대한 보상금 등 | 1.5 | 0 | 0.0 | - 신고 내역이 없어 미집행 |
| | 공무원 제안부상 | 1.8 | 0 | 0.0 | - 포상대상 공무원제안이 없어 미집행 |
| | 국민제안 부상 | 6 | 3 | 50.0 | - 국민제안채택 (총 7건, 700천원 집행)<br>- 국민제안 공모전(총 8건, 2,300천원 집행) |
| | 성과관리 우수 | 5.5 | 2.7 | 49.1 | - 자체평가 매우우수 부서 담당 공무원 포상(총 4건, 1.2)<br>- BSC 성과평가 우수기관 담당 공무원 포상(총 5건, 1.5) |
| 2024 | 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 신고등에 대한 보상금 등 | 1.5 | 0 | 0.0 | - 신고 내역이 없어 미집행 |
| | 공무원 제안부상 | 1.8 | 0 | 0.0 | - 포상대상 공무원제안이 없어 미집행 |
| | 국민제안 부상 | 6 | 1.8 | 30.0 | - 국민제안채택 (총 10건, 1,000천원 집행)<br>- 국민제안 공모전(총 4건, 800천원 집행) |
| | 성과관리 우수 | 5.5 | 0.6 | 10.9 | - 자체평가 매우우수 부서 담당 공무원 포상(총 2건, 0.6) |

특히, 기재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신고포상금의 경우 과거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실제 집행가능한 적정소요를 반영하고,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경우에는 집행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한 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의 예산은 동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편성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법무부는 집행내역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포상금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있는지 점검하고, 포상금 제도의 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더이상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상금 예산 집행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3)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7032-301)

#### ▢ 예산안 개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은 민원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 및 민원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 민원실무 교육 등을 진행하고, 법무행정서비스 역량 강화 및 행정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민원 만족도 등을 파악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 · 정책 피드백 예산안(비목별)>**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 | 2025 | | 2026 | | |
|---|---|---|---|---|---|---|
| | 결산 | 본예산 | 추경예산 (A) |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 · 정책 피드백 | 94 | 120 | 120 | 120 | - | - |
| · 일반수용비(210-01) | 5 | 41 | 41 | 41 | - | - |
| · 임차료(210-07) | - | 3 | 3 | 3 | - | - |
| · 일반용역비(210-14) | 50 | 14 | 14 | 14 | - | - |
| · 기타운영비(210-16) | 6 | 6 | 6 | 6 | - | - |
| · 국내여비(220-01) | 6 | 8 | 8 | 8 | - | - |
| · 국외업무여비(220-02) | - | 14 | 14 | 14 | - | - |
| · 사업추진비(240-01) | 15 | 21 | 21 | 21 | - | - |
| · 일반연구비(260-01) | 12 | 13 | 13 | 13 | - | - |

### ▢ 실제 집행방식에 맞는 워크숍 예산안 편성 필요

법무부는 본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으로 ‘민원담당자 힐링 워크숍’을 매년 실시하고 있음. 이는 민원업무 담당자의 정서적 피로 해소 및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민원서비스 품질 제고 등 목적으로, 민원담당자 사기 진작과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소통 프로그램의 일환임.

법무부는 워크숍 직접개최 비용으로 매년 일반수용비(210-01) 2,600만원 및 임차료(210-07) 300만원 등을 편성하고 있으며, 2026년 예산안에도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음.

그러나 최근 실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법무부는 2024년 및 2025년 두 해 연속으로 해당 워크숍을 직접 개최하지 않고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음. 이에 따라 당초 일반수용비로 편성된 예산은 일반용역비(210-14)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고, 임차료는 전액 불용하였음.

**<2024년 · 2025년도 ‘민원담당자 힐링 워크숍’ 관련 예산 집행내역>**

(단위: 천원)

| 구분 | 비 목 | 내 용 | 예산액 | 세목조정 | 예산현액 | 집행액 | 불용액 |
|---|---|---|---|---|---|---|---|
| 2024 | 일반수용비 (210-01) |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 및 워크숍 등 | 26,000 | △26,000 | - | - | - |
| | | 기타 인쇄비 등 | 15,100 | △9,880 | 5,220 | 5,070 | 150 |
| | 임차료 (210-07) | 워크숍 장소 대관료 | 1,500 | - | 1,500 | - | 1,500 |
| | | 업무용 차량 임차료 | 1,500 | - | 1,500 | - | 1,500 |
| | **일반용역비 (210-14)** | **민원워크숍** | **-** | **35,880** | **39,470** | **39,470** | **10** |
| | | 전화 친절도 점검 | 14,000 | - | 10,400 | 10,400 | - |

| 구분 | 비 목 | 내 용 | 예산액 | 세목조정 | 예산현액 | 집행액 | 불용액 |
|---|---|---|---|---|---|---|---|
| 2025.9 | 일반수용비 (210-01) |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 및 워크숍 등 | 26,000 | △26,000 | - | - | - |
| | | 기타 인쇄비 등 | 15,100 | △7,033 | 8,067 | 4,200 | 미정 |
| | 임차료 (210-07) | 워크숍 장소 대관료 | 1,500 | △1,500 | - | - | - |
| | | 업무용 차량 임차료 | 1,500 | △1,500 | - | - | - |
| | **일반용역비 (210-14)** | **민원워크숍** | **-** | **36,033** | **39,933** | **39,933** | **-** |
| | | 전화 친절도 점검 | 14,000 | - | 10,100[22] | - | - |

자료: 법무부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2024년부터 보다 전문성 있는 워크숍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였으나, 이를 예산 비목에 즉시 반영하지 못하고 일반수용비(210-01)와 임차료(210-07)를 일반용역비(210-14)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다는 설명임. 또한, 2026년에도 이와 동일하게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 실시할 예정이라고 함.

그러나 워크숍을 매년 외부 위탁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직접개최를 전제한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 예산안의 편성은 실제 집행방식과 부합하지 않는 것임.

특히, 이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비목(일반수용비, 210-01) 및 개최방식(직접개최)과 달리, 실제 다른 비목(일반용역비, 210-14) 및 개최

22) 법무부는 2024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 시 법무부 전화친절도 점검비용을 조사·연구 관련 용역임에도 일반연구비(260-01)가 아닌 일반용역비(210-14)로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 '주의'를 받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일반연구비(260-01)로 전용하여 집행할 예정이라는 설명임.

방식(위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서, 국회 예산심의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예산편성 자체의 신뢰성까지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향후에도 해당 워크숍을 외부기관 위탁방식으로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면, 사업의 실제 추진방식에 부합하도록 일반수용비(210-01)가 아닌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재차 국회 심의취지와도 다르게 비목 조정 후 집행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는 예산안 편성이 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4)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7037-300)

#### ▢ 예산안 개요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는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 성폭력 범죄 예방 및 체류외국인 지원 정책 등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700만원(4.6%) 증액된 8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 | 2025 | | 2026 | | |
|---|---|---|---|---|---|---|
| | 결산 | 본예산 | 추경예산 (A) |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 754 | 811 | 811 | 848 | 37 | 4.6 |

### ▢ 홍보브로셔 제작 내실화 및 홍보 활성화 필요

동 예산은 법무정책 모니터링 및 홍보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공무직 인건비와 옥외광고, 브로슈어 제작, 신문·방송 홍보, 국민기자단 운영, SNS 홍보 및 우수기관·직원 포상 등 법무정책 홍보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음.

**<2026년도 홍보사업비 예산 주요내용>**

| 2026년 예산안 | |
|---|---|
| **예산** | **산출내역** |
| 383<br>백만원 | ○ 일반수용비(210-01) : 365,275천원<br>가. 법무정책 옥외 광고 (75,000천원)<br>나. **법무정책 브로슈어 제작 (22,000천원)**<br>다. 법무정책 관련 신문·방송 홍보 (67,000천원)<br>라. 국민기자단 운영 (40,000천원)<br>마. 법무 정책 관련 SNS 홍보 (133,000천원)<br>바. 소모품 구입 및 홍보콘텐츠 제작비 (27,933천원)<br>○ 일반용역비(210-14) : 9백만원<br>가. 법무정책 홍보영상물 성우더빙, 자막제작 용역 등 (9,000천원)<br>○ 포상금(310-03) : 9백만원<br>가. SNS 우수기관 및 직원 등 포상 등 (9,000천원)<br>• 우수기관 및 직원 등 포상 : 1,500천원 ×6개기관 |

이 중에서 법무정책 브로슈어 제작비의 최근 4년간 예·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예산은 동일하였으나 집행률은 2022년 95.3%를 제외하고는 2021년 79.1%, 2023년 77.1%로 낮았고, 특히 2024년에는 미집행으로 전액 불용하였는데, 법무부는 2024년 정부업무보고를 미실시하여 홍보브로슈어 책자를 발간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히고 있음.

〈최근 4년간 홍보브로슈어 제작비 예·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연도 | 예산 | 집행액 | 집행률(%) |
|---|---|---|---|
| 2021 | 22,000 | 17,402 | 79.1 |
| 2022 | 22,000 | 20,966 | 95.3 |
| 2023 | 22,000 | 16,995 | 77.1 |
| 2024 | 22,000 | – | – |
| 2025.8 | 22,000 | – | – |

하지만, 홍보 브로슈어 제작의 당초 추진배경이 법무부 정책을 다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23] 정부업무보고 여부와 홍보브로슈어 제작 간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으므로, 발간비 불용사유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임.

특히, 2022년과 2023년에 제작된 홍보 브로슈어를 비교해보면, 정부업무보고에 연동되어 제작할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고, 법무부의 핵심추진정책도 전년과 유사한 주제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아래 음영 참조), 책자의 일정 분량은 홈페이지에 존재하는 조직과 담당업무를 단순히 요약 설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24] 홍보브로슈어 제작 내실화를 통한 홍보 활성화에 더욱 더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2년과 2023년 홍보 브로슈어 목차 비교〉

| 2022년 법무부 핵심 추진 정책 | 2023년 법무부 핵심 추진 정책 |
|---|---|
| 미래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 개선 | 고위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국민불안 해소 |
|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국경관리 및 출입국· |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

23) 법무부는 브로슈어 제작의 필요성과 배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 국민의 알 권리 증진 및 정책 신뢰 제고 필요(법무부 정책이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되고, 그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받기 위해 체계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필요성 지속적으로 제기)
- 다각적 정책 홍보(다각적 홍보 방식의 일환으로 미디어 계층을 고려한 홍보 수단 필요)

24) 연도별 법무 홍보브로슈어는 다음에서 확인 가능 https://www.moj.go.kr/moj/2617/subview.do

| 2022년 법무부 핵심 추진 정책 | 2023년 법무부 핵심 추진 정책 |
|---|---|
| 이민정책 추진 | |
| 첨단 IT 법률 서비스 제공 |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 침해범죄 적극 대처 |
|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정책** |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
| 이주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 |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정책 |
| 수용시설 인권보호 철저 | 외국인 체류질서 엄정 확립 |
|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
| 부정부패 대응역량 회복 및 강화 |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반법치행위 근절 |
| 금융·증권, 공정거래, 조세분야 등 경제범죄 엄단 | 글로벌 스텐더드에 맞는 형사사법체계 구축 |
|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
| 국민피해구제 검·경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 국가 기본법인 「민법」, 「상법」 개정 추진 |
| 국민을 위한 검찰제도 개선 |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법무업무 수행 |
| 형사법령 정비를 통한 범죄대응 공백 방지 | 최신 IT기술로 편리한 법률서비스 제공 |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
| 흉약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 사회적약자 보호·지원 강화 |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근절 | 외국인 인권수준 제고 |
| | 수용시설 인권보호 철저 |
| |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 추진 |

## <2023년 홍보 브로슈어 내용(조직 설명) 발췌>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범죄예방정책국**
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

**범죄예방기획과**
범죄예방정책국 기획, 인사, 조직, 예산 총괄

**보호정책과**
범질서 실천운동, 법교육 프로그램, 이로운 법 등 콘텐츠 개발·보급, 법무보호정책,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실효성 제고

**치료처우과**
범죄예방정책국 소관 관련 법령, 성충동약물치료, 치료감호,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

**보호관찰과**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조사,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운영, 보호관찰위원 관리

**소년보호과**
소년보호정책 수립, 보호·위탁 소년 수용관리, 교육, 사후지도, 분류심사

**전자감독과**
전자감독,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리

**소년범죄예방팀**
소년범죄예방정책, 소년보호관찰 집행,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운영

**범죄예방데이터과**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빅데이터 관리 및 분석, 범죄예방 업무지원 신기술 개발, 범죄예방 정보화

20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위치추적 및 맞춤형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준수사항·의무 위반시 신속수사팀을 통해 빠르게 대처하는 등 강력사범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비행예방교육,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 및 보호지원, 소년원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비행을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법교육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통제와 처벌 중심에서 치유와 회복으로

치유와 회복 중심의 범죄예방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국립법무병원의 법법 정신질환자 치료·처우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출소자의 자립지원·사회정착 지원을 확대하고, 범죄예방 정책 전반에서 지역사회·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상자의 화해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빅데이터와 AI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범죄예방 실현

신상등록정보, 위치정보, 지리공간정보 등 방대한 빅데이터 융합분석을 통해 과학적인 재범방지 정책을 수립하고, 인공지능(AI), GPS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전자감독·피해자보호에 활용하여 스마트한 범죄예방을 실현하겠습니다.



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

2023 법무부 사람들 21

### (5) 법무부 기록관 운영(7039-302)

#### ▢ 예산안 개요

‘법무부 기록관 운영’은 2024년 1월 수원시에 건립된 법무부 기록관의 운영, 시설유지·관리 및 기록물 보전처리를 위한 운영비·인건비·시설장비 도입비 등을 지원하여 기록물의 장기 보존관리 체계 구축 및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억 6,900만원(13.8%) 감액된 47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법무부 기록관 운영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 | 2025 | | 2026 | | |
|---|---|---|---|---|---|---|
| | 결산 | 본예산 | 추경예산 (A) |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법무부 기록관 운영 | 7,151 | 5,566 | 5,566 | **4,797** | △769 | △13.8 |

### ▢ 타 예산을 여유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필요 예산을 통합·관리 필요

국가기록원은 2015년 3월 법무부의 보존공간 부족을 이유로 법무부 관련 기록물 일체에 대해 이관 보류를 통보하였고, 법무부는 같은 해 자체 기록관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기록관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20년 공사 착공, 2024년 11월 기록관 개관 순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법무부는 기록관 운영사업을 통해 비전자기록물을 보존·관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기록물 보존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며, 비전자기록물 감축 및 전자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또한, 2026년도 예산안은 상용임금, 보존용품 구입, 전기·가스·통신 공공요금, 보존시설·청사 유지관리, 기록물 이관 및 데이터베이스화 외주용역 등 개관 3년차인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소요액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2026년도 법무부 기록관 운영 에산안 산출 세부내역>**

| ’26년 예산 | |
|---|---|
| **예산** | **산출내역** |
| 4,797<br>백만원 | **○ 상용임금(110-03) : 350,861천원**<br>• 공무직 기본급 등 : 2,924천원 × 10명 × 12개월= 350,861천원<br>**○ 운영비(210) : 4,376,668천원**<br>가. 일반수용비(210-01) : 724,000천원<br>• 보존용품 구입비 : 44,000천원 × 12개월 = 528,000천원<br>• 기타운영비 등 : 16,333,천원 × 12개월 = 196,000천원<br>나. 공공요금및제세(210-02) : 834,000천원<br>• 전기, 가스, 난방, 통신, 화재보험 등 : 69,500천원 × 12월 = 834,000천원<br>다. 피복비(210-03) : 2,240천원<br>• 시설관리 등 공무직 피복비 : 8명 × 14만원 × 2회 = 2,240천원 |

| | |
|---|---|
| | 라.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49,000천원<br>• 보존시설 및 장비 등 유지비 : 18,031㎡ × 8,300원 = 149,000천원<br>마. 복리후생비(210-12) : 5,000천원<br>• 공무직 맞춤형 복지 : 500천원 × 10명 = 5,000천원<br>바. 일반용역비(210-14) : 2,640,000천원<br>• 이관, DB화 등 외주용역 : 6,600원 × 400,000권 = 2,640,000천원<br>사. 관리용역비(210-15) : 22,000천원<br>• 청사 유지관리 및 보안 관리 등 : 1,833천원 × 12월 = 22,000천원<br>**○ 고용부담금(320-09) : 69,471천원**<br>• 공무직 고용부담금 : 6,947천원 × 10명 = 69,471천원 |

그런데, 2023년 동 예산이 기본경비 내 별도 사업비로 신설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타 예산의 이·전용 없이 법무부 기록관 운영 목적을 위해 집행하는 문제가 발견되고 있어,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보다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기계·전기 현업직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이나, 기록관 시설관리 물품, 청소용품, 출입카드 구입대금과 같이 사실상 법무부 기록관 청사운영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0)"의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하고 있음.

**<2025년도 법무부 기록관 운영 에산 집행내역(일부사례)>**

| 집행일자 | 지급액(원) | 집행 내역 |
|---|---|---|
| 2025-01-13 | 240,000 | 법무부 기록관 안전보건 교육비<br>(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 교육) |
| 2025-01-21 | 432,300 | 법무부 기록관 시설관리 물품 구매 대금 |
| 2025-01-21 | 3,359,400 | 법무부 기록관 청소용품(1분기) 대금 |
| 2025-01-21 | 550,000 | 법무부 기록관 출입카드 대금 |
| 2025-02-05 | 3,000,000 | '25년도 법무부 기록관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점검) 대금 |
| 2025-04-30 | 150,000 | 법무부 기록관 공무직 채용 외부위원 수당 |

또한, 법무부는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중 관리용역비(210-15)를 2024년에 55%인 4,000만원을 불용했는데, 이 중 「법무부 기록관 시스템 구축 사업(3개년, ’23～’25년)」을 별도 추진함에 따라 기존 기록관리시스템 서버 등에 대한 관리용역비 3,000만원을 불용 처리(2024년)한 것으로 밝히고 있고,

2025년 8월 기준 동 관리용역비의 집행률이 36%(1,100만원)로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관 조경 유지관리 용역 및 청소 용역 대금 등에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밝히고 있어, 동 관리용역비는 사실상 기록관 운영에 활용되고 있으나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있음.

**<최근 5년간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0) 중 관리용역비(210-15)>**

(단위: 백만원)

| 연 도 | 예산액 | | 이·전용 등 | 예산현액 | 집행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2021 | 40 | 40 | - | 40 | 30 | 10 |
| 2022 | 44 | 44 | 16 | 61 | 51 | 10 |
| 2023 | 127 | 127 | - | 127 | 116 | 11 |
| 2024 | 73 | 73 | - | 73 | 33 | 40 |
| 2025(8월) | 44 | 44 | - | 44 | 16 | |

따라서, 법무부는 타 예산을 여유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을 포함하여 “법무부 기록관”과 관련된 예산을 하나로 통폐합하여 재편성함으로써, 기록관 운영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보다 엄격하게 심사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나. 법무실

### (1) 공익법무관 운용에 관한 총괄적 검토

#### ▢ 현 황

법무부는 2026년 예산안에 공익법무관 운용을 위하여 본부 인건비(총액)(7001-100) 사업에 기타직 보수(110-02)로 76억 3,223만원,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1031-300) 사업에 특근매식비(210-05)로 5,12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음.

**<2026년도 공익법무관 운영 관련 예산 현황>**

(단위: 천원)

| 사업명 | 구분 | 예산액 | 산출근거 |
|---|---|---|---|
| 본부 인건비(총액) | 봉급 | 5,433,270 | · 1년차(70명) :<br>2,163,900*70명*12월=1,817,676,000원<br>· 2년차(68명) :<br>2,255,800*68명*12월=1,840,732,800원<br>· 3년차(63명) :<br>2,347,700*63명*12월=1,774,861,200원 |
| | 정근수당 | 120,136 | · 1년차(70명,본봉10%) :<br>216,390*70명=15,147,300원<br>· 2년차(68명,본봉10%) :<br>225,580*68명=15,339,440원<br>· 3년차(63명,본봉20%) :<br>469,540*63명=29,581,020원<br>= (60,067,760원)*2회=120,135,520원 |
| | 정근수당 가산금 | 72,360 | · 5년미만<br>30,000원*201명*12개월=72,360,000원 |
| | 가족수당 | 38,400 | · 40,000원*80명*12월=38,400,000원 |
| | 명절상여금 | 543,327 | · 1년차(70명,본봉60%) :<br>1,298,340*70명=90,883,800원<br>· 2년차(68명,본봉60%) :<br>1,353,480*68명=92,036,640원<br>· 3년차(63명,본봉60%) :<br>1,408,620*63명=88,743,060원<br>= (271,663,500원)*2회 = 543,327,000원 |
| | 법무활동 장려수당 | 603,000 | · 250,000원*201명*12월=603,000,000원 |

| | | | |
|---|---|---|---|
| | 공익법무관수당 | 434,662 | · 1년차(70명,본봉8%) :<br>173,112*70명*12월=145,414,080원<br>· 2년차(68명,본봉8%) :<br>180,464*68명*12월=147,258,624원<br>· 3년차(63명,본봉8%) :<br>187,816*63명*12월=141,988,896원 |
| | 시간 외 수당 | 387,078 | · 10,030원*16시간*12개월*201명=387,077,760원 |
| | **합 계** | **7,632,231,880원** | |
| 송무 관련 운영경비 | 특근매식비 | 57,888 | 134명×4회×12월×9,000원 |

자료: 법무부

### ▢ 공익법무관 감소 대응방안 마련 필요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법률구조업무[25]나 국가소송 등의 사무[26]에 종사하는 임기제공무원[27]임.「병역법」[28] 및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병역을 대체하여 종사하고 있음. 현재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검찰청 등의 기관에 총 195명의 공익법무관이 배치되어 있음.

---

25) 「법률구조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법률 상담,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

26)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의 수행과 법률자문업무 등 공공 목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

27)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신분)**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28)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보충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7) 공익법무관
**제34조의6(공익법무관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 <공익법무관 배치 현황>

(단위: 명, 2025년 10월 기준)

| 구분 | 인원 | 배치현황 |
|---|---|---|
| 법무부 | 84 | 감찰담당관실(1), 기획재정담당관실(1), 혁신행정담당관실(1), 정책기획단(1), 법무심의관실(9), 법무과(8), 국가소송과(9), 행정소송과(20), 통일법무과(2), 상사법무과(3), 법조인력과(3), 검찰과(1), 국제형사과(3), 형사법제과(4), 국제법무정책과(3), 국제법무지원과(3), 국제투자분쟁과(2), 치료처우과(1), 인권정책과(1), 인권구조과(2), 인권조사과(1), 여성아동인권과(1), 교정기획과(1), 출입국심사과(1), 국적과(2) |
| 검찰청 | 43 | 대검찰청(4), 서울고검(12), 수원고검(3), 대전고검(2), 대구고검(2), 부산고검(2), 광주고검(2), 서울중앙지검(3), 서울남부지검(1), 서울북부지검(1), 의정부지검(2), 인천지검(2), 춘천지검(1), 청주지검(1), 울산지검(1), 창원지검(2), 전주지검(1), 제주지검(1) |
| 소송수행청(파견) | 30 | 감사원(1), 개인정보보호위원회(2), 공정거래위원회(2), 과학기술정보통신부(1), 교육부(1), 국가보훈부(1), 국토교통부(2), 금융위원회(3), 방송통신위원회(1), 법원행정처(1), 보건복지부(1), 산업통상자원부(2), 서울지방보훈청(2), 식품의약품안전처(1), 중부지방국세청(2), 중소벤처기업부(1), 중앙노동위원회(2), 질병관리청(1), 해양경찰청(1), 행정안전부(1), 환경부(1) |
| 법률구조공단 | 32 | 서울중앙지부(1), 서울남부지부(1), 서울북부지부(1), 인천지부(3), 수원지부(2), 청주지부(1), 대구지부(3), 부산지부(2), 울산지부(1), 광주지부(2), 전주지부(1), 제주지부(1), 고양출장소(1), 남양주출장소(1), 성남출장소(1), 안산출장소(1), 안양출장소(1), 천안출장소(1), 대구서부출장소(1), 부산동부출장소(1), 마산출장소(1), 진주출장소(1), 통영출장소(1), 목포출장소(1), 순천출장소(1) |
| 기타 | 6 | 서울출입국청(4), 인천출입국청(1), 부산출입국청(1), 서울출입국청 세종로출장소(1) |
| 총원 | 195 | |

자료: 법무부

법률구조 및 국가송무 등 공적 목적이 강한 공익법무관의 업무 특성상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익법무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면, 최근 신규 임용되는 공익법무관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2017년 대비 필요인원을 192명에서 100명으로 줄였음에도 충원율은 60% 대에 머물고 있는 추세임.

〈최근 4년 및 2017년 공익법무관 업무별 배치현황 및 충원률〉

(단위: 명)

| 구 분 | | 2017년 | 2022년 8월 | 2023년 8월 | 2024년 8월 | 2025년 8월 |
|---|---|---|---|---|---|---|
| 전체인원 | | 583 | 122 | 131 | 171 | 195 |
| 업무 | 법률구조 | 255 | 20 | 21 | 31 | 32 |
| | 국가송무 | 328 | 102 | 110 | 140 | 163 |
| 충원률 | 필요인원(A) | 192 | 100 | 102 | 100 | 100 |
| | 충원인원(B) | 178 | 40 | 63 | 68 | 64 |
| | 충원률(B/A) | 92.7% | 40% | 61.8% | 68% | 64% |

자료: 법무부 ※ 공익법무관은 매년 8. 1.자로 신규·전보 인사를 발령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연수의 일환으로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로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025년 기준 총 35명의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가 법무부 본부에 배치되어 법률사무를 담당하고 있음.

〈2025년 법무부 본부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배치현황〉

(단위 : 명)

| 구분 | | 배치인원 |
|---|---|---|
| 법무부 본부 | 법무실 | 26 |
| | 국제법무국 | 3 |
| | 검찰국 | 3 |
| | 인권국 | 1 |
| | 범죄예방정책국 | – |
|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2 |
| | 소 계 | 35 |
| 전체 합계 | | 35 |

자료: 법무부

그러나,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종사

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신입 변호사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6개월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임. 매년 변호사시험의 합격인원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채용할 수 있는 인원에 한계가 있고, 근무기간 역시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위 제도가 공익법무관 감소에 대한 근본적 대응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임.

실제로, 2023년 법무부 내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의 모집인원은 74명이었으나 선발인원은 60명에 그쳤음. 2024년 역시 총 86명을 모집하였으나 선발인원은 62명에 불과하였고, 2025년에도 총 71명을 모집하였으나 선발인원은 6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최근 3개년 법무부 내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현황>**

(단위 : 명)

| 구분 | 2023 | 2024 | 2025 |
|---|---|---|---|
| 모집인원 | 74 | 86 | 71 |
| 선발인원 | 60 | 62 | 60 |
| 중도 이탈 인원[29] | * | * | * |

자료: 법무부

* 법률종사변호사 인원 및 예산은 각 실 · 국별로 관리되고 있어 중도 이탈 인원 등이 집계되지 않음, 다만 2025년 8월말 기준 실근무 인원은 35명임

따라서,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감소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업무량, 해당 지역의 변호사 수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갓 합격한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채용제도 외에도, 공익법무관을 대체할 수 있는 경력변호사 채용 등 법률구조·송무인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음.

29) 채용되었으나 실무수습기간 6개월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그만둔 인원

### ▢ 공익법무관의 실제 채용인원수에 따라 일부 예산 조정 필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5년 10월 기준 공익법무관의 총원은 195명이며, 공익법무관의 인원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2026년 역시 공익법무관의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사료됨.

이에 따라 본부 인건비(총액)(7001-100) 사업은 공익법무관 인건비 예산을 201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음에도,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1031-300) 사업의 공익법무관 특근매식비는 134명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이는 2026년에 실제 채용되는 공익법무관 인원 대비 인건비와 특근매식비는 실제 근무 인원과 차이가 있어 산정 방식의 조정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2026년도 예산안 중 본부 인건비(총액)(7001-100) 사업의 공익법무관 인건비(201명분, 특히 1년차를 70명으로 계상하였으나 최근 4년간 충원인원은 40명, 63명, 68명, 64명에 불과하여 70명을 확보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임)와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1031-300) 사업의 공익법무관 특근매식비(122명분)는 실제 채용되는 공익법무관 수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2) 국가배상금 지급(1031-301)

#### ▢ 예산안 개요

‘국가배상금 지급’ 사업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나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특별회계 소관, 국방부 소관 제외)으로 배상금과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130억 7,000만원(9.91%) 증액된 1,448억 3,500만원임.

**<국가배상금 지급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 결산 | 2025년 예산(A) | 2026년 예산안(B) | 증감 (B−A) | (B−A)/A |
|---|---|---|---|---|---|
| 국가배상금 지급 | 107,743 | 131,765 | **144,835** | 13,070 | 9.91 |

#### ▢ 최근 과거사 사건의 항소포기를 감안하여 예산 증액 필요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나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30]에 따라 배상판결금, 배상심의회

30)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결정금, 소송비용 확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배상 인용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정확한 연간 지급 규모 산출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4조[31]에 따라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 시 지방자치단체 배상금 지급 기관의 장은 2주 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적' 지출에 해당하고, 기한 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특성도 있음.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47조제1항[32] 단서는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예산의 이용(移用)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도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배상금'의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타 비목으로부터 자체 이용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바,[33] 법무부는 국가배상금 부족분 발생 시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소속기관 인건비 등으로부터 매년 예산을 이·전용[34]하여 집행하고 있음.

---

31)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4조(지급시기)** ①지방자치단체의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배상결정에 대한 동의를 하고 신청인으로부터 배상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2주일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의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배상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2주일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소속 지구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배상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1주일 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2)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3)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4. 1. p.231

그러나 2024회계연도의 예산 집행과정에서 '과거사 사건'에 대한 재심 등과 관련하여 형사보상금 지급 소요가 크게 발생하였는데, 당초 편성된 예산액 1,000억 원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어 법무실 소관의 사업으로부터 2억 2,800만원을 내역변경하고, 법무부 소관 기관들의 인건비 등에서 75억 1,500만원을 이·전용하여 지급하였음.

**<2024년도 국가배상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이 ·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날짜) | ~에서 | | 금액 | ~으로 | | 이·전용 등 사유 |
|---|---|---|---|---|---|---|
| |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 목-세목 코드 | |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 목-세목 코드 | |
| 내역변경 (2024.10.31.) |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운영 (1031-300) | 210-01 | 90 | 국가배상금 지급 (1031-301) | 210-01 | 국가송무 업무 수행 (감정료, 송달료 등 부족) |
| 내역변경 (2024.10.31.) |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운영 (1031-300) | 210-01 | 103 | 국가배상금 지급 (1031-301) | 210-01 | 국가송무 업무 수행 (감정료, 송달료 등 부족) |
| 내역변경 (2024.12.19.) |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운영 (1031-300) | 210-01 | 27 | 국가배상금 지급 (1031-301) | 210-01 | 국가송무 업무 수행 (감정료, 송달료 등 부족) |
| 내역변경 (2024.12.19.) |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운영 (1031-300) | 210-02 | 5 | 국가배상금 지급 (1031-301) | 210-01 | 국가송무 업무 수행 (감정료, 송달료 등 부족) |
| 내역변경 (2024.12.19.) |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운영 (1031-300) | 210-05 | 3 | 국가배상금 지급 (1031-301) | 210-01 | 국가송무 업무 수행 (감정료, 송달료 등 부족) |
| 전용 (2024.10.31.) |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1033-300) | 210-01 | 50 | 국가배상금 지급 (1031-301) | 210-01 | 국가송무 업무 수행 (감정료, 송달료 등 부족) |
| 전용 (2024.10.31.) | 성장동력 확충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1033-304) | 210-01 | 50 | 국가배상금 지급 (1031-301) | 210-01 | 국가송무 업무 수행 (감정료, 송달료 등 부족) |
| 전용 (2024.12.19.) |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운영 (1031-300) | 220-01 | 9 | 국가배상금 지급 (1031-301) | 210-01 | 국가송무 업무 수행 (감정료, 송달료 등 부족) |
| 전용 (2024.12.19.) | 통일대비법률통합실질화 (1041-300) | 210-07 | 5 | 국가배상금 지급 (1031-301) | 210-01 | 국가송무 업무 수행 (감정료, 송달료 등 부족) |

34) 자체 이용권 위임범위에 해당하는 경비는 자체 전용도 가능함(위 지침 p.234).

| 구분<br>(날짜) | ~에서 | | 금액 | ~으로 | | 이·전용 등<br>사유 |
|---|---|---|---|---|---|---|
| | 세부사업 명<br>(사업코드) | 목-세목<br>코드 | | 세부사업 명<br>(사업코드) | 목-세목<br>코드 | |
| 전용<br>(2024.12.19.) | 통일대비법률통합실질화<br>(1041-300) | 220-02 | 1 | 국가배상급 지급<br>(1031-301) | 210-01 | 국가송무 업무 수행<br>(감정료, 송달료 등 부족) |
| 이용<br>(2024.12.26.) | 교도소운영인건비<br>(7002-103) | 110-01 | 2,900 | 국가배상급 지급<br>(1031-301) | 310-02 | 국가 패소에 따른<br>국가배상금 부족 |
| 이용<br>(2024.12.26.) | 검찰청운영인건비<br>(7002-101) | 110-01 | 1,000 | 국가배상급 지급<br>(1031-301) | 310-02 | 국가 패소에 따른<br>국가배상금 부족 |
| 이용<br>(2024.12.26.) | 치료감호소운영인건비<br>(7002-106) | 110-01 | 500 | 국가배상급 지급<br>(1031-301) | 310-02 | 국가 패소에 따른<br>국가배상금 부족 |
| 이용<br>(2024.12.26.) |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인건비<br>(7002-100) | 100-01 | 500 | 국가배상급 지급<br>(1031-301) | 310-02 | 국가 패소에 따른<br>국가배상금 부족 |
| 이용<br>(2024.12.26.) | 법무연수원 인건비<br>(7002-102) | 110-01 | 1,200 | 국가배상급 지급<br>(1031-301) | 310-02 | 국가 패소에 따른<br>국가배상금 부족 |
| 이용<br>(2024.12.26.) | 법무연수원 인건비<br>(7002-102) | 110-02 | 1,300 | 국가배상급 지급<br>(1031-301) | 310-02 | 국가 패소에 따른<br>국가배상금 부족 |
| 합 계 | | | 7,743 | | | |

자료: 법무부

‘과거사 사건’에 대한 재심 등의 경우 사건 발생시점 자체가 매우 오래전이고 보상대상자의 수가 많아 보상액이 클 수밖에 없음. 또한, 당사자 신청과 법원 재판 등의 절차를 거쳐 배상 여부가 결정되므로 그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025년도의 경우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 사건(이른바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관련 항소를 포기하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사건 등에 대해서도 지난 9월경 항소를 포기하였으나, 이는 2026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항소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판결 미확정 사건이어서 반영하지 못하였음.

법무부는 2025년 항소를 포기한 사건 이외 국가배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으로 1,448억 3500만원을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것인바, 최근 확정된 판결에 대한 배상을 위하여 증액 편성할 필요가 있음.

**〈 "국가배상금" 사업 추계내역〉**

(단위: 백만원)

| 추계 구분 | | 편성 내역 | 합계 |
|---|---|---|---|
| 2026년 예산 편성액※ | 통상 소요액 | 최근 3년 평균 소요액 | 37,075 |
| | 과거사 사건 소요액 | 최근 3년 평균 소요액 | 159,083 |
| 2026년 예산 미 편성액 | 상소포기 예정 사건[35] | · 형제복지원 사건 56,855<br>· 선감학원 사건 21,537<br>· 삼청교육대 사건 50,400<br>※ 여순사건 추계 취합 중 | 128,792 |
| 총 추계액 | | | 324,950 |

자료: 법무부 ※ 통상 소요액, 과거사 사건 소요액 중 일부 2026년 예산 미반영

법무부 추계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사건의 확정 판결 배상금은 1,287억 9,200만 원이며, 여순 사건 배상금까지 약 600억 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됨. 이와 함께 통상 소요액 370억 7,500만 원, 과거사 사건 소요액 1,590억 8,300만 원을 합하면 2026년 예산안(1,448억 3,500만 원)보다 약 1,81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바, 확정판결 배상금 지급을 위해 최소 1,811억 원의 예산 증액 편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5) ○ 형제복지원 사건 ⇨ 약 568억 원( = 2억 2,209만 원 × 256명)
- 하급심 판결 선고 사건 원고 1인당 평균 인용액 2억 2,209만 원, 1심 진행 중인 원고 수 256명('25. 9. 기준)

○ 선감학원 사건 ⇨ 약 215억 원( = 1억 6,073만 원 × 134명)
- 하급심 판결 선고 사건 원고 1인당 평균 위자료 1억 6,073만 원, 1심 진행 중인 원고 수 134명('25. 9. 기준)

○ 삼청교육대 사건 ⇨ 약 504억 원( = 약 6,300만 원 × 1,600명 × 0.5)
- 하급심 판결 선고 사건 원고 1인당 평균 위자료 6,300만 원, 1심 진행 중인 사건들의 원고 수 1,600명 기준으로 하되, 실무상 국방부와 균분하여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 금액의 1/2만 추계

※ 여순사건 상소 포기·취하 관련, '25. 11.말까지 일선 청으로부터 상소 포기·취하 현황 취합 예정

### (3) 기업환경지수 개선(1032-307)

#### ▢ 예산안 개요

‘기업환경지수 개선’은 국제세미나, 서울 국제콘퍼런스, 기업투자환경 개선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역량강화를 통해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과 동일하게 26억 5,300만원이 편성됨.

**<기업환경지수 개선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 결산 | 2025년 예산(A) | 2026년 예산안(B) | 증감 (B−A) | (B−A)/A |
|---|---|---|---|---|---|
| 기업환경지수 개선 | 239 | 2,653 | 2,653 | − | − |

#### ▢ 사업 간 연계 추진 등을 통한 집행관리 철저 필요

법무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내역사업인 “기업환경평가대응 분쟁해결분야 역량 강화”를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민간경상보조(320-01) 방식으로 이루어짐.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36]에 따라 1966년에 설립된 상설 법정

36) **「중재법」 제40조(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국내외 상사분쟁(商事紛爭)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商事仲裁)를 하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중재기관으로 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하고 있음. 동 내역사업은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Business-Ready)[37]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보조[38]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24억원을 편성하였음.

**〈 "기업환경평가대응 분쟁해결분야 역량 강화" 내역사업 세부 편성내역〉**

(단위: 천원)

| 구분 | 편성 내역 | 합계 |
|---|---|---|
| 전문인력 확보 | o 사무국 전문인력(중재사건처리 변호사) 1,100,000 = 33,333*12월*1명 + 25,000*12월*1명 + 16,667*12월*2명<br>o 홍보/운영인력 200,000 = 6,667*12월*1명 + 4,167*12월*1명 + 2,917*12월*2명<br>o 위원회 위원 수당 100,000 = 417*12월*20명 | 1,400,000 |
| 사업비 | o Civil Law Summit for Asian Arbitration 개최 100,000 = 메인콘퍼런스 25,000 + 행사위탁(계약) 40,000 + 운영비 35,000<br>o 한국국제중재 홍보 100,000 = 법제, 판례, 중재판정 등 영문자료 제작 100,000*1년<br>o 국제중재센터 설명회/세미나 200,000 = (해외전략 대상국가 설명회 임차료 30,000 + 여비 13,600 + 운영비 6,400) + (해외중재기관 개최 행사 참석 및 홍보 여비 61,200 + 참가비 22,800 + 홍보비 66,000)<br>o 국내기업 대상 산업별 국제중재 홍보사업 100,000 = 강사사례금 500*5회*10명 + 자료집 5,000*5회 + 운영비 8,000*5회+행사안내 2,000*5회<br>o 중재전문인력 양성 100,000 = Vis Pre-Moot 행사 50,000 + 한국인 국제중재인 양성 프로그램 50,000 | 600,000 |
| 운영비 | o 임차료, 관리비, 시설비 등 400,000*1년 | 400,000 |
| **합계** | | 2,400,000 |

자료: 법무부

37)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는 각국의 기업환경을 분석하여 순위를 측정하는 제도로서, 기존 평가 방식인 Doing Business(DB)에서 2023년도부터 새로운 평가방식인 신 기업환경평가 Business Ready(Business-Ready)로 변경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24년 평가대상국에 포함되어, 2025년에 평가결과가 발표될 예정임.

38)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재정 지원)**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하는 사업
2. 제6조에 따라 교육 주관기관이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하는 사업
3. 그 밖에 제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추진하는 사업

다만, 동 내역사업 외에도 대한상사중재원 보조사업이 있는바, 법무부는 2025년에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1033-304)”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중재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17억 7,100만원을 보조한 바 있고, 2026년에도 36억 2,9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연도별 · 사업별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보조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 2022 | 2023 | 2024 | 2025 | | 2026(안) | |
|---|---|---|---|---|---|---|---|
| **세부사업** |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 (1033-304) | | |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1033-304) | 기업환경지수 개선 (1032-307) |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1033-304) | 기업환경지수 개선 (1032-307) |
| **내역사업** | 중재산업 활성화 | | | 중재산업 활성화 | 기업환경평가대응 분쟁해결분야 역량 강화 | 중재산업 활성화 | 기업환경평가대응 분쟁해결분야 역량 강화 |
| **예산액** | 2,365 | 2,365 | 2,578 | 1,771 | 2,400 | 3,629 | 2,400 |

자료: 법무부

2개 세부사업의 구체적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두 사업은 모두 해외 설명회·세미나 등 우리나라의 국제중재 홍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즉, “기업환경지수 개선(1032-307)” 세부사업의 경우 외국인 대상 우리나라 중재 법제, 판례 등을 번역하여 국제중재센터 홍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1033-304)”의 세부사업도 중재안내서 제작, 언론 홍보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또한,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1033-304)” 세부사업은 ‘국제중재 실무자 교육’ 및 ‘신규 위촉 중재인의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환경지수 개선(1032-307)” 세부사업 역시 ‘한국인 국제중재인 양성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2개 사업에 나뉘어 편성된 국제중재 홍보 및 교육 예산은 효율적으로 연계 집행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각 세부사업별 보조금 예산 편성내역 비교>

|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1033-304) | 기업환경지수 개선(1032-307) |
|---|---|
| 가. 사업비 (2,279,200천원)<br>1) **중재 콘텐츠 강화** (94,000천원)<br>- **중재안내서, 영문저널, 홈페이지 개선 등**<br>2) **중재전문 인력 양성** (185,200천원)<br>- **국제중재 실무자 교육, 신규 위촉 중재인 전문성 강화 교육, 중재전문 인력 관리**<br>3) APEC ODR Service Provider 수행을 위한 **전자중재시스템 구축**(2,000,000천원)<br><br>나. 운영비 (1,349,341천원)<br>- 임차료, 관리비, 회의수당, 국제중재센터 시설 개선 등 | 가. 국제중재센터 전문인력 확보 (1,400,000천원)<br>1) 사무국 전문인력(국제중재사건 처리 변호사) 사무총장급, 수석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1,100,000천원)<br>2) 국제중재센터 홍보/운영인력 (200,000천원)<br>3) 국제중재센터 위원회 위원 수당 (100,000천원)<br><br>나. 사업비 (600,000천원)<br>1) Civil Law Summit for Asian Arbitration (대륙법계 아시아 중재기관 연합 콘퍼런스) 개최 (100,000천원)<br>2) **한국 국제중재 홍보**<br>- **법제, 판례, 중재판정 등 관련 영문자료 제작** (100,000천원)<br>3) **국제중재센터 설명회/세미나** (200,000천원)<br>4) 국내기업 대상 산업별 국제중재 홍보 사업 (100,000천원)<br>5) **중재전문 인력 양성** (100,000천원)<br>- Vis Pre-Moot 행사 주최<br>- **한국인 국제중재인 양성 프로그램 운영**<br><br>다. 운영비(국제중재센터) (400,099천원)<br>- 임차료, 관리비, 시설비 등 |
| 3,628,541천원 | 2,400,099천원 |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이에 대하여,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1033-307)” 홍보예산은 대한민국을 중재지 또는 심리장소로 하는 해외 중재기관 중재사건 유치를 위한 설명회 등을 위한 것이고, “기업환경지수 개선(1032-304)” 사업 예산의 경우 우리 중재시스템과 중재기관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해외기업의 국내기관 중재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목적과 내용이 달라 양자는 별도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대한민국을 중재지 또는 심리장소로 하는 중재사건 유치와, 우리나라의 중재제도 및 중재기관을 활용한 국제중재 활성화는 상호 연계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양 사업은 동일하게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며, 사업 목적·방향 및 국재중제 홍보, 중재전문인력 양성 등 세부 내용에 있어서도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짐.

이를 감안할 때, 2026년도 각 세부사업은 개별 사업단위로 예산을 집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을 철저히 점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법무부는 국제중재 기능의 강화를 통한 기업환경평가 대응이라는 신규 내역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각 세부사업에 편성된 보조금 예산 중 국제중재 홍보, 국제중재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의 연계 추진을 검토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점검하는 등 사업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4)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1038-305)

#### ▢ 예산안 개요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39]을 주관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1억 7,400만원(3.3%) 감액 편성된 51억 900만원임.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 결산 | 2025년 예산(A) | 2026년 예산안(B) | 증감 (B-A) | (B-A)/A |
|---|---|---|---|---|---|
|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 5,112 | 5,283 | 5,109 | △174 | △3.3 |

#### ▢ 해외출장 예산 편성 시 사전계획 수립 및 구체화 필요

동 사업은 2026년도 예산안에 선진국 법조인 선발제도 및 시험문제 유형 실태조사를 위하여 국외업무여비(220-02) 1,9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39) 변호사로서 요구되는 이해관계의 충돌 등 직역윤리에 관한 규범의 습득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법조윤리시험을 합격하여야 변호사시험 응시를 위한 자격이 주어짐.

〈 “선진국 법조인 선발제도 및 시험문제 유형 실태조사” 세부 편성내역〉

(단위: 천원, 달러)

| 편성내역 | 원화 | 외화 |
|---|---|---|
| 가. 미국 (검사 1명, 사무관 2명, 주무관 1명, 7일) | 19,459 | $ 5,336 |
| 1) 항공료 : 3,023,750원×4명 | 12,095 | |
| 2) 일 비 : ($40×1명+$30×3명)*7일 | 1,256 | $ 910 |
| 3) 숙박비 : $124.7×4명×*5박 | 3,442 | $ 2,494 |
| 4) 식 비 : ($99×1명+$59×3명)*7일 | 2,666 | $ 1,932 |
| **합계** | **19,459** | **$ 5,336** |

자료: 법무부

이와 관련하여 최근 6년간의 해외출장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도에는 프랑스 변호사 연수원 견학 및 스페인 변호사 협회 방문 등을 위하여 1,945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액 집행하였음.

2024년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2022년에는 영국, 2019년에는 노르웨이·스웨덴을 방문하였으나, 2020년~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출장 제한, 2023년에는 변호사시험 CBT 시행 준비 비용충당을 위하여 국내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임.

〈2019년~2025년 국외출장 내역〉

(단위 : 천원)

| 연도 | 국가명 | 일자 | 방문기관 | 출장내용 | 편성내역 | 집행내역40) |
|---|---|---|---|---|---|---|
| 2025 | 프랑스, 스페인 | ‘25.5.10. ~ ‘25.5.18. | 파리 변호사연수원, 파리제1대학 법학부, 바르셀로나 변호사협회, 바르셀로나 대학교 법학부 | 변호사시험 5년 5회 응시 제한 관련 예외 사유 및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시험 폐지, 부정행위 시도 방지사례 등 관련 현장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19,459 | 19,459 |

| | | | | | | |
|---|---|---|---|---|---|---|
| 2024 | 독일, 오스트리아 | ‘24.6.2. ~ ‘24.6.10. | 독일 사법시험청, 베를린 자유대학교 전자 시험센터, 오스트리아 빈 대학 법학부 등 | 독일 사법시험의 디지털 시험 시행 참관, 사법시험 응시제한, 합격자 결정 기준 등 제도 운영 관련 면담, 오스트리아 법학 교육 및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 관련 면담 | 19,459 | 22,459 |
| 2023 | – | – | – | – | 19,459 | 0 |
| 2022 | 영국 | ‘22.10.31. ~ ‘22.11.6. | 런던시티대 로스쿨, 법정 변호사 기준 이사회, 런던 시험센터 등 | 영국 CBT 프로그램 시범 이용, CBT 진행방식 관련 면담 및 시험장 방문 등 | 19,132 | 13,572 |
| 2021 | – | – | – | – | 21,258 | 0 |
| 2020 | – | – | – | – | 21,000 | 0 |
| 2019 | 노르웨이, 스웨덴 | ‘19.6.1. ~ ‘19.6.10. | 오슬로대, 노르웨이 변호사협회, 스톡홀름 델피 사무소 등 | 노르웨이 법학교육 과정 및 재응시 제한, 시험출제 등 면담, 스웨덴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 관련 면담, 변호사 수급 등 면담 | 23,471 | 19,692 |

자료: 법무부

다만, 예산 편성 시 출장 계획과 실제 출장대상국 및 목적이 일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최근 5년간 동 사업 국외업무여비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2022년 예산 편성 시에는 호주 캔버라 및 스위스 제네바, 2023년에는 호주 캔버라, 2024년에는 뉴질랜드 방문 계획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하였음.

40) 2024년의 경우 2024.9.기준, 2020년, 2021년 코로나로 인한 국외출장 제한, 2023년 변호사시험 CBT 시행 준비 비용 부족으로 국내여비로 조정하여 집행

## <2022년~2025년 국외업무여비 세부 편성내역>

(단위: 천원)

| 2022년 | | 2023년 | | 2024년 | | 2025년 | |
|---|---|---|---|---|---|---|---|
| 가. 호주 캔버라 (검사 1명, 사무관 2명, 6일) | 6,335 | 가. 호주 캔버라 (검사 1명, 사무관 2명, 6일) | 18,883 | 가. 뉴질랜드 (검사 1명, 사무관 2명, 주무관 1명, 6일) | 18,936 | 가. 유럽 등 (검사 1명, 사무관 2명, 주무관 1명, 7일) | 19,459 |
| 1) 항공료 | 2,769 | 1) 항공료 | 12,000 | 1) 항공료 | 12,000 | 1) 항공료 | 12,095 |
| 2) 일비 | 644 | 2) 일비 | 1,238 | 2) 일비 | 1,248 | 2) 일비 | 1,256 |
| 3) 숙박비 | 1,932 | 3) 숙박비 | 3,829 | 3) 숙박비 | 3,858 | 3) 숙박비 | 3,442 |
| 4) 식비 | 990 | 4) 식비 | 1,816 | 4) 식비 | 1,830 | 4) 식비 | 2,666 |
| 나. 스위스 제네바(검사급 1명, 책임관 2명, 8일) | 12,033 | 나. 계수조정 | 576 | 나. 계수조정 | 523 | | |
| 1) 항공료 | 4,852 | | | | | | |
| 2) 일비 | 786 | | | | | | |
| **합계** | **19,132** | **합계** | **19,459** | **합계** | **19,459** | **합계** | **19,459** |

자료: 법무부

예산 집행과정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국외출장 소요가 발생하여 출장 대상국 및 목적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연례적으로 동일 국가를 대상으로 한 출장 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예산 편성 관행이 반복되는 부분은 개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① 인터넷·E-mail 또는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 수집이 가능한 경우, ② 해외공관이나 주재관 활용이 가능한 경우, ③ 국제회의 참석 등과 병행하여 자료조사가 가능한 경우 등에는 출장을 제한하고, 현안타결을 위한 해외출장 위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41)]

41)「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p.244

이를 바탕으로 할 때, 법무부는 선진국 법조인 선발제도 및 시험문제 유형 실태조사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편성 시, 방문국가 및 출장목적 등 사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5) 법무실 기본경비(7011-201, 7011-253)

#### ▢ 예산안 개요

‘법무실 기본경비(총액, 7011-201)’는 법무실 상용임금 일용임금, 특근매식비, 과 운영비 등 기관운영 필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고, ‘법무실 기본경비(7011-253)’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 법무실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임.

‘법무실 기본경비(총액, 7011-201)’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4,000만원(5.2%) 증액된 8억 700만원이고, ‘법무실 기본경비(7011-253)’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1,600만원(2.3%) 증액된 7억 2,300만원임.

<법무실 기본경비(총액, 7011-201)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 결산 | 2025년 예산(A) | 2026년 예산안(B) | 증감 (B-A) | (B-A)/A |
|---|---|---|---|---|---|
| 법무실 기본경비 | 550 | 767 | 807 | 40 | 5.2 |

<법무실 기본경비(7011-253)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 결산 | 2025년 예산(A) | 2026년 예산안(B) | 증감 (B-A) | (B-A)/A |
|---|---|---|---|---|---|
| 법무실 기본경비 | 664 | 707 | 723 | 16 | 2.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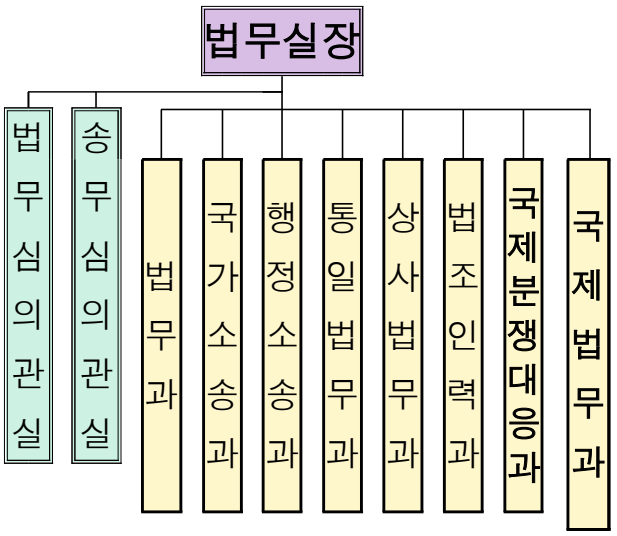
#### ▢ 조직개편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 반영 필요

법무부는 2023. 8. 8.「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공포·시행에 따른 직제 변경으로 국제법무국을 신설하고, 기존 인권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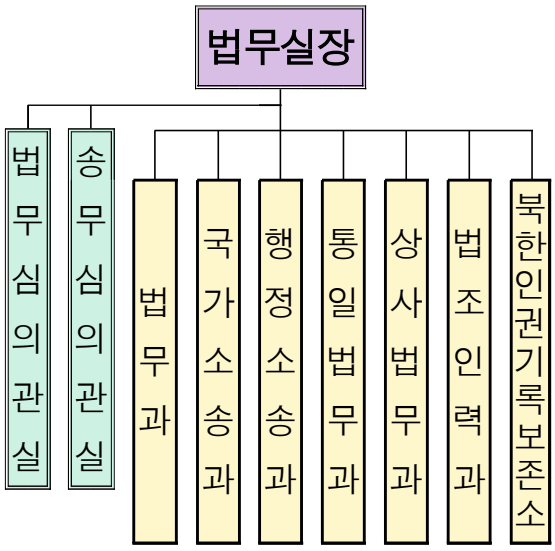
소속이었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실로 변경한바 있음.[42](2심의관 8과 → 2심의관 6과 1소)

**<법무부 조직개편(2023. 8.) 전 · 후 조직도 변화>**

**－조직개편 전 (법무실: 2심의관 8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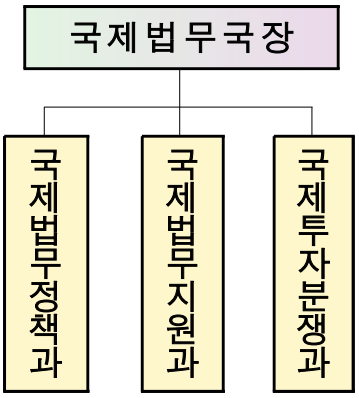



**－ 조직개편 후 (법무실: 2심의관 6과 1소 국제법무국 신설 :3과)**




---

4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법무실)** ①법무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0.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지도·감독
**제11조의3(국제법무국)** ① 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약 등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및 통상협상 참가와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국제규범 성안 회의 등 법무(형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5. 법무협력관 관련 업무 및 국외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연구·간행 및 국제협력·교류에 관한 사항
6. 국제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7.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
8. 대통령·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상사 분야 국제분쟁(통상분쟁은 제외한다) 및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9. 부 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
**제34조의3(직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관리 및 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




기존 법무실에 속해 있던 국제법무과, 국제분쟁대응과가 각각 국제법무정책과, 국제투자분쟁과로 변경되어 국제법무국으로 이관되고, 민사·상사 분야의 국제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을 위한 국제법무지원과가 새롭게 신설되었으며(1국 3과 체제), 법무실 통일법무과가 북한인권 기록보존소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음.

그러나, 국제법무과 및 국제분쟁대응과의 분리 이후 법무실 기본경비 총액이 증가한바,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감축 효과보다 공통경비 및 사업추진 등 불가피한 증액 요인이 감액을 상회한 결과로 보임.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조직 및 기능 변동 사항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이미 일부 감액 조정이 이루어진 만큼, 향후에도 집행 추이와 예산구조를 지속 검토하여 적정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법무실 기본경비(총액, 7011-201) 연도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2년 결산 | 2023 결산 | 2024년 결산 | 2025년 예산 | 2026년 예산안 |
|---|---|---|---|---|---|
| 법무실 기본경비 | 586 | 587 | 550 | 767 | 807 |

<법무실 기본경비(7011-253) 연도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2년 결산 | 2023 결산 | 2024년 결산 | 2025년 예산 | 2026년 예산안 |
|---|---|---|---|---|---|
| 법무실 기본경비 | 515 | 546 | 664 | 707 | 723 |

또한, '법무실 기본경비(7011-253)'사업의 내역사업인 관서업무추진비는 2025년 대비 720만원 증액되었는데, 710만원은 '법조 인접직역 관련기관 업무협의' 명목으로 증액된 것임. 기존에 법무실 기본경비에도 관서업무추진비 명목으로 ① 유관부서간 간담회, ② 세미나, 회의 및 간담회, ③ 유관기관 업무협의, ④ 통일법무관련 업무협의, ⑤ 북한 인권 관련기관 업무협의 등 총 9개 명목의 업무추진 명목이 있음에도 법조인접직역 업무협의 명목을 추가한 것임.

<2025년, 2026년 관서업무추진비 산정내역 비교>

| 2025년 산정내역 | | 2026년 산정내역 | |
|---|---|---|---|
| |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49,894천원 | |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57,097천원 |
| 49,894 | 1. 법무실 행사추진 경비 6,000천원<br>2. 법무실 직원 간담회 6,500천원<br>3. 법령정비 사업추진비 1,800천원<br>4. 유관부서간 간담회 및 대책회의 5,000천원<br>5. 세미나, 회의 및 간담회 4,894천원<br>6. 유관기관 업무협의 활동 10,000천원<br>7. 공증지도점검 지원 등 1,600천원<br>8. 통일법무관련 업무협의 10,000천원<br>9. 북한인권 관련기관 업무협의 등 4,100천원 | 57,097 | 1. 법무실 행사추진 경비 6,000천원<br>2. 법무실 직원 간담회 6,500천원<br>3. 법령정비 사업추진비 1,800천원<br>4. 유관부서간 간담회 및 대책회의 5,000천원<br>5. 세미나, 회의 및 간담회 4,894천원<br>6. 유관기관 업무협의 활동 10,000천원<br>7. 공증지도점검 지원 등 1,700천원<br>8. 통일법무관련 업무협의 10,000천원<br>9. 북한인권 관련기관 업무협의 등 4,100천원<br>**10. 법조인접직역 관련기관 업무협의 등 7,103천원** |
| **49,894천원** | | **57,097천원** | |

자료: 법무부

이미 유관부서간 간담회, 유관기관 업무협의, 세미나, 회의 및 간담회 등 유관기관에 대한 업무협의 명목으로 편성된 업무 추진비용이 있음에도, ‘법조인접직역 업무협의’를 신규 편성하여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것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법무부는 ‘법조인접직역 업무협의’는 최근 AI 등을 이용한 리걸테크 분야의 급속한 성장과 민간 분야 법조직역의 교류 필요성 증대로 인해 기존 유관기관 협의성 업무추진비와 목적 및 집행대상이 상이한 정책협의성 경비로서, 변호사·법무사·행정사 등 법조직역 단체 간 제도개선 및 직역갈등 완화 논의를 위해 신설하였다는 의견임.

법무부는 기존의 국제법무과와 국제분쟁대응과가 국제법무국으로 이관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의 관서업무추진비와 유사한 신규 편성사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법무실 기본경비 예산 추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다. 인권국

### (1) 법률구조(1131-300)

#### ▢ 예산안 개요

‘법률구조(1131-300)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및 법률지식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법률구조 사업비를 수지차 보전 방식으로 보조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8억 6,700만원(2.8%) 감액된 654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법률구조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 | 2025 | | 2026 | | |
|---|---|---|---|---|---|---|
| | 결산 | 본예산 | 추경예산 (A) |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법률구조사업 | 64,815 | 67,337 | 67,337 | **65,470** | △1,867 | △2.8 |
| · 법률구조기구 관리 및 연계강화 | 50 | 50 | 50 | **238** | 188 | 376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62,897 | 65,370 | 65,370 | **63,003** | △2,367 | △3.62 |
| · 가정복지관련법률구조 | 1,870 | 1,917 | 1,917 | **1,976** | 59 | 3 |
| · 기타법률구조 | - | - | - | **253** | 253 | - |

### ▢ 홍보 및 법계몽활동비 예산 자부담 검토 필요

법무부는 본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수지차보전 방식의 보조를 매년 실시하고 있음. 이는 경제적 어려움 및 법률지식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법교육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본적 인권 옹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임.

법무부는 매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추산한 자체수입과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의 추산액을 합산한 총지출의 차액만큼을 민간경상보조(320-01)로 편성하고 있으며, 2026년 예산안에서는 전년 대비 23억 6,700만원을 감액한 630억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026년도 사업비 중 ‘홍보 및 법계몽활동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4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 · 2026년도 ‘대한법률구조공단’ 관련 예산 세부내역>**

| 연도 | 예산 | 산출내역 |
|---|---|---|
| 2025 | 65,370 | ○ 민간경상보조(320-01) 65,370,000천원<br>가. 인건비 (66,457,000천원)<br>· 778명*85,420천원<br>나. 경상비 (2,574,000천원)<br>· 778명*3,308천원<br>다. 사업비 (48,307,000천원)<br>· 법률구조활동비 : 25,742,000천원<br>135개 기관 x 190,681천원<br>· 청 · 관사취득 및 관리 : 6,894,000천원<br>135개 기관 x 51,067천원<br>· 업무전산화 : 11,807,000천원<br>135개 기관 x 87,459천원<br>· 기관운영비 : 2,906,000천원<br>135개 기관 × 21,526천원 |

| 연도 | 예산 | 산출내역 |
|---|---|---|
| | | ・ 법률구조제도 · 조사연구 : 53,000천원<br>135개 기관 x 393천원<br>**・ 홍보 및 법계몽활동비 : 483,000천원**<br>**135개 기관 x 3,578천원**<br>・ 기타배상금 : 22,000천원<br>135개 기관 x 163천원<br>・ 법문화특별회계 전출금 : 400,000천원<br>135개 기관 x 2,963천원<br>○ 총지출 : 117,338,000천원<br>○ 자체수입 : 51,968,000천원 |
| 2026 | | ○ 민간경상보조(320-01) 63,003,000천원<br>가. 인건비 (66,470,000천원)<br>・ 740명*89,824천원<br>나. 경상비 (2,501,000천원)<br>・ 740명*3,380천원<br>다. 사업비 (38,050,000천원)<br>・ 법률구조활동비 : 22,503,000천원<br>135개 기관 x 166,689천원<br>・ 청 · 관사취득 및 관리 : 7,027,000천원<br>135개 기관 x 51,067천원<br>・ 업무전산화 : 4,856,000천원<br>135개 기관 x 35,970천원<br>・ 기관운영비 : 3,006,000천원<br>135개 기관 × 22,267천원<br>・ 법률구조제도 · 조사연구 : 53,000천원<br>135개 기관 x 393천원<br>**・ 홍보 및 법계몽활동비 : 483,000천원**<br>**135개 기관 x 3,578천원**<br>・ 기타배상금 : 22,000천원<br>135개 기관 x 163천원<br>・ 법문화특별회계 전출금 : 100,000천원<br>135개 기관 x 741천원<br>○ 총지출 : 107,021,000천원 |

2026년도 ‘홍보 및 법계몽활동비’ 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간행물 인쇄·제작 및 유튜브 온라인 홍보 등을 포함한 ‘법률구조지 등 간행물’ 2억 6,800만원과 상·하반기 고객만족도 조사 및 지부·출장소 활동 등을 포함한 ‘고객만족도 조사 등’ 2억 1,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6년도 ‘대한법률구조공단’ 홍보비 예산 세부내역〉

| ㅇ 홍보비 편성 내역(단위: 백만원) |
|---|
| – 법률구조지 등 간행물 268<br>• 간행물 · 안내책자 · 기념품 등 인쇄 · 제작 134 • 정기구독료 등 3<br>• 슬로건 공모 포상 · 언론보도상 4 • 신문 등 광고비 49<br>• 공단 홈페이지 홍보 동영상 제작 8 • 홍보대사 활용 홍보 20<br>•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 50 |
| – 고객만족도 조사 등 215<br>• 상 · 하반기 고객만족도 조사 112 • 법률구조위원 · 시민단체 등 간담회 28<br>• 지부 · 출장소 등 활동 45 • 대중매체 업무협의 9<br>• 홍보대사 활동비 21 |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그런데, 간행물인 「법률구조연감」, 「공단 사보」를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으나[43], 법원과 법무부 등 관련 기관에 공문 배포하거나 요청자에 한하여 이메일로 발송하고 있어 대한법률구조공단 업무에 대한 홍보효과는 제한적임. 또한, 간행물의 주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요활동 등 소개에 한정되어 있음.

유튜브 채널(법구공TV)[44]의 경우 업로드된 일부 영상이 법률구조절차 및 법률지식을 다루고 있으나, 대체로 조회수는 높지 않아 ‘준법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계몽사업’이라는 법률구조법상 사업 취지[45]가 충실하

43) https://www.klac.or.kr/notification/leafletList.do 참조

44) 2025년 1월부터 현재(10월31일 기준)까지 업로드된 영상 중 ‘반려동물 관련법률’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회수가 1,000회 미만임(https://www.youtube.com/@K.L.A.C. 참조).

45)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법률구조
2.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게 전달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대한법률구조공단 예산 중 법문화특별회계 예산으로 운영되는 '법문화교육센터'의 '일반시민 법교육' 등의 사업[46]과도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보임.

한편, 2020회계연도부터 2024회계연도까지 5년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홍보비 예·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을 제외하고는 집행률이 90% 미만이고 2024년도 집행률은 5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5년간 '대한법률구조공단' 홍보비 예산 ·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10월) |
|---|---|---|---|---|---|---|
| 예산 | 513 | 513 | 513 | 483 | 483 | 483 |
| 결산 | 436 | 532 | 449 | 395 | 233 | 173 |
| 집행률 (%) | 85 | 103.7 | 87.5 | 81.8 | 48.2 | 35.8 |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또한, 같은 기간의 결산보고서를 살펴보면, 홍보 및 법계몽활동비를 전액 자부담으로 지출하다가 2022회계연도부터 5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고, 차년도부터는 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는 등 전체 홍보 및 법계몽활동비 중 국고보조금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3. 준법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계몽사업
4. 그 밖에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46) 중장년층 및 노인 법교육, 농업인 생활법률, 청년 법교육 등을 포함한 생활법률교육 프로그램으로, 온라인교육 및 찾아가는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음(https://edu.klac.or.kr/edu/ko/educational-program-contents 참조)

<최근 5년간 '대한법률구조공단' 홍보비 예산 세부 내역>

(단위: 원)

|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국고보조금 | - | - | 5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 자체자금 | 436,436,610 | 532,326,631 | 399,506,606 | 295,223,462 | 133,337,340 |
| 계 | 436,436,610 | 532,326,631 | 449,506,606 | 395,223,462 | 233,337,340 |
| 국고보조금 비율(%) | 0 | 0 | 11.1 | 25.3 | 42.9 |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2020~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재구성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은, 중앙관서의 장은 3년 이상 지원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행사·홍보성 경비는 자부담 가능한 경우이거나 국가 차원 행사가 아닌 경우 절감을 검토하여 예산을 요구하도록 규정함.[47] 따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지속적인 '홍보 및 법계몽활동비' 는 국가 차원의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홍보 및 법계몽활동비'에 대한 자부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7)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107면

### (2) 인권교육(1133-300)

#### ▢ 예산안 개요

‘인권교육’은 법무·검찰공무원에게 인권에 관한 소양과 인권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법무·검찰공무원에게 전문성과 직무적합성 높은 인권교육을 지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00만원(0.5%) 증액된 1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인권교육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 | 2025 | | 2026 | | |
|---|---|---|---|---|---|---|
| | 결산 | 본예산 | 추경예산 (A) |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인권교육 | 188 | 191 | 191 | 192 | 1 | 0.5 |
| ·인권감수성훈련 | 154 | 158 | 158 | 157 | △1 | △0.6 |
| ·1:1 맞춤형 교육 | 22 | 24 | 24 | 23 | △1 | △4 |
| ·외부강사 기관방문 교육 | 12 | 9 | 9 | 12 | 3 | 33.3 |

### ▢ 인권감수성 훈련 임차료 예산절감 집행방안 마련 필요

인권교육의 내역사업인 '인권감수성훈련'은 법무부 소속 검찰·교정·보호·출입국관리 직렬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2박 3일간 합숙 교육임. 법무부 소속 직렬별 직원들이 강사로 초빙되며, 인권국 자체개발 교재로 인권 이해, 차별 극복, 인권 실천계획 등을 가르치도록 함. 구체적으로, 검찰·교정·보호·출입국 각 직렬 주무부서를 통해 교육대상자 20명을 선발하고, 교육대상자에게 사전설문조사 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후에는 사후설문조사를 실시함.

**<인권감수성훈련 절차>**

| 검찰 · 교정 · 보호 · 출입국 각 직렬 주무부서를 통해 교육대상자 선발(20명) | → | 교육대상자 사전설문조사 | → | 직렬별 내부강사에 의한 교육실시 | → | 교육대상자 사후설문조사 |
|---|---|---|---|---|---|---|

**<인권감수성훈련 각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명 | 2024년 | | | | | | | | 2025년 | | 2026년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 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집행액 (7월말) | 예산액 |
| • 인권감수성훈련 | 171 | – | – | – | 168 | 154 | – | 14 | 158 | 86 | **156** |
| – 일반수용비 (210–01) | 21 | – | – | – | 18 | 18 | – | – | 21 | 10 | **19** |
| – 특근매식비 (210–05) | 3 | – | – | – | 3 | 3 | – | – | 3 | 1 | **4** |
| – 임차료 (210–07) | 84 | – | 7 | – | 91 | 90 | – | 1 | 98 | 59 | **98** |
| – 국내여비 (220–01) | 63 | – | △7 | – | 56 | 43 | – | 13 | 36 | 16 | **36** |

그동안 인권감수성 훈련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과성 및 수행방식, 임차료 집행방식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음. 특히 2022회계연도 우리 위원회 결산에서는 사업예산 중 숙박비에 해당하는 임차료 비중은 과도하나, 훈련대상 인원수는 오히려 계획 대비 미흡한 상황이므로, 현행 합숙 교육을 당일 교육으로 전환하는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교육 인원을 확대하라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음.[48)]

본 사업의 임차료(210-07) 예산의 경우, 2024년도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내여비(220-01)에서 7백만원을 전용한 후 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도에는 전년 예산편성액 대비 1,400만원 증가(약 16.7%)한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에는 전년과 동일한 예산액을 편성하였는바, 2022회계연도 이후 임차료 예산편성액은 외관상 크게 증가하였음. 다만, 이는 그동안 국내여비(220-01)로 편성되어 식비 등 명목으로 숙박업체 등에 입금되던 1,400만원을 2023회계연도 우리 위원회 결산 지적에 따라 임차료(210-07)항목에 편성하여 발생한 증액으로서 임차료의 순증액은 아님.

그런데, 법무부는 2024 회계연도에 내부강사 역량강화 과정을 포함한 인권감수성훈련을 총 22회 진행(□□인재개발원에서 19회, 법무연수원에서 3회)하면서 임차료를 □□인재개발원에 대하여 87,569,400원, 법무연수원에 대하여 2,887,700원을 집행하였는바, 동일한 내용의 훈련임에도

48) 법제사법위원회, 2022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78면

회차 당 평균 임차료 지급액은 □□인재개발원이 약 461만원, 법무연수원이 약 96만원으로 전자가 후자의 약 4.8배에 해당함.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르면 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는 각급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는바, 회차당 평균 임차료 지급액이 법무연수원보다 몇 배 더 비싼 □□인재개발원에서 주로 교육을 진행한 것은 동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이었음.

**<2024년 인권감수성훈련 예산 집행내역>**

(단위: 천원)

| 연번 | 교육명<br>(일시, 장소) | 집행내역 | | | | | 비고 |
|---|---|---|---|---|---|---|---|
| | | 임차료 | 여비<br>(식비) | 출장<br>여비 | 특근<br>매식비 | 수용비 | |
| 1 | 내부강사역량강화과정<br>(교정, 출입국)<br>(3. 6.~8. □□인재개발원) | 3,835 | 1,441 | 547 | 150 | 1,526 | 수용비에 강사료 1,310천원 포함 |
| 2 | 인권감수성훈련(교정)<br>(3. 13.~15., 법무연수원) | 448 | 884 | 688 | 299 | 154 | |
| 3 | 내부강사역량강화과정(검찰,보호)<br>(4. 3.~5. □□인재개발원) | 4,842 | 2,282 | 616 | 70 | 1,418 | 수용비에 강사료 1,310천원포함 |
| 4 | 인권감수성훈련(검찰)<br>(4. 17.~19., □□인재개발원) | 3,681 | 1,441 | 999 | 70 | 162 | |
| 5 | 인권감수성훈련(출입국)<br>(4. 17.~19., □□인재개발원) | 3,527 | 1,441 | 1,473 | - | - | |
| 6 | **인권감수성훈련(교정)<br>(5. 8.~10., □□인재개발원)** | **3,619** | 1,802 | 800 | 70 | 159 | |
| 7 | 인권감수성훈련(보호)<br>(5. 8.~10., □□인재개발원) | 3,542 | 1,502 | 421 | - | 162 | |
| 8 | 인권감수성훈련(검찰)<br>(5 22 ~24., □□인재개발원) | 3,219 | 1,469 | 1,477 | 300 | 126 | |
| 9 | 인권감수성훈련(출입국)<br>(5 22 ~24., □□인재개발원) | 3,157 | 1,201 | 942 | - | - | |
| 10 | **인권감수성훈련(교정)<br>(6 3 ~5., 법무연수원)** | **516** | 1,012 | 898 | - | 126 | |
| 11 | 인권감수성훈련(교정)<br>(6 19 ~21., □□인재개발원) | 3,465 | 1,802 | 1,268 | 360 | 270 | |

| 연번 | 교육명<br>(일시, 장소) | 집행내역 | | | | | 비고 |
|---|---|---|---|---|---|---|---|
| | | 임차료 | 여비<br>(식비) | 출장<br>여비 | 특근<br>매식비 | 수용비 | |
| 12 | 인권감수성훈련(보호)<br>(6 19 ~21., □□인재개발원) | 3,338 | 1,502 | 1,071 | 335 | 108 | |
| 13 | 인권감수성훈련(교정)<br>(7 10 ~12., □□인재개발원) | 3,927 | 1,802 | 1,487 | 325 | 108 | |
| 14 | 인권감수성훈련(검찰)<br>(9 4 ~6., □□인재개발원) | 5,807 | - | 1,289 | 347 | - | |
| 15 | 인권감수성훈련(교정)<br>(9 4 ~6., □□인재개발원) | 6,037 | - | 1,312 | - | 144 | |
| 16 | 인권감수성훈련(교정)<br>(9 25 ~27., □□인재개발원) | 5,883 | - | 1359 | - | 822 | |
| 17 | 인권감수성훈련(보호)<br>(9 25 ~27., □□인재개발원) | 5,198 | - | 720 | - | 322 | |
| 18 | 인권감수성훈련(교정)<br>(10 16 ~18., □□인재개발원) | 6,191 | - | 1393 | - | 734 | |
| 19 | 인권감수성훈련(보호)<br>(10 16 ~18., □□인재개발원) | 5,506 | - | 1,278 | - | 360 | |
| 20 | 인권감수성훈련(출입국)<br>(10 16 ~18., □□인재개발원) | 5,355 | - | 828 | - | 980 | |
| 21 | 인권감수성훈련(교정)<br>(11 4 ~6., 법무연수원) | 1,923 | - | 1,399 | 192 | 126 | |
| 22 | 내부강사 역량강화과정<br>(11. 20.~22.□□인재개발원) | 7,443 | - | 1263 | 286 | 2,003 | 수용비에 강사료 1,550천원포함 |
| 23 | 인권감수성훈련 교재인쇄, 보조자료 구입 | - | - | - | - | 7,970 | |

자료: 법무부

따라서, 향후 법무부는 2024회계연도 결산 지적을 감안하여 법무연수원 등 공공기관에서의 교육 횟수를 대폭 증가시키는 동시에 □□인재개발원에서의 교육 횟수를 줄일 필요가 있고, 임차료 예산(210-07)도 일부 감액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교육 형식을 당일 교육으로 변경하는 등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 (3) 아동인권 증진(1133-302)

#### ▢ 예산안 개요

‘아동인권 증진’은 아동학대 대응인력 역량 강화 교육, 사건관리회의 지원, 아동인권 증진 연구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사법영역에서의 아동권익 보장 및 인권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하게 2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아동인권 증진>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 | 2025 | | 2026 | | |
|---|---|---|---|---|---|---|
| | 결산 | 본예산 | 추경예산(A) | 예산안(B) | 증감(B-A) | (B-A)/A |
| ○아동인권 증진 | 245 | 245 | 245 | 245 | 0 | - |
| ·아동학대 사건관리 회의 지원 | 28 | 28 | 28 | 28 | 0 | - |
| ·아동인권 증진 인식 개선 홍보 및 교육 | 197 | 197 | 197 | 197 | 0 | - |
| ·아동인권 증진 연구 | 20 | 20 | 20 | 20 | 0 | - |

#### ▢ 아동인권증진 교육예산의 비목변경 및 감액 검토 필요

아동인권증진 교육 및 홍보는 ‘아동인권 증진’의 내역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아동학대 대응인력(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보호위탁시설 종사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아동인권 증진 교육사업(예산액 1억 2,700만원,

일반수용비)’과 ‘홍보사업(예산액 7,000만원, 일반용역비)’으로 구성되어 있음. 아동인권증진 교육 및 홍보의 구성 및 각 항목의 예산액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동일함.

**<2024년도~2026년도 아동인권 증진 교육 및 홍보 예산 각목별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 | 2025 | | 2026 | | |
|---|---|---|---|---|---|---|
| | 결산 | 본예산 | 추경예산(A) | 예산안(B) | 증감(B-A) | (B-A)/A |
| ·아동인권 증진 인식 개선 홍보 및 교육 | 197 | 197 | 197 | 197 | 0 | - |
| - 일반수용비(210-01) | 127 | 127 | 127 | 127 | 0 | - |
| - 일반용역비(210-14) | 70 | 70 | 70 | 70 | 0 | - |

내내역사업인 아동인권 증진 교육은, 기존에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던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을 2023년도부터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추진하면서 교육 일원화와 참여 인원 확대에 대한 합의의 결과물임.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교육장소 등의 대관 비용, 복지부는 잔여 비용을 각각 부담하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보건복지인재원에서 교육장소를 섭외하여 예상 소요비용을 추산하며 법무부와의 논의를 통해 비용분담 비율을 정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2024년 법무부는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 교육장소 대관비용을 전액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하였는데, 모든 회차의 교육은 4성급 호텔에서 1박2일간 합숙교육 형태로 진행되었음.

〈2024회계년도 아동인권 증진 교육 결산내역〉

| 회차 | 법무부 부담비용(원) | 집행비목 | 정원 | 숙소명 (지역) | 숙소등급 |
|---|---|---|---|---|---|
| 제1기 | 8,190,000 | 일반수용비 (210-01) | 93명 | □□호텔 (대구) | 4성급 |
| 제2기 | 9,230,000 | 일반수용비 (210-01) | 108명 | □□호텔 (대구) | 4성급 |
| 제3기 | 7,629,000 | 일반수용비 (210-01) | 71명 | ◇◇호텔 (광주) | 4성급 |
| 제4기 | 7,321,000 | 일반수용비 (210-01) | 66명 | ◇◇호텔 (광주) | 4성급 |
| 제5기 | 14,760,000 | 일반수용비 (210-01) | 94명 | △△호텔 (대전) | 4성급 |
| 제6기 | 9,064,000 | 일반수용비 (210-01) | 86명 | ▽▽호텔 (부산) | 4성급 |
| 제7기 | 13,526,400 | 일반수용비 (210-01) | 76명 | ◎◎호텔 (서울) | 4성급 |
| 제8기 | 17,900,000 | 일반수용비 (210-01) | 79명 | ☆☆호텔 (서울) | 4성급 |
| 제9기 | 13,500,000 | 일반수용비 (210-01) | 69명 | ★★호텔 (경기) | 4성급 |
| 제10기 | 13,500,000 | 일반수용비 (210-01) | 85명 | ▲▲호텔 (경기) | 4성급 |

자료: 법무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는 일반수용비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숙박비는 원칙적으로 임차료 비목(210-07)으로 편성·집행하여야 함.[49] 그런데, 본 사업은 교육 소요 숙박비를 일반수용비로 편성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법무부는 호텔 대관료를 임차료 비목이 아닌 일반수용비 비목으로 전액 편성 및 집행하였음.

49) 예외적으로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또한, 동 지침에 따르면 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는 각급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행사장의 경우 호텔 등 비용 소요가 큰 장소 임차는 지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도 제8기 교육을 살펴보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호텔 측과의 계약(총액 3,614만원)을 '식음료 사항(1,824만원)'과 '일반적 사항(객실료, 대관료 등 1,790만원)' 항목으로 분리하고 전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후자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2인1실의 객실의 요금이 1박에 30만원이고, 중·석식 비용은 1일 25,000원 지급 규정에 비추어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는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 임차를 지양하도록 한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으로 보임.[50]

**<2024년도 제8기 아동인권 증진 교육 호텔 계약 약정서>**

| 식음료 사항 | | | | |
|---|---|---|---|---|
| 구분 | 수량(인원수) | 단가(단위: 원) | 금액(단위: 원) | 비고 |
| 음식 | 96 | 45,000 | 4,320,000 | 도시락 (1일차 중식) |
| | 96 | 100,000 | 9,600,000 | 뷔페 (1일차 석식) |
| | 96 | 45,000 | 4,320,000 | 도시락 (2일차 중식) |
| 식음료 합계 | | | 18,240,000 | |
| **일반적 사항** | | | | |
| 대실료(행사장) | 1 | | 2,350,000 | 1일차 |
| | 1 | | 2,350,000 | 2일차 |
| 객실(숙박료) | 44 | 300,000 | 13,200,000 | 2인1실 |
| 일반적 사항 합계 | | | 17,900,000 | |
| **총계** | | | 36,140,000 |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50) 참고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에서는, 본 교육 대상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등 제2호 공무원에 대하여 숙박비(서울특별시)는 1일당 10만원 상한에서 실비를 지급하고, 식비는 1일당 25,000원 지급을 규정하고 있음.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역량 증진을 통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본 교육의 공익적 취지는 인정되나, 본 교육의 예산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 등 규정을 준수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편성 및 집행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2026년도 예산안의 아동인권증진 교육사업의 현 비목인 일반수용비(210-01)를 임차료(210-07)로 변경하고, 편성된 예산을 일부 감액할 필요가 있음.[51]

51) 장기적으로는, 보건복지부와의 비용분담 방식 및 계약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비대면 교육 활용 등을 통하여 당일 교육으로 전환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1) 이민정책개발지원(1231-300)

#### ▢ 예산안 개요

‘이민정책개발지원’은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담당자 대상 교육과 이민정책소식지 발간을 통해 이민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확산하고, 주요국의 이민정책 사례연구 및 정책연구용역 실시로 이민정책개발에 기여하려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00만원(3.2%) 증액된 1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이민정책개발지원(1231-300)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 | 2025 | | 2026 | | |
|---|---|---|---|---|---|---|
| | 결산 | 본예산 | 추경예산 (A) |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이민정책개발지원 | 327 | 190 | 190 | 196 | 6 | 3.2 |
| • 이민정책개발 업무지원 | 141 | 99 | 99 | 105 | 6 | 6.1 |
| • 이민정책개발 연구 | 186 | 91 | 91 | 91 | - | - |

### ▢ 핵심사업이 결여된 세부사업 추진의 필요성 재점검 필요

동 세부사업은 “이민정책개발 업무지원” 및 “이민정책 개발연구”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민정책개발 업무지원” 내역사업은 이민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확산을 위한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담당자 교육 및 국제 이민협력 네트워크 구축지원을 위한 공무직근로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2026년도에 1억 531만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이민정책 개발연구” 내역사업은 출입국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주요 선진국의 이민정책 사례를 연구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6년도에 9,069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런데, 2026년 편성된 예산의 산출내역과 비중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이 이민정책연구개발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은 없는 대신 관련성이 낮은 일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동 사업 추진이 적절한지와 세부사업은 적정한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임.

먼저, “이민정책개발 업무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예산 1억 531만원 중 전체의 58%를 차지하는 6,050만원이 국제 이민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담당하는 영문에디터 1인 운영에 필요한 보수, 수당, 고용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고(아래표 음영참조),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 관련 예산이 전체 36%인 3,82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2026년도 이민정책 개발연구 내역사업비 주요내용>

| 2026년 예산안 | |
|---|---|
| 예산 | 산출내역 |
| 105,312<br>천원 | ○ 상용임금(110-03) : 50,083천원<br>가. 보수 : 1명×3,631,000원×12월=43,572천원<br>나. 명절휴가비 : 1명×2,178,600원×2회=4,357천원<br>다. 정액급식비 : 1명×140,000원×12월=1,680천원<br>라. 기타 수당 : 474,000원<br>○ 복리후생비(210-12) : 500천원<br>가. 맞춤형복지비 : 1명×500,000원=500천원<br>○ 일반용역비(210-14) : 38,276천원<br>가. 중앙부처 및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 : 38,276천원<br>○ 사업추진비(240-01) : 6,536천원<br>1. 선진 이민당국 등 교류 경비 : 2,689,000원<br>2. 이민정책 개발 관련 유관기관 협의 등 : 3,847,000원<br>○ 고용부담금(320-06) : 9,917천원<br>가. 4대보험료 및 퇴직금 : 50,083,000원×19.8%=9,917천원<br>・음영 : 영문에디터 관련 예산 |

특히, 영문에디터 공무직 1인의 수행 업무는 국제 협정문 번역 및 감수, 외국 이민정책 정책자료 수집・번역, 출입국 법령・연감・통계 등의 영문 번역과 제작, 국제회의 자료 통・번역, 영문홈페이지 유지・관리 등으로, 이민정책개발 지원을 위한 “번역, 홍보 및 보조” 업무일 뿐 세부사업 내에서 가장 높은 예산 비중을 차지할 정도의 핵심적인 역할은 아님.

또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 중앙부처 및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 사업비도 이민정책개발 지원과는 상관성이 높지 않은 단순 지방 순회 교육 사업비이며, 이마저도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아닌 대행을 통해 실시하는 용역비로 편성되어 있음.

한편, “이민정책 개발연구” 내역사업의 경우에는 이민행정 선진사례 연구나 공무원 상호교환 프로그램 명목으로 9,069만원 전액 국외업무여비로 편성되어 있을 뿐 핵심업무인 정책개발 예산은 전무함.

**<2026년도 이민정책 개발연구 내역사업비 주요내용>**

| 2026년 예산안 | |
|---|---|
| **예산** | **산출내역** |
| 90,688<br>천원 | ○ 국외업무여비(220-02) : 90,688천원<br>1. 이민행정 선진사례 연구 : 73,588천원<br>가. 외국인 온라인 민원신청제도(ANEF) 연구(프랑스, 3명, 7일) : 15,759천원<br>나. 국제이주기구 GMDAC글로벌이주데이터 분석연구(독일, 3명, 5일) : 12,444천원<br>다. 유럽 난민법 및 난민제도 연구(스웨덴,독일, 3명, 7일) : 14,315천원<br>라. 캐나다 보호외국인 정책 및 운영 연구(캐나다, 3명, 7일) : 14,344천원<br>마. 출국대기자 과밀해소 및 인도적 처우개선 사례조사(네덜란드, 3명, 5일) : 11,819천원<br>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관련국가 간 대응방안 연구(태국, 5명, 4일) : 9,326천원<br>2. 출입국관리공무원 상호 교환프로그램 : 17,240천원<br>가. 일본 실무자급 교환프로그램(일본, 4명, 5일) : 9,902천원<br>나. 중국 실무자급 교환프로그램(중국, 4명, 5일) : 7,338천원 |

법무부는 동 해외출장 시 이민정책 연구과제 및 수요를 제출받아 출장의 시급성,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연구과제를 선정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출장결과를 살펴보면 시설 방문에 따른 현황과 인터뷰 등 업무협의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이민정책 개발연구 수준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52)]

이와 같은 예산편성 문제의 원인에는 “이민정책연구원운영(1231-302)” 타 세부사업에 편성된 이민정책 연구사업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등 두 세부사업 간 중복 영역이 발생하여,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52) 다만, 연구 목적이 아닌 업무협의를 위한 해외출장의 필요성은 별개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같이 2025년도부터 정책연구비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동 사업비의 총규모도 함께 축소되었기 때문임.[53]

**<최근 5년간 이민정책개발지원(1231-300) 세부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 2022 | 2023 | 2024 | 2025<br>(정책연구비 전액삭감 시작) | 2026(안) |
|---|---|---|---|---|---|
| 사업비 | 429 | 390 | 386 | 190 | 196 |

따라서, 법무부는 사업의 당초취지에 부합하는 핵심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에 반영시켜 세부사업을 계속 확대·추진하거나, 동 세부사업을 폐지하는 대신 적절한 타 사업으로 내역 예산을 분배하여 이민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54]

### ▢ 출입국관리공무원 상호 교환프로그램 제도 운영 점검 필요

동 프로그램은 출입국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국제이민 협력 공조 및 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2년 한·홍콩 고위급 회담 시 실무자급 교환연수 실시 합의를 시작으로 2013년 중견관리자급으로 추가 확대하였음.

---

53) '이민정책 개발연구"내역 사업 중 정책연구비는 2025년 예산 편성 시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이민정책연구원의 연구기능을 활용하도록 하며 전액 삭감된바 있음.

54) 법무부는 외국인 홍보지인 '공존'(분기별 발행)의 디자인, 인쇄, 배포 등 비용을 '이민정책개발지원' 세부사업 내 일반용역비(210-14)로 집행하였으나, 성격을 감안하여 2025년부터 '외국인본부 기본경비'로 이동한 사례가 있음. 따라서 영문에디터 운영비를 동일한 방식으로 재편성하거나 "이민정책연구원운영(1231-302)" 사업비로 편성하여 관련 분야 해외전문가들과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임.

**출입국관리공무원 상호 교환 프로그램 연혁**

- '02년 한-홍콩 고위급 회담 시 한-홍콩 실무자급* 교환연수 실시 합의
  * 홍콩직급으로 IO(Immigration Officer)급으로, 우리 기준 약 7급 상당
- '13년 3월, 한-홍콩 고위급 회담 시 중견관리자급* 교환연수 추가 합의
  * 홍콩직급으로 APIO(Assistant Principal Immigration Officer)급으로, 우리 기준 약 4~6급 상당

그런데, 최근 4년간 결산내역을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교환 프로그램 예산은 전액 불용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2020년 이후 코로나 19 및 홍콩 내 반정부 시위 장기화 등으로 연수를 중단함에 따라 관련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출입국관리공무원 상호 교환프로그램 예·결산>**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산 현액(B) | 집행액 (C) | 집행률 (C/A) | 집행률 (C/B)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 2022 | 31 | 31 | - | △31 | 0 | - | - | - | - | - |
| 2023 | 30 | 30 | - | - | 30 | - | - | - | - | 30 |
| 2024 | 22 | 22 | - | - | 22 | - | - | - | - | 22 |

하지만, 법무부는 홍콩과 프로그램 재개를 위해 협의·노력하는 것과는 별개로, 당초 편성 계획에 없는 국가를 선정하여 2025년에는 베트남과 중국, 2026년에는 일본과 중국을 대상으로 상호교환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법무부는 홍콩 외에도 과거 네덜란드, 미국, 베트남, 몽골

등 다양한 국가와 출입국관리공무원 상호교환 연수를 추진하고 중국과는 지속적으로 교류한 사실이 있음을 밝히고 있음.

하지만, 법무부는 홍콩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재 및 투자자 유치를 위한 개방적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홍콩의 운영 현황을 이해함으로써 이민당국 간 제도 운영의 상이점을 고찰하고 한국의 출입국 이민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던 취지임을 밝혔음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성이 적은 국가를 임의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당초 취지에 맞지 않은 것임.[55]

따라서, 법무부는 향후 출입국관리공무원 상호 교환 프로그램 사업비 추진 시 사업의 연관성과 필요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상호합의문 체결을 통한 안정적 추진 등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화를 도모함으로써,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55) 법무부는 동 제도 도입 시점 이후의 모든 연도에 대한 예결산 내역 요청에 대해 2000년대 시행으로 자료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제시하였음.

## (2) 이민정책연구원운영(1231-302)

### ▢ 예산안 개요

‘이민정책연구원운영’은 이민정책연구원 구성인력에 대한 인건비,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임차료・공공요금・수용비 등의 운영경비, 그리고 국내외 이민동향과 정책의 조사・연구・분석 등을 위한 연구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억 3,100만원(9.6%) 증액된 37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이민정책연구원운영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 | 2025 | | 2026 | | |
|---|---|---|---|---|---|---|
| | 결산 | 본예산 | 추경예산 (A) |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이민정책연구원운영 | 2,562 | 3,455 | 3,455 | **3,786** | 331 | 9.6 |
| ・연구원 인건비 | 1,732 | 1,887 | 1,887 | **1,918** | 31 | 1.6 |
| ・연구원 운영비 | 227 | 965 | 965 | **462** | △503 | △52.1 |
| ・연구사업비 등 | 603 | 603 | 603 | **1,406** | 803 | 133.2 |

### ▢ 이민정책연구원 임차료 예산편성액의 적정성 확인 필요

이민정책연구원은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간 한국 등 아시아 지역의 이주(이민) 분야에 관한 종합적·중장기적 연구·교육을 위한 국제적 연구원 설립을 2007년부터 추진하여,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56] 체결을 통해 개원한 IOM의 협력연구원으로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임.

이민정책연구원은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보호관찰소(별관)을 임차하여 업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동 시설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사용불가로 이전이 요구되어, 2025년 3월 과천에 새로운 임차공간을 마련하였음.

**<이민정책연구원 업무공간 이전 주요 내용>**

○ 업무공간 이전 사옥 개요
- 위치: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2길 54 비상교육 사옥 6층
- 임차 면적: 948㎡ (전용 287평) ※ 기존 면적 777㎡ 보다 22% 증가
- 이전 완료 시기: 2025. 3. 3.

○ 업무공간 이전 경과
- ('23. 8. ~ '24.9.) 이전 청사 후보지 조사
- ('24. 10. 1. ~ 12. 31) 청사 이전 관련 공사업체 시장조사 실시
- ('25. 1. 14.) 임대차 계약 체결 : 경기도 과천시 ㈜비상교육사옥 6층
- ('25. 2. 28. ~ 3. 3.) 이주

56)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OM Migr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조약 제2196호)」

2026년 동 세부사업비는 총 3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연구원 인건비 19억 1,800만원, 연구원 운영비 4억 6,200만원, 연구사업비 14억 600만원, 총 37억 8,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전액 민간경상보조(320-01)임.

이 중 연구원 운영비에 이민정책연구원 업무공간 임차료가 포함되어 있는바, 2025년 3억 978만원 대비 3,400만원 증액된 3억 4,469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이민정책연구원 운영비 예산 비교>**

| 2025년 본예산 | | 2026년 예산안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965<br>백만원 | ○ 민간경상보조(320-01) : 965백만원<br>가. 일반수용비 :<br>5,195천원×12월=62,336천원<br>나. 공공요금 및 제세 :<br>1,000천원×12월=12,000천원<br>다. 차량 및 사무기기임차료 :<br>1,367천원×12월=16,400천원<br>라. 국내여비 : 709천원×12월=8,504천원<br>마. 업무추진비 :<br>1,167천원×12월=14,000천원 | 462<br>백만원 | ○ 민간경상보조(320-01) : 462백만원<br>가. 일반수용비 :<br>5,195천원×12월=62,336천원<br>나. 공공요금 및 제세 :<br>1,000천원×12월=12,000천원<br>다. 차량 및 사무기기임차료 :<br>1,367천원×12월=16,400천원<br>라. 국내여비 : 709천원×12월=8,504천원<br>마. 업무추진비 :<br>1,167천원×12월=14,000천원 |
| | 바. 임차료(관리비 포함) :<br>(777㎡×14.6천원×2월) +<br>(948㎡×30.4천원×10월)<br>=309,777천원 | | 바. 임차료(관리비 포함) :<br>948㎡×30.4천원×12월 =344,693천원 |
| | 사. 연구원 청사 이전 : 539,000천원<br>1) 임차 보증금 : 315,000천원<br>2) 입주 공사비 : 224,000천원 | | ('25.3. 연구원 과천 이전 완료, △539,000천원) |

그런데, 임차료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임차료 및 관리비를 포함한 월 환산 임차료가 3,430만원으로 예상되고, 이를 기준으로 연간 임차료를 산정해 보면 총 3억 9,000만원 가량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026년 편성된 임차료 3억 4,469만원 대비 4,500만원 가량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운영비 부족분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임차관리비 상세현황>

○ **임차관리비 상세현황**

- **(산출내역) 948㎡ × 34.3천원*(실비** 기준) × 12월 = 390백만원**

* 1㎡당 단가 : ('25) 1㎡=30.4천원 → **('26) 1㎡=34.3천원**

** 「임대차계약서」특약사항 반영 : 렌트프리 2개월(임대료 2개월분(56백만원) 제외)

《 임차관리비 월간 청구 내역(실비반영) 》 ※ 매월 37백만원

| 항 목 | 금 액(원) | 비 고 |
|---|---|---|
| 월 임차료(고정비) | 28,079,920 | '28.2까지 동결 |
| 일반관리비(고정비) | 4,681,657 | 매년 2%인상 |
| **실사용(전기, 냉난방 수도 등 실비) 예상** | **4,444,381** | **연 평균(월 단위)** |
| **합 계** | **37,205,958** | **(부가세 포함)** |

○ **임차관리비 산정 기준**

- **연간 임차관리비 = 월 임차료(10개월치 2개월 렌트프리) + 일반관리비(12개월) + 실사용 관리비(12개월)**

* 390,311,656원(≒390백만원) = 280,790,200원(10개월치, 2개월 렌트프리) + 56,179,8844원(12개월)
+ 53,332,572원(12개월)

### (3)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1232-305)

▢ 예산안 개요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은 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업무시스템 임차, 시스템 개발 연구용역, 출입국 업무장비 도입·교체 등을 통해 출입국관리 및 외국인 체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하려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06억 500만원(34.9%) 증액된 410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 | 2025 | | 2026 | | |
|---|---|---|---|---|---|---|
| | 결산 | 본예산 | 추경예산 (A) |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 24,027 | 30,410 | 30,410 | **41,015** | 10,605 | 34.9 |
| ·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 12,646 | 14,225 | 14,225 | **14,587** | 362 | 2.5 |
| ·업무시스템 임차 등 | 526 | 465 | 465 | **465** | 0.0 | 0.0 |
| ·시스템개발 및 장비도입 | 10,373 | 15,720 | 15,720 | **8,617** | △7,103 | △45.2 |
| ·출입국정보화 센터 이전 및 클라우드 전환 | 0 | 0 | 0 | **17,346** | 17,346 | - |
| ·외국인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 482 | 0 | 0 | **0** | 0 | - |

### ▢ 신설 출입국정보화전산센터 화재 대비 시설 구축에 만전을 기할 필요

법무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청사시설 노후화로 인해 총 사업비 1,018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부터 청사신축공사를 진행하고 2026년 10월 입주를 목표로 청사이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동 시설에는 서울청 뿐만 아니라 출입국전산센터, 전국콜센터(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이민특수수사대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수사대) 공간도 배정할 예정임.

**<신축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청사 사업개요>**

| |
|---|
| ○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493번지 일원(문정지구 11-2BL)<br>○ (총사업비) 108,109백만원(토지매입비 50,949백만원, 공사비 등 57,160백만원)<br>○ (사업기간) 2020년 ~ 2026년<br>○ (사업규모) 부지 9,035㎡(2,733평), 건물연면적 17,633㎡(5,334평)<br>※ (現 청사면적) 부지 4,121㎡(1,247평), 건물 6,349㎡(1,921평)<br>○ (층수) 지하1층, 지상7층 (최고 높이 : 38.2M, 주 건물 너비 : 75M) |

출입국정보화센터는 15개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법무부 본부 및 출입국기관과 연결하는 법무정보통신망 핵심기관으로 하이코리아, 비자포털 등의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으며, 신설 청사의 출입국정보화센터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총 28억 6,500만원으로써,[57] 네트워크, 보안, 공조 및 누수 감지 등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할 예정임.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및 카카오톡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데이터센터에 대한 화재 예방 및 대비 시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57) 동 예산액은 출입국정보화센터 기반시설 구축에 한정하는 것이고, 그 밖에 정보시스템 이전·구축비를 포함하는 경우 동 세부사업 내 예산액은 총 173억원 가량 편성되어 있음.

의무규정과 함께 민간에서 주목받고 있는 방재관련 권장기준으로 “한국화재안전기준(KFS, Korea Fire Standards)1280”이 있음.[58]

한국화재안전기준(KFS)1280은 데이터센터의 화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방화기준으로 열과 연소확대, 정전(전력 손실), 누수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데이터센터의 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구조, 소방설비,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음.[59]

그런데, 이전 설치 예정인 출입국정보화센터에 대하여 화재 대비 시설 상황을 확인하고자 동 기준의 항목별 조건 충족여부 및 대비상황을 점검해 보면,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의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정성 기준을 참고하여 설비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한국화재안전기준(KFS)1280에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아래표 참조).

또한, “구조”항목과 관련하여서는 4층 정보화센터 상부 공간에 액체 이송 배관이 위치해 누수 피해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 등 보완사항이 확인되고 있음.

따라서, 법무부는 서울청 신청사 이전에 따른 출입국정보화전산센터 신설 시 출입국·이민행정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

58) KFS(Korea Fire Standards)는 화재보험협회가 국내실정에 부합하고 국제 수준에 상응하는 민간 방재(防災) 관련 권장기준으로, 동 기준에는 국내 대형건물 및 주요 산업체의 위험 예방과 손실경감을 위한 방호대책이 수록되어 있음.

59)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화재보험협회 홈페이지나, 「KFS 1280 데이터센터 방화기준 STANDARD FOR THE PROTECTION OF DATA CENTER」를 참조

해 화재 대비 시설구축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임.

**<데이터센터 전문 방화 기준(KFS1280) 요소별 충족 여부>**

| 분 류 | 현 황 |
|---|---|
| 구 조 | ○ 신설 청사 내 정보화센터 전산실, UPS실, 배터리실은 ’25년 신축 공사 시 방화문(FSD) 및 내화벽체(DF3)으로 적용됨(방화구획)<br>○ 전산실 창문의 경우 정보화센터 ’25년 신축 공사 시 무창 구조 설계 반영 예정이며, 정보화센터의 위치는 신설 청사 4층에 단독으로 위치하여 외부 충돌로 인한 벽체 파손, 대형 기계에 의한 파손, 지하 침수 등의 위험에서 안전한 장소에 위치<br>○ 또한, 화재 시 자동으로 소화가스가 분출되도록 설비하였고, 이때 데이터센터 장비들의 수손 방지를 위해 모두 할로겐(할론)화합물 소화가스를 사용 예정임<br>○ 정보화센터가 위치한 4층의 천장높이는 4.5m로 가스계 소화설비 약제의 효과적인 방출 조건에 충족함<br>○ 다만, 신설 청사 5층에 외국인 보호시설이 설계되어 급배수관 등 액체 이송배관이 4층 정보화센터 상부 공간에 위치함에 따라 누수피해 대비가 필요함. 이에 대해 ’25년 신축 공사에서는 물받이 설치 등으로 보완할 예정이나, ’26년도 정보화센터 이전 사업의 공사비에 산정된 금액을 활용하여 상부공간에 대한 추가 누수감지 설치에 대한 검토·진행 예정임 |
| 소방설비 | ○ 정보화센터 내 전산실, UPS실, 배터리실과 같이 주요 전산장치가 위치한 공간은 방화구획으로 설계되어, 아날로그식 열·연기 감지기 및 할로겐 자동 소화설비가 설치 예정임<br>○ 또한, 주요 장비가 설치된 구역임에 따라 열·연기 감지기 교차회로 설계로, 화재 시 경보수신, 소화가스 분출을 자동으로 수행함 |
| 시설 및 장비 | ○ 전산실 내부의 경우 높임바닥 높이가 50cm 이상임에 따라 화재 감지 장치 및 소화설비(할로겐 화합물)를 추가로 설치 예정임<br>○ ’26년도 이전 사업 시 도입되는 랙, 장비 캐비넷, 컨테인먼트 등의 경우 불연재료로 도입 예정이며, 컨테인먼트 설치 시 내부 서버에 대한 소화설비를 최대한 조건에 맞도록 설계 검토 예정임 |
| 유틸리티 | ○ 발전기실, UPS(예비전원실)실, 배터리실의 경우 별도 장소로 분리하여 설계하였고, 방화구획으로 설정됨<br>○ ’26년도 이전 시 각종 전산설비의 온습도 유지를 위한 항온항습기, 각종 온습도 센서 등을 설치하고, 각 실의 이상상태를 신속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FMS를 도입 예정임 |
| 보안 | ○ 정보화센터 전산실, UPS실, 배터리실 등의 경우 인가된 직원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카드키, 지문 등을 이용한 출입통제시스템을 ’26년도 이전 사업 시 설치 예정임 |

자료: 법무부

### (4) 외국인보호관리(1233-300)

#### ▢ 예산안 개요

‘외국인보호관리’는 단속 등으로 보호된 외국인의 국내외호송, 수용관리 및 강제퇴거를 집행하고, 외국인 보호업무 지원을 위한 출입국 공무직근로자를 고용·운영하며, 외국인 보호시설 보강·개선을 통해 보다 원활한 보호관리 업무수행을 지원하려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5억 8,900만원(12.1%) 증액된 239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외국인보호관리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 | 2025 | | 2026 | | |
|---|---|---|---|---|---|---|
| | 결산 | 본예산 | 추경예산 (A) |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외국인보호관리 | 22,226 | 21,372 | 21,372 | **23,961** | 2,589.0 | 12.1 |
| · 공무직근로자 운영 | 11,748 | 12,170 | 12,170 | **13,540** | 1,370.0 | 11.3 |
| · 불법체류외국인 수용관리 | 5,325 | 5,341 | 5,341 | **5,399** | 58.0 | 1.1 |
| · 기타 보호외국인 관리 | 3,027 | 3,209 | 3,209 | **3,187** | △22.0 | △0.7 |
| ·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 | 2,126 | 652 | 652 | **-** | - | - |
| · 외국인보호 위원회운영 | - | - | - | **1,835** | - | - |

### ▢ 보호외국인 의약품 구입 사업비 편성 적절성 점검 필요

“불법체류외국인 수용관리” 내역사업은 단속 등으로 보호구금된 외국인에 대한 급식·의료 등의 수용관리 및 적정처우 후 강제퇴거 집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임.

이 중 “보호외국인 의약품 구입”은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라 보호된 외국인에 대한 건강 유지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응급의약품, 상비약 등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문보호시설(화성보호소, 청주보호소 등)에서 보호외국인의 정기진료 시 의무관이 처방하는 감기약, 혈압약, 당뇨약 등을 구입하고 있음.[60)]

그런데, 최근 5년간 보호외국인 의약품 구입 사업비의 예·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대비 집행률이 2020년 218%, 2021년 380%, 2022년 173%, 2024년 229%, 2025년 141%로 매년 초과 집행되어 부족 예산은 타 사업비의 이·전용 등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2022년과 2024년에는 예산을 일부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과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안은 2024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어, 증가하는 수요를

60) 「외국인보호규칙」 제21조(환자의 진료)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병을 앓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② 청장등은 보호시설 안의 의료설비·의약품 및 인력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을 가진 보호외국인이 자기 부담으로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병이나 상처의 정도와 도주 우려 등을 판단한 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그 보호외국인을 지체 없이 외부의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받게 한 후에 그 사실을 청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안하여 부족 예산을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임.

**<최근 5년간 보호외국인 의약품 구입 사업비 예·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 | 이·전용 등 | 예산 현액(B) | 집행액 (C) | 집행률 (C/A) | 집행률 (C/B)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2020 | 49 | 49 | 58 | 107 | 107 | 218 | 100 |
| 2021 | 49 | 49 | 137 | 186 | 186 | 380 | 100 |
| 2022 | 63 | 63 | 46 | 109 | 109 | 173 | 100 |
| 2023 | 63 | 63 | 81 | 144 | 144 | 229 | 100 |
| 2024 | 79 | 79 | 32 | 111 | 111 | 141 | 100 |

따라서, 법무부는 부족분 발생의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필요예산을 적절히 편성함으로써, 과도한 이전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불필요한 집행요소가 없는지도 함께 점검함으로써, 보호외국인 의약품 구입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5) 외국인사회통합지원(1233-301)

### ▢ 예산안 개요

‘외국인 사회통합지원’은 국내체류 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정착을 위한 사회통합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국내에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사회통합지원 업무보조원 등을 고용하여 출입국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려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8억 7,000만원(10.6%) 증액된 195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 | 2025 | | 2026 | | |
|---|---|---|---|---|---|---|
| | 결산 | 본예산 | 추경예산 (A) |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외국인사회 통합지원 | 14,787 | 17,639 | 17,639 | **19,509** | 1,870 | 10.6 |
| ·공무직근로자 운영 | 1,290 | 1,458 | 1,458 | **1,629** | 171 | 11.7 |
| ·외국인 사회 통합업무지원 | 12,533 | 14,262 | 14,262 | **14,319** | 57 | 0.4 |
| ·이민자조기 적응프로그램 | 964 | 1,919 | 1,919 | **3,561** | 1,642 | 85.6 |

### ▢ 투자이민제도 실적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법무부는 글로벌 인재비자센터 운영을 위해 일반용역비를 편성하고 매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민간 대행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3억 5,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최근 5년간 매년 거의 전액을 집행하고 있음.

글로벌 인재비자센터는 해외 우수인재 및 투자자 유치를 위해 입국단계부터 정착까지 원스톱 이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외국인 “공익사업투자이민 및 부동산투자이민 제도 상담과 사전심사 업무, 해외 우수인재 및 기업투자자 등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투자이민제도는 2008년 4월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방안”의 일환으로 간접투자이민제도 도입이 추진되어,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 2013년 “공익사업 투자이민” 등이 도입되었음.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그 재원을 중소기업에 대출하여 공익 실현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3년에 일반형 5억원, 고액형 15억원, 은퇴형 3억원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유지 시 영주(F-5)로 자격변경을 허용하는 제도임.[61]

61) 자세한 내용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3-319호),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제917호), 투자이민협의회 규정(법무부훈령 제1553호)을 참조

또한, 2023년에는 투자이민협의회,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의 협의를 토대로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하여, 투자금액을 상향하여 일반형은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고액형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함과 동시에 은퇴형은 폐지하였음.

하지만, 아래표와 같이 그간의 유치성과를 살펴보면, 초기 10년 동안은 2019년과 2022년을 제외하고는 100건 미만에 금액은 500억원 아래에 머물렀고, 2023년 개편안을 마련한 이후인 2024년의 경우에는 46건에 856억원으로 제도개편 전인 2022년 332건에 1,566억원 보다 실적이 낮았으며, 유형별 유치 실적에서도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공익사업 투자이민 연도별 실적>**

(단위 : 건, 억원)

| 연도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합계 |
|---|---|---|---|---|---|---|---|---|---|---|---|---|---|
| 건수 | 3 | 43 | 78 | 58 | 46 | 96 | 120 | 92 | 95 | 332 | 441 | 46 | 1,450 |
| 금액 | 13 | 203 | 378 | 258 | 232 | 488 | 606 | 416 | 459 | 1,566 | 2,653 | 855 | 8,127 |

**<공익사업 투자이민 유형별 실적>**

(단위 : 건, 억원)

| 구 분 | 1유형-일반(F-2-12) | | 2유형-은퇴(F-2-14) | | 3유형-고액(F-5-25) | | 합계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2020 | 70 | 350 | 22 | 66 | - | - | 92 | 416 |
| 2021 | 69 | 345 | 23 | 69 | 3 | 45 | 95 | 459 |
| 2022 | 237 | 1,185 | 87 | 261 | 8 | 120 | 332 | 1,566 |
| 2023 | 406 | 2,473 | 25 | 75 | 10 | 180 | 441 | 2,653 |
| 2024 | 35 | 525 | - | - | 11 | 330 | 46 | 855 |
| 합계 | 818 | 4,878 | 215 | 641 | 41 | 807 | 1,006 | 5,949 |

한편, “부동산 투자이민”은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0년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에 5억원을 투자하는 경우 거주(F-2)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임.[62]

또한, 2022년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으로 변경하고, 금액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시켰으며, 코로나19 및 경기침제 영향 등을 반영하여 대상지역 모두 3년간 기간을 연장함.

하지만, 아래표와 같이 제도 도입 이후의 전반적인 성과를 살펴보면, 2014년 559건 4,067억원으로 정점을 보인 이후, 지속하여 건수와 금액이 감소하였고, 2023년 개편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별다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4년에는 20건에 218억원에 불과하며, 제주를 제외하고는 실적이 매우 낮아 지역별 편차가 심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법무부는 제도개편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공익사업 투자이민 제도 및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 제도에 대해 추가적인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을 통해 성과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임.[63]

---

6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5-85호) 참조

63)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공익사업 투자이민 제도를 통해 외국인이 투자한 금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총 8,127억원이고, 이를 3,111개 중소기업에 시중은행 보다 저렴하게 대출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등 공익 실현과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음.

## <관광 · 휴양시설 투자이민 연도별 실적>

(단위 : 건, 억 원)

| 연도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합계 |
|---|---|---|---|---|---|---|---|---|---|---|---|---|---|---|---|---|
| 건수 | 3 | 5 | 152 | 338 | 559 | 339 | 183 | 148 | 142 | 62 | 7 | 4 | 9 | 34 | 20 | 2,005 |
| 금액 | 30 | 29 | 833 | 2,057 | 4,067 | 2,151 | 1,206 | 1,012 | 1,011 | 483 | 56 | 24 | 47 | 299 | 218 | 13,523 |

## <최근 5년간 관광 · 휴양시설 투자이민 지역별 투자 건수 · 금액 실적>

(단위 : 건, 억원)

| 구 분 | 제주 | | 인천(영종/송도/청라) | | 부산(해운대관광리조트) | | 합 계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2020 | 4 | 25.9 | 2 | 10.4 | 1 | 19.7 | 7 | 56 |
| 2021 | 4 | 24 | 0 | 0 | 0 | 0 | 4 | 24 |
| 2022 | 6 | 30.7 | 3 | 13.2 | 0 | 0 | 9 | 43.9 |
| 2023 | 33 | 289.9 | 1 | 13.8 | 0 | 0 | 34 | 303.7 |
| 2024 | 18 | 198 | 2 | 20.5 | 0 | 0 | 20 | 218.5 |

## (6)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1233-304)

### ▢ 예산안 개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운영’은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과 정보 취득을 지원하고,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한국인에게 국제결혼 정보를 제공하며,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연구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려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600만원(0.3%) 증액된 139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 | 2025 | | 2026 | | |
|---|---|---|---|---|---|---|
| | 결산 | 본예산 | 추경예산 (A) |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운영 | 10,720 | 13,909 | 13,909 | **13,955** | 46.0 | 0.3 |
|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 10,439 | 13,594 | 13,594 | **13,640** | 46.0 | 0.3 |
| ·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운영 등 | 281 | 315 | 315 | **315** | 0.0 | 0.0 |

### ▢ 한국이민재단 대행사업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 노력 필요

한국이민재단은 재한외국인 및 귀화자의 한국사회 통합·적응, 이민정책 관련 국제협력, 이민·다문화 이해증진 교육·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2004년 6월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한국이민재단 개요>**

| |
|---|
| ○ 재단명 : 한국이민재단 |
| ○ 설립일 : 2004. 6. 23.(법무부장관 법인설립허가) |
| ○ 설립목적 : 재한외국인 및 귀화자와 그 자녀의 한국사회통합 및 적응지원, 이민 정책 관련 국제협력 지원, 이민·다문화 이해증진 교육 및 홍보 지원 |
| ○ 임직원 : 76명(이사 7명 및 직원 69명, '25. 8. 31. 기준) |
| - 이사장 1명, 사무총장(이사) 1명, 이사 5명, 감사 2명 |
| ○ 재 산 : 66억 5,183만원(2025. 8. 31. 기준) |
| - (운영자금) 6억 7,950만원 |
| - (임대보증금) 16억 3,647만원 |
| - (예금 등) 43억 3,586만원 |
| ※ 등기부등본상 자본금 3억 5천만원 포함, 퇴직연금 15억 9천만원 별도 |
| ※ 최근 5년간 정부 출연금 없음 |

동 재단은 정부출연금이나 보조금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민법상 재단법인임. 정관 변경 및 임원 선임 시 법무부장관 승인 및 당연직 감사[64]를 통해 제한적으로 관리·감독을 받고 있을 뿐, 전반적인 운영 및 자금은 재단이 직접 관리 중임.

재단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 입국 안내도우미 운영 단체,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중국 선양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 개소,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세계인의 날 행사지원, 보호외국인 수화물 수속 업무지원 등임.[65]

64)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및 출입국심사과장이 당연직 감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처럼 재단의 주요 사업에는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가 실시하는 주요 사업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사회통합 또는 조기적응 프로그램의 경우 거점기관으로서 산하 지원센터 총괄·감독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음.[66]

따라서, 재단은 사실상 법무부의 재집행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재단이 수행하는 법무부 대행사업의 적절성 점검이나 투명성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임.

**<한국이민재단 주요 사업 현황>**

| 구 분 | 사업 내용 |
|---|---|
| 목적사업 | ◆ **세계인의 날 행사 등 지원**: 출입국·외국인기관 주관 민간인 및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인의 날, 한마음 걷기대회 행사 등 지원 |
| | ◆ **보호외국인 수화물 수속 업무지원**: 외국인보호소 등에서 보호 중인 강제퇴거외국인 대상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 시 수화물 수속 등 업무지원 |
| | ◆ **독립유공자 후손 등 재한외국인 지원**: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지원, 재정착난민 정착 물품 지원, 다문화가정 생활비 등 후원 |
| 수익사업 |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위·수탁사업**: 전국 15개 지역의 협력 기관 및 CBT 센터(서울·광명·대전)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PBT, CBT) 실시 |
| | ◆ **항공권 예약 판매 사업**: 외국인보호소 등에서 보호 중인 강제퇴거외국인을 대상으로 귀국 항공권 예약 판매 |
| | ◆ **출입국기관 방문 민원인 대상 정부수입인지 판매 사업**: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내에서 정부수입인지 판매 |
| | ◆ **보호외국인 대상 매점 등 판매 사업**: 보호외국인 등 대상 생필품 판매, 즉석사진기 운영, 외국인등록증 송달서비스, 국제전화카드 판매 등 |

65) 한국이민재단이 대행하는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은 외국인사회통합지원(1233-301) 세부사업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1233-304) 세부사업 등에 포함되어 있으나, 설명의 편의를 위해 대표 위탁사업이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1233-304) 세부사업에서 서술하고 있음.

66) 예를 들면, 조기적응지원단은 재단법인 한국이민재단, 조기적응지원센터는 대학,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비영리법인 등 187개 기관

<최근 3년간 한국이민재단 법무부 수탁사업 현황>

| 종류 | 년도 | 내용(발주기관) |
|---|---|---|
| 협력사업 | 2025 |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문항 개발 |
| | 2025 | 가사 · 육아 분야 활동 외국인교육을 위한 강의 교안 제작 |
| | 2025 |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
| | 2025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평가 수탁기관 |
| | 2023 | 중국 선양 비자신청센터 위탁 운영 |
| 교육사업 | 2024 | 2025-2027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

법무부 사업 대행의 추진근거와 관련, 재단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비영리법인도 법인의 비영리사업의 본질적 속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바탕으로,[67] 재단 정관에 따라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하지만, 재단 정관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은 사실상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업을 망라할 수 있게 상당히 포괄적이라는 점과, 한국이민재단은 법무부의 다양한 사업을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 운영 감사를 통해 지적사항이나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요 핵심사업 대행기관인 재단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68]

비록,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수익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비추어 볼 때,

67)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법무부 법무심의관실) 71p.」

68) 재단은 외부회계 감사대상이므로 재단이 의뢰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매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주요 핵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민정책연구원과 비교해서도 수익사업의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투명성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민정책연구원과 한국이민재단 특성 비교표>**

| 구분 | 이민정책연구원 | 한국이민재단 |
|---|---|---|
| 근거법령 | 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2조의2(이민정책연구원)<br>②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 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조약 제2196호) | 2004. 6. 23.<br>법무부장관 설립인가 |
| 설립목적 | 이주민 및 이주문제에 대한 국제적 이해 증진 및 전문·체계적 이민정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추진 등 | 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의 행정지원<br>② 전·현직 출입국직원의 복리증진<br>③ 재한외국인 및 귀화자와 그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 지원 |
| 설립연도 | 2009년 | 2004년 |
| 조직구성 | 2실-3팀-2센터 | 3국(사업국, 관리국, 교육국) |
| 인적구성 | 28명(임원 2, 연구직 15, 행정직 11) | 78명(이사 6명, 직원 72명)( '25. 6. 1. 기준) |
| 법무부관계 | 법무부 소관 공직유관단체 | 비영리재단법인 |
| 사업내역 | · 학술연구 : 이주·이민정책 관련 연구·조사·자문<br>· 교육훈련 :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정책 관련 전문가 훈련<br>· 국제협력 등 : IOM·국제기구 등과 공동연구, 국제포럼 등 | · 목적사업<br>– 행정 및 재한외국인 등 지원사업 : 출입국기관 행정지원, 세계인의 날 행사 지원 등 재한외국인 지원, 재정착난민, 불우외국인가정 등 지원<br>– 복리 증진 사업 : 전·현직 직원에 대한 원호사업, 순직직원 자녀에 대한 대학교 장학 사업, 전직직원 동우회 등 지원 등<br>· 수익사업<br>– 정부수입인지 판매업, 일반여행업, 구내 매점운영업, 정부기관에서 위탁한 사업 등 |
| 법무부 예산 중 경비별 지원내역 | · 인건비 : 1,458,814천원<br>· 운영비 : 226,799천원<br>· 고용부담금 : 273,071천원<br>· 연구사업비 : 603,316천원 | 해당없음 |
| 수익사업 내역 | · 수탁연구사업(7건) : 16억2,895만원<br>· 수탁협력사업(3건) : 2억678만원<br>· 수탁교육사업(2건) : 6,285만원 | · 수입인지 판매 : 11억 753만원<br>· 항공권 판매 : 14억 9,942만원<br>· 매점운영 등 : 12억 5,528만원<br>·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 5억 1,936만원<br>· 비자신청센터 운영 : 3억 6,376만원<br>· 기타 : 7,708만원 |

### (7) 외국인본부 기본경비(7011-255)

#### ▢ 예산안 개요

‘외국인본부 기본경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기본업무 수행 및 부서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출장비, 소식지 발간비, 자산취득비 등의 경상경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기관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800만원(3.7%) 증액된 16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외국인본부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 | 2025 | | 2026 | | |
|---|---|---|---|---|---|---|
| | 결산 | 본예산 | 추경예산 (A) |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외국인본부 기본경비 | 1,421 | 1,573 | 1,573 | 1,631 | 58 | 3.7 |

### ▢ 수요포럼 강연 활성화 필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07년 8월 급변하는 미래 사회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포럼'을 운영하고, 2020년 '이민정책포럼', 2025년 '미래정책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18년째 운영하고 있음.

"수요포럼 강사료" 예산은 주요현안 및 이민정책 관련 이슈를 주제로 정책담당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발표와 토론에 필요한 외부강사 특별강연료를 지급하려는 것임.

최근 3년간 동 기본경비의 예·결산 내역을 살펴 보면, 2023년 예산액은 1,500만원이었으나 집행은 300만원으로 집행률이 19%였고, 2024년의 경우에도 200만원으로 11%였으며, 2025년의 경우 예산이 500만원으로 감액되었음에도 8월 기준 1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25.8%에 그친 상태임.

**<최근 3년간 수요포럼 강사료 예·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 | 예산 현액(B) | 집행액 (C) | 집행률 (C/A) | 집행률 (C/B)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2023 | 15 | 15 | 15 | 3 | 19.0 | 19.0 | 12 |
| 2024 | 15 | 15 | 15 | 2 | 10.7 | 10.7 | 13 |
| 2025.8 | 5 | 5 | 5 | 1 | 25.8 | 25.8 | - |

따라서, 수요포럼 강사료 예산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문성 함양 기여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

당 사업을 면밀히 관리하고, 신규 비자제도 도입, 체류관리방안 개발 등 외부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특별강연을 개최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 온라인미디어 다국어 번역·감수 예산 활용 다각화 검토 필요

“온라인미디어 다국어 번역·감수”예산은 출입국·외국인 정책제도 안내, 민원서식, 홈페이지 등이 국문 혹은 영문으로만 제작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정확한 다국어 번역물로 제공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전달을 할 수 있도록 번역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내체류 외국인 중 사용 언어 비중이 높은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를 비롯하여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의 번역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음.

하지만, 최근 3년 동 기본경비의 예·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예산 3,300만원 중 43.3%인 1,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에는 불과 3% 수준인 100만원만 집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예산 2,700만원 중 8.8%인 200만원만을 집행하여 전반적으로 불용률이 매우 높은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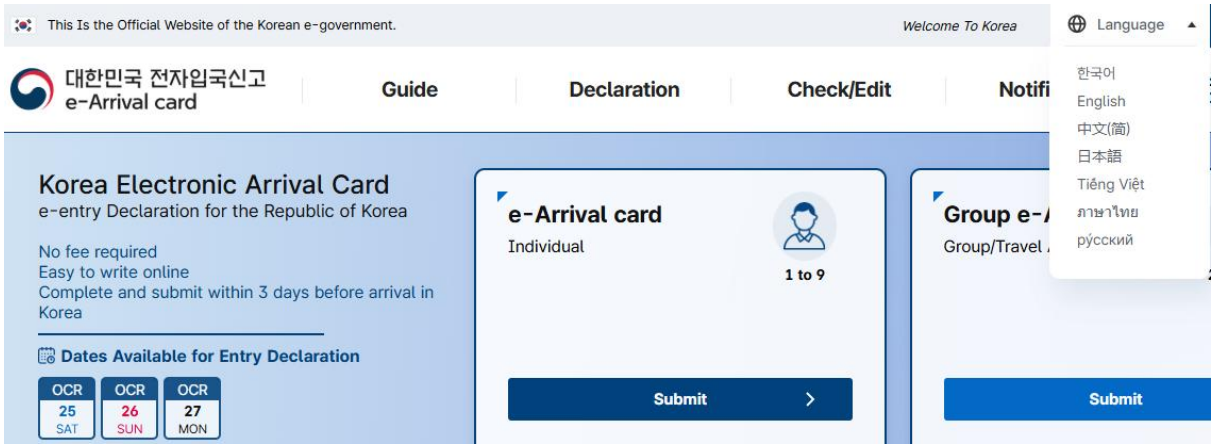
〈최근 3년간 “온라인미디어 다국어 번역·감수”예산 예·결산 내역〉

| 연도 | 예산액 | | 예산 현액(B) | 집행액 (C) | 집행률 (C/A) | 집행률 (C/B)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2023 | 33 | 33 | 33 | 14 | 43.3 | 43.3 | 19 |
| 2024 | 33 | 33 | 33 | 1 | 3.0 | 3.0 | 32 |
| 2025.8 | 27 | 27 | 27 | 2 | 8.8 | 8.8 | – |

특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대표적인 성과물로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 번역사업을 예시로 들고 있으나, 동 홈페이지에는 한국어와 영어를 제외하면,[69]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러시아어 5개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 부족이 아님에도 당초 취지와 다르게 다국어 번역이 부실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법무부는 온라인미디어 다국어 번역·감수 예산의 활용도를 제고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 온라인 홈페이지(예시)〉




69) 법무부는 영어 번역의 경우에는 기존 영문에디터를 활용하고 있어 동 예산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히고 있음.

## 마. 검찰국

### (1) 검찰국 총괄

#### ▢ 예산안 개요

법무부는 검찰청 소관 예산을 ‘검찰활동(1300)’ 프로그램 내 ‘검찰운영(1333)’, ‘검찰업무정보화(1334)’,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1335)’, ‘공판활동 및 형집행(1337)’ 단위사업 등 주요사업비와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7000)’ 프로그램 내 ‘검찰청운영인건비(7002-101)’,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7018-202, 7018-252)’ 등 기본경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검찰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98억 2,900만원(0.8%) 증액된 1조 2,632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연도별 검찰청 소관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예산액 | 집행액 |
|---|---|---|
| 2020년 | 1,099,439 | 1,074,074 |
| 2021년 | 1,165,986 | 1,120,818 |
| 2022년 | 1,162,670 | 1,134,512 |
| 2023년 | 1,187,350 | 1,178,488 |
| 2024년 | 1,225,520 | 1,215,395 |
| 2025년 9월 | 1,198,747<br>(추경 반영시 1,253,442) | 947,411 |
| **2026년(안)** | **1,263,271** | - |

자료: 법무부

### ▢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설치 등 관련 예산안 검토 필요성

2025년 9월 「정부조직법」 개정안[70]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026년 10월부터 현행 검찰청은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신설될 예정임. 이는 형사사법체계의 구조와 기능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중대한 제도 변화로, 법무부 및 검찰청의 조직·인력·업무·예산 등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사안임.

다만, 법무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과 관련된 준비 사항 등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임. 현재 편성·제출된 예산안은 전부 종전 검찰청 체제를 전제하고 있으며, 공소청 출범에 대비한 조직 재편비용이나 인력 재배치 등에 따른 소요경비, 정보시스템 이관 및 청사 이전 관련 예산안 등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자체만 결정된 상태이며, 공소청의 권한·기능, 구체적 규모, 조직구조, 인원, 청사 등은 향후 1년 내에 별도 논의하여 확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현재 공소청의 기능, 인력 규모 등 구체적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구체적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는 설명임.

그에 따라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 예산 항목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나,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 일정상으로는 2026

70) 의안번호 제2213247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9. 26. 본회의 수정가결

년 상반기 중 공소청으로 전환 준비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비하여 기초적 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도 일정 부분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임.

특히, 기존 검찰청 기능 중 공소 제기·유지 및 형집행 등 관련 사무는 공소청이 인계받고, 중대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승계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위한 조직정비 및 검사·수사관 인력 재배치 등은 2026년도 내에 실시되어야 할 필수적 사항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이 과정에서 청사 배치, 전산망 이관·통합, 행정지원체계 구축 등 각 신설기관의 초기 정착을 위한 비용 지출도 불가피할 것인바, 이와 관련한 준비성 예산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법무부는 향후 공소청의 조직 및 기능 등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추어 예산편성 방향성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고 공소청의 안정적 출범 및 형사사법행정 연속성 확보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봄.

### ▢ 검찰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편성 현황

법무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는 수사·공소유지·형집행 등 검찰기능 수행 전반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검찰국 소관 각종 세부사업에 특수활동비(230)가 총 72억 900만원, 특정업무경비(250-03)가 총 486억 4,800만원 편성되었음.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고, '특정업무경비'는 수사활동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지출행위의 성질[71] 및 기밀유지 필요성[72] 등에 따라 두 비목을 구분하여 편성·집행하고 있음.

먼저, 특수활동비는 지난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시 집행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다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6개월분 약 40억원이 복원된 바 있음.[73]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추경예산 대비 32억 500만원(80.0%) 증액된 것이며, 2024년에 편성되었던 예산액과 동일 규모임. 최근 5년간 검찰 특수활동비 편성·집행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

71) 현금 지출 외 지출증빙서류 구비가 불가능·곤란한 성질

72) 관련 판례상 특수활동비는 일자·금액을, 특정업무경비는 일자·장소·금액을 공개하여야 함.

73) 다만, 추경예산안 의결 당시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된 이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이 함께 채택되었는바, 이에 따라 2025년 9월 말 기준 검찰청은 특수활동비를 집행하지 않고 있음.

〈검찰국 소관 세부사업별 최근 5년간 특수활동비 편성 ·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2 | | 2023 | | 2024 | | 2025.9 | | 2026(안) | | |
|---|---|---|---|---|---|---|---|---|---|---|---|
| | 예산(추경) | 집행 | 예산 | 집행 | 예산 | 집행 | 예산(추경) | 집행 | 예산 | 2025 추경대비 | 2024 대비 |
|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 536 | 536 | 536 | 536 | 482 | 482 | 241 | – | **482** | 241 | – |
|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 122 | 122 | 122 | 122 | 110 | 110 | 55 | – | **110** | 55 | – |
| 형사부 등 수사지원 | 4,674 | 4,674 | 5,074 | 5,074 | 4,567 | 4,567 | 2,283 | – | **4,567** | 2,283 | – |
| 공공수사 | 356 | 356 | 356 | 356 | 320 | 320 | 160 | – | **320** | 160 | – |
| 국민생활침해 범죄수사 | 1,471 | 1,471 | 1,471 | 1,471 | 1,324 | 1,324 | 812 | – | **1,324** | 512 | – |
| 마약수사 | 275 | 275 | 275 | 275 | 248 | 248 | 374 | – | **248** | △126 | – |
|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 175 | 175 | 175 | 175 | 158 | 158 | 79 | – | **158** | 79 | – |
| **합 계** | 7,609 | 7,609 | 8,009 | 8,009 | 7,209 | 7,209 | 4,004 | – | **7,209** | 3,205 | – |

자료: 법무부

다음으로, 특정업무경비 또한 지난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시 특수활동비와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되었으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약 507억원이 모두 복원되었음.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추경 대비 20억 4,300만원(4.0%) 감액된 규모이며, 2024년도 예산액에 비해서는 3억 6,400만원(0.7%) 감액된 규모임. 최근 5년간 검찰 특정업무경비 편성·집행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 <검찰국 소관 세부사업별 최근 5년간 특정업무경비 편성·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2 | | 2023 | | 2024 | | 2025.9. | | 2026(안) | | |
|---|---|---|---|---|---|---|---|---|---|---|---|
| | 예산(추경) | 집행 | 예산 | 집행 | 예산 | 집행 | 예산(추경) | 집행 | 예산 | 2025 추경대비 | 2024 대비 |
|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 89 | 89 | 89 | 89 | 89 | 89 | 153 | 18 | 138 | △15 | 49 |
|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 4,051 | 4,051 | 4,423 | 4,423 | 4,539 | 4,539 | 4,539 | 2,864 | 4,372 | △167 | △167 |
|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 58 | 58 | 76 | 76 | 88 | 88 | 88 | 20 | 79 | △9 | △9 |
| 형사부 등 수사지원 | 32,767 | 32,767 | 33,768 | 33,768 | 34,533 | 34,533 | 35,543 | 23,786 | 34,621 | △922 | 88 |
| 공공수사 | 1,512 | 1,512 | 1,512 | 1,512 | 1,578 | 1,578 | 1,740 | 460 | 1,566 | △174 | △12 |
| 국민생활침해 범죄수사 | 2,088 | 2,088 | 2,672 | 2,672 | 3,542 | 3,542 | 3,726 | 827 | 3,353 | △373 | △189 |
| 마약수사 | 1,130 | 1,130 | 1,228 | 1,228 | 1,337 | 1,337 | 1,387 | 878 | 1,355 | △32 | 18 |
| 사회적약자 대상범죄 수사 | 626 | 626 | 720 | 720 | 720 | 720 | 942 | 166 | 848 | △94 | 128 |
|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 714 | 714 | 795 | 795 | 1,186 | 1,186 | 1,187 | 94 | 1,068 | △119 | △118 |
| 공판활동지원 | 772 | 772 | 772 | 772 | 772 | 772 | 772 | 184 | 694 | △78 | △78 |
|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 517 | 517 | 543 | 543 | 614 | 614 | 614 | 61 | 553 | △61 | △61 |
| **합 계** | 44,324 | 44,324 | 46,599 | 46,599 | 48,999 | 48,999 | 50,691 | 29,358 | 48,648 | △2,043 | △364 |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직접수사·보완수사·공소유지·형집행·범죄수익환수 등 검찰 기능수행 전반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으로서, 정부안 대비 추가 삭감은 검찰의 범죄대응역량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는 검찰이 특정업무경비를 업무추진비 등 성격으로 집행해 온 관행에 대하여 '관련 지침에 맞게 집행하라'는 취지로 시정요구('시정')가 채택된 바 있음.

따라서, 예산집행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밀유지 필요성 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특수활동비 또는 특정업무경비를 업무추진비(240) 등 일반경비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74]

74) 당시 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도 검찰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해야 할 부분을 관행적으로 특정업무경비로 대체해서 썼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환하여 현실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법무부도 이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것이라 답변한 바 있음.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 9. 3. 회의록 참조

## (2)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1333-302)

### ▢ 예산안 개요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은 과학수사기법 개발, 연구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 등 과학수사 인프라를 구축·지원하고, 과학수사에 필요한 첨단 시설·장비를 도입·운영하는 한편, 해외 학회·교육 참석 등 국제과학수사 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8억 4,000만원(6.9%) 감액된 114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 | 2025 | | 2026 | | |
|---|---|---|---|---|---|---|
| | 결산 | 본예산 | 추경예산 (A) |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 9,883 | 12,097 | 12,250 | **11,410** | △840 | △6.9 |
| ・과학수사활동 지원 | 4,021 | 4,829 | 4,982 | **4,954** | △28 | △0.6 |
| ・과학수사 시설 및 장비 운영 | 5,595 | 6,950 | 6,950 | **6,134** | △816 | △11.7 |
| ・국제과학수사 협력 지원 | 265 | 317 | 317 | **322** | 5 | 1.6 |

### ▢ 영상녹화조사장비·시설 관련 비용 절감방안 검토 필요

‘영상녹화조사’는 수사과정상 투명성 확보를 통한 인권보장 등 목적에서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녹음·녹화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75] 등에 근거하고 있음.

검찰청은 2004년부터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영상녹화조사실을 설치하여, 전국 청에 2025년 9월 기준 총 903개 영상녹화조사실을 운영하고 있음. 이와 관련한 2026년도 예산안은 5억 4,700만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3,750만원 증액되었던 2025년도 예산과 같은 금액임.

**<영상녹화조사실 설치 현황>**

| 연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9. |
|---|---|---|---|---|---|---|---|---|---|
| 개소 | 838 | 841 | 885 | 890 | 890 | 899 | 903 | 903 | 903 |

자료: 법무부

세부내역을 보면, 영상녹화에 필요한 공 DVD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일반수용비(210-01) 1억 200만원, 영상녹화조사실 및 영상녹화장비 유지보수 비용인 시설장비유지비(210-09) 1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노후 영상녹화장비 교체 비용인 자산취득비(430-01) 3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75)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연도별 영상녹화조사 관련 예산집행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 비 목 | 예산액 | 집행액 |
|---|---|---|---|
| 2022년 | 210-01 | 102,000 | 102,000 |
| | 210-09 | 125,016 | 103,662 |
| | 430-01 | 448,500 | 370,013 |
| | **소 계** | **675,516** | **575,675** |
| 2023년 | 210-01 | 102,000 | 102,000 |
| | 210-09 | 125,016 | 94,931 |
| | 430-01 | 382,500 | 348,880 |
| | **소 계** | **609,516** | **545,811** |
| 2024년 | 210-01 | 102,000 | 102,000 |
| | 210-09 | 125,016 | 91,853 |
| | 430-01 | 282,500 | 198,000 |
| | **소 계** | **509,516** | **391,853** |
| 2025년 9월 | 210-01 | 102,000 | 102,000 |
| | 210-09 | 125,016 | 75,404 |
| | 430-01 | 320,000 | 계약중 |
| | **소 계** | **547,016** | **177,404** |
| **2026년(안)** | 210-01 | 102,000 | - |
| | 210-09 | 125,016 | |
| | 430-01 | 320,000 | |
| | **소 계** | **547,016** | |

자료: 법무부

그러나 연도별 영상녹화조사 관련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집행률은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뿐만 아니라, 다음 표와 같이 검찰의 영상녹화조사 활용 실적도 이전 대비 크게 부진한 상황인바, 매년 적지 않은 금액으로 영상녹화조사장비·시설 관련 예산을 반복 편성하는 것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연도별 영상녹화조사 실적>

(단위: 건, %)

| 구 분 | 영상녹화 조사건수(A) | 전체 조사건수(B) | 영상녹화 조사비율(A/B) |
|---|---|---|---|
| 2017년 | 37,007 | 227,415 | 16.3 |
| 2018년 | 24,145 | 212,324 | 11.4 |
| 2019년 | 19,768 | 184,479 | 10.7 |
| 2020년 | 6,553 | 111,763 | 5.9 |
| 2021년 | 4,902 | 64,991 | 7.5 |
| 2022년 | 4,694 | 57,938 | 8.1 |
| 2023년 | 4,001 | 62,564 | 6.4 |
| 2024년 | 4,360 | 63,193 | 6.9 |
| **2025년 9월** | **1,825** | **45,453** | **4.0** |

자료: 법무부

검찰의 연도별 영상녹화조사 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3만 7,000여건에 이르렀고, 전체 조사건수 대비 비율도 16.3%를 보였으나, 2020년 녹화건수가 6,553건으로 급락한 이후, 최근 들어서는 매년 녹화건수가 5,000건을 하회하며, 전체 조사건수 대비 녹화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이러한 실적 부진은 ① 공판 과정에서 영상조사녹화물에 대한 독립적 증거능력이 「형사소송법」상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76] ② 2020년

76)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판결]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고 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개시 범위가 대폭 축소되고,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방식이 변경[77]됨에 따라 전체 조사건수 자체가 크게 감소하였다는 점, ③ 「형사소송법」 개정[78]으로 영상녹화물을 더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진정성립 입증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 등에 기인함.

특히, 이들 사유는 검찰 영상녹화조사와 관련한 형사사법 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해당하는바, 영상녹화조사장비·시설 등 규모 대비 실제 영상녹화조사 수요 부족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구조적 요인이라 할 수 있음. 이에 우리 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변화된 형사사법 환경에 비추어 과잉 설치된 측면이 있는 영상녹화조사실 및 장비에 대해 타용도 전환 모색 등 효율적 활용과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시정요구(제도개선)도 채택한 바 있음.

따라서 법무부는 향후 영상녹화조사장비·시설 교체 시 이러한 영상녹화조사 실적의 구조적 감소 요인과 국회 결산심사 취지 등을 감안하여, 내용연수 도과 여부 및 고장·노후화 상태 등 장비·시설 관련 요소 외에

---

석함이 타당하다.”
2020. 2. 4.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21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개정(2022. 2. 4.시행) 이후에도 대법원은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검찰 조사 단계에서 촬영된 피의자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함.

77) 기존에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면, 수사권 조정 이후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되었음(2020. 2. 4.「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신설).

78)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했던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이 삭제되었음.

도, 각 검찰청별 영상녹화조사실 설치·운용 규모 및 사용실적 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노후 장비 교체주기를 늘릴 필요가 있어 보임.

아울러, 실제 영상녹화조사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전체 영상녹화조사장비·시설 보유 수량의 일부 축소 등 비용 절감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영상녹화조사장비·시설 예산액도 일부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3)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1333-306),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1337-301)

▢ 예산안 개요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은 전국 검찰청의 사무원·전화상담원 등 공무직 채용·운영을 지원하고, 검사 및 수사관의 수사·정보수집 등 검찰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검찰의 인력선발 관리 및 전문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대검찰청의 감찰·인권보호·양성평등 업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55억 7,100만원(23.2%) 증액된 295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 | 2025 | | 2026 | | |
|---|---|---|---|---|---|---|
| | 결산 | 본예산 | 추경예산 (A) |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 25,178 | 19,187 | 23,967 | **29,538** | 5,571 | 23.2 |
| · 검찰업무지원 인력 운영 | 9,221 | 9,631 | 9,631 | **10,909** | 1,278 | 13.3 |
| · 검찰업무지원 | 9,873 | 4,164 | 8,565 | **12,377** | 3,812 | 44.5 |
| · 인력선발 관리 및 전문역량 강화 | 3,694 | 3,665 | 3,665 | **4,209** | 544 | 14.8 |
| · 감찰활동 강화 | 930 | 559 | 938 | **882** | △56 | △6.0 |
| · 인권감독 강화 | 1,310 | 1,017 | 1,017 | **1,010** | △7 | △0.7 |
| · 양성평등 강화 | 150 | 150 | 150 | **150** | - | - |

한편,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는 자유형을 선고받고 도주하거나 재산형을 선고받고 납부를 거부·회피하는 자를 추적·검거하는 데 필요한 경비 등을 전국 검찰청에 지원하는 한편, 형집행 요원 활동비 등 관련 부서 제반 경비, 범죄수익 추적·환수 및 피해자 환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7억 8,600만원(10.8%) 감액된 64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 | 2025 | | 2026 | | |
|---|---|---|---|---|---|---|
| | 결산 | 본예산 | 추경예산 (A) |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 7,221 | 6,648 | 7,262 | **6,476** | △786 | △10.8 |
| ·형집행 일반 | 1,041 | 788 | 1,042 | **817** | △225 | △21.6 |
| ·자유형 집행 | 338 | 258 | 338 | **330** | △8 | △2.4 |
| ·재산형 집행 | 5,043 | 5,033 | 5,033 | **4,370** | △663 | △13.2 |
| ·범죄수익 추적 환수 및 피해자 환부 | 800 | 570 | 850 | **960** | 110 | 12.9 |

###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따른 공공요금 삭감 편성 재검토 필요

2024년도 법무부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검찰국 소관 세부사업 중에서는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1333-306)'과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1337-301)'가 '미흡' 등급을 받았음.

그 사유를 살펴보면,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1333-306) 사업은 예산을 연례적으로 형사보상 등 사업에 전용 집행하였고, 공사비 등 불용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었으며,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1337-301) 사업은 분기별 집행액이 집행계획에 미달하였고,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음. 그에 따라 법무부는 다음 표와 같이 각 사업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을 2025년도 예산 대비 10% 이상 감액하는 지출구조조정안을 마련한 바 있음.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따른 검찰국 소관 사업 지출구조조정안>**

(단위: 백만원)

| 대상 사업 | 2025 예산(A) | 지출구조 조정안(B) | 구조조정액 (B-A) | 2026 예산안(C) | 전년 대비 증감액 (C-A) | 구조조정안 대비 격차 (C-B) |
|---|---|---|---|---|---|---|
| **인권보호 등 검찰 업무지원(1333-306)** | **19,187** | **17,135** | **△2,052** | **29,538** | **10,351** | **12,403** |
| 검찰업무지원 | 4,164 | 2,153 | - | 10,909 | 1,278 | 1,278 |
| 검찰업무지원 | 4,164 | 2,153 | △2,011 | 12,377 | 8,213 | 10,224 |
| 인력선발 관리 및 전문역량 강화 | 3,665 | 3,665 | - | 4,209 | 544 | 544 |
| 감찰활동 강화 | 559 | 525 | △34 | 882 | 323 | 357 |
| 인권감독 강화 | 1,017 | 1,010 | △7 | 1,010 | △7 | - |
| 양성평등 강화 | 150 | 150 | - | 150 | - | - |

| 대상 사업 | 2025 예산(A) | 지출구조 조정안(B) | 구조조정액 (B-A) | 2026 예산안(C) | 전년 대비 증감액 (C-A) | 구조조정안 대비 격차 (C-B) |
|---|---|---|---|---|---|---|
| **형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1337-301)** | 6,648 | 5,786 | △862 | 6,476 | △172 | 690 |
| 형집행 일반 | 788 | 589 | △199 | 817 | 29 | 228 |
| 자유형 집행 | 258 | 258 | - | 330 | 72 | 72 |
| 재산형 집행 | 5,033 | 4,370 | △663 | 4,370 | △663 | - |
| 범죄수익환수 및 피해자 환부 | 570 | 570 | - | 960 | 390 | 390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실제 법무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1333-306) 사업은 전년 대비 103억 5,100만원을 오히려 증액하여 295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1337-301)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7,200만원만 감액한 64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여, 두 사업 모두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준수하지 못하였음.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두 사업 모두 본질적 기능수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되어 감액 여지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구조조정 계획 준수를 위해 '공공요금' 등을 삭감하였으나, 2025년도 예산에 전액 삭감되었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다시 편성하고, 수사역량 강화 및 형사절차 전자화 대응 등 불가피한 필수 소요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결과적으로 계획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등 편성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계획 미준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과다한 이·전용 및 집행실적 부진 등

을 사유로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이 아니라, 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공공요금’의 대폭 삭감으로 지출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첫째, 재정사업자율평가는 단순히 총액을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구조조정을 통해 개선하려는 제도이므로, 과다이·전용 등 문제는 그대로 둔 채 공공요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지출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본래 제도 취지와 부합하기 어렵다고 봄.

특히,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는 전기·가스 및 상·하수도 요금과 우편·전화·통신비 지급 등 경상경비성 비목으로서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부족 시 기관 업무수행 자체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음. 따라서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 내 다른 항목 삭감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공공요금’을 삭감하는 것은 재정사업자율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검찰청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음.

둘째, 최근 법무부·검찰청은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다른 항목 경비를 대규모로 전용하고 있는바, 이미 공공요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오히려 삭감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음.

구체적으로, 법무부와 검찰청은 2023년도 검찰청 소관 전체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를 당초 277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대규모 부

족분이 발생하여 다른 사업예산 47억 2,700만원을 이·전용한 바 있음. 또한, 2024년에도 재차 상당 규모가 부족하여 41억 2,100만원을 다른 사업으로부터 이·전용하며 총 332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5년도 역시 9월 기준 16억원을 이·전용 받아 집행하였으며, 총 집행액은 256억원으로 이미 2026년도 예산안인 247억 9,900만원을 상회한 상황임.

**<검찰청 소관 공공요금 및 제세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2026년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연 도 | 예산액 (A) | 이·전용 등 | 예산현액 (B) | 집행액 (C) | 집행률 (C/A) | 집행률 (C/B) | 불용액 |
|---|---|---|---|---|---|---|---|
| 2022 | 28,197 | 437 | 28,634 | 28,621 | 101.5 | 100.0 | 13 |
| 2023 | 27,762 | 4,727 | 32,489 | 32,482 | 117.0 | 100.0 | 7 |
| 2024 | 29,158 | 4,121 | 33,279 | 33,234 | 114.0 | 99.9 | 45 |
| 2025.9. | 29,589 | 1,600 | 31,189 | 25,591 | 86.5 | 82.1 | - |
| 2026(안) | 24,799 | - | | | | | |

자료: 법무부

이러한 상황에서 지출구조조정을 위한 공공요금의 추가 삭감은 2026년에도 2023년·2024년과 같이 대규모 이·전용 등을 통해 집행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향후 법무부 및 검찰청은 공공요금 등 단순 경상경비 감액이 아니라, 사업 추진체계 및 집행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질적 구조조정 중심 대응이 필요하다고 봄.

## ▢ 수사기록전자화 사업 예산안 산출근거 보완·제시 필요

법무부는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1333-306) 사업 내 내역사업으로 '형사전자소송을 위한 수사기록 전자화' 예산안 43억 4,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이는 2025년 10월 수사기관 등의 형사사법절차전자화 시행에 맞춰 모든 형사사건기록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스캔 및 KICS 업로드)하기 위한 용역비용임.

법무부에 따르면 경찰 송치사건은 경찰청에서 전자화 작업을 실시하므로, 검찰청은 검찰 수사개시 사건 및 특사경 송치사건 등에 대해서만 전자화 사업을 실시함. 2026년 기준 대상 사건 총 수는 19만 1,773건, 대상 기록 총 쪽수는 3,845만 1,327쪽이며, 이를 위한 예산안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음.

**<수사기록 전자화 사업 예산안 산출근거>**

□ **소요예산: 4,345백만원**(일반연구비)

○ 4,345백만원 = 직접인건비 3,264백만원{=183,484원[1] x **71명**[2] x 12월 x 20.88근무일}
+ 제경비·부가세 등 1,080백만원(쪽당 평균 113원* 소요)
* '26년도 경찰의 전자화 작업 예산안 단가와 동일

1)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획재정부 예규)의 보조원 임금단가

2) 71명 = {전자화 작업 대상 기록 총 쪽수 ÷ (1인당 1일 작업 쪽수 x 20.88일 x 12월)} + 추가배치
= 38,451,327쪽
= 3,488쪽*
= 1인당 1년 작업 쪽수 (873,923쪽)
= **27명**
{= 약 **44명**}

*** 1인당 1일 작업량 : 3,488쪽**
(서울중앙·남부지검, 인천지검에서 기소중지 사건기록 대상으로 검찰 자체「스캔용역사업」시범 실시한 결과, 1일 1인당 스캔면수는 평균 약 3,488면 수준)

자료: 법무부

이에 따르면, 서울중앙·남부·인천지검 시범실시를 통해 도출한 1인당 1일 작업 가능 쪽수(3,488쪽)에 연간 근무일수(20.88일×12개월)를 곱하여 계산한 1인당 연간 처리량은 약 87만 3,923쪽으로, 이를 전자화 대상 기록 총량(약 3,845만 쪽)에 적용할 경우 스캔 용역인력 약 '44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됨.

다만, 법무부는 여기에 '추가배치 인원 27명'을 더하여 총 '71명'에 대한 용역비를 소요 예산안으로 제출하였음.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수도권 소재 검찰청(서울·경기·인천)의 경우 사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20명을 추가배치할 필요가 있고, 쪽수로 단순 계산한 결과 배치 인원이 0명인 지방 소재 검찰청은 권역별로 통합해 1명씩 추가로 배치하기 위하여 총 27명을 추가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 소재 검찰청에 대해서는 연간 필요 인원이 1명 미만에 불과한 청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행정적 보정으로서 일정 부분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도권 소재 검찰청에 대하여 20명을 추가배치하겠다는 근거는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고 봄.

법무부는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 사건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인력 추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정량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음. 특히, 사건 난이도나 기록 복잡성 등은 당초 '1인당 작업 가능 쪽수'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며, 부득이 난이도 보정이 필요하다면 기존에 이미 '수도권 지역' 시범실시를 통해 산출된

1인당 작업량(3,488쪽/일)을 재산출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법무부는 기존에 도출된 작업량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별도 정량적 근거 없이 20명을 단순히 증원하는 방식으로 산출근거를 제시하였는바, 이는 일종의 이중보정(二重補正)[79]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그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법무부가 이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득력 있게 보완·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봄.

79) 이미 한 번 반영된 보정 요인을 또 다시 적용하는 것

### (4) 형사부 등 수사지원(1335-301) 등

#### ▢ 예산안 개요

‘형사부 등 수사지원’은 전국 검찰청의 각종 수사활동 일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와 수사관의 범죄수사 활동비(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등), 수사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및 회의 개최 경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형사부 등 검사실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운영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32억 7,600만원(3.8%) 증액된 889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형사부 등 수사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 | 2025 | | 2026 | | |
|---|---|---|---|---|---|---|
| | 결산 | 본예산 | 추경예산 (A) |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형사부 등 수사지원 | 84,934 | 47,838 | 85,664 | **88,940** | 3,276 | 3.8 |
| • 수사보조인력 운영 | 21,223 | 24,143 | 24,143 | **27,653** | 3,510 | 14.5 |
| • 수사활동 일반 | 63,176 | 23,014 | 60,840 | **60,606** | △234 | △0.4 |
| • 디지털포렌식 수사 지원 | 195 | 339 | 339 | **339** | - | - |
| • 호송 · 인치 업무 지원 | 339 | 342 | 342 | **342** | - | - |

### ▢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을 실소요에 맞게 계상 필요

‘일반수용비(210-01)’는 통상적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행정사무비 및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로 발생되는 물품 구입비 등을 위해 편성되는 비목으로, 그 용도가 다양하고 활용 범위가 넓은 만큼 예산 낭비 소지도 큰 항목임. 이에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80]에는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81]

그러나 법무부 및 검찰청은 매년 예산안에 일부 사업에 대한 일반수용비(210-01)를 과다편성하는 경향이 있음. 특히, 법무부가 이번 2026년도 예산안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으로 일반수용비(210-01) 총 4억원(타 세부사업 및 기본경비 포함)을 편성한 것은 최근 집행실적 등을 고려할 때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부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는 검찰 요구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특정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내용·목적·일자 등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이 통보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임.[82]

---

80)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p.217

81) 나아가 위 지침에는 지난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수용비를 타 비목으로 이·전용하였거나 불용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소요 수준으로 조정·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82)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는 매년 반기별로 통보비용 청구 현황을 취합하여 검찰 등에 송부하고, 검찰 등이 그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고 있음.

다만,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연례적 집행부진 문제를 지적하였고,[83] 그에 따라 총 1억 9,000만원 감액을 의결하기도 하였음.[84]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전히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였는바, 이는 법무부가 편성하는 예산안이 당초부터 실소요에 비해 과다계상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연도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 집행실적>**

(단위: 천원)

| 구 분 | | 형사부 등 수사지원 (1335-301) |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1335-306) |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 (7018-252) | 합 계 |
|---|---|---|---|---|---|
| 2021 | 예산액 | 435,100 | 200,000 | 75,000 | 710,100 |
| | 집행액 | - | 172,656 | - | 172,656 |
| 2022 | 예산액 | 435,100 | 200,000 | 75,000 | 710,100 |
| | 집행액 | 61,419 | 25,062 | - | 86,481 |
| 2023 | 예산액 | 435,100 | 200,000 | 75,000 | 710,100 |
| | 집행액 | - | 169,407 | - | 169,407 |
| 2024 | 예산액 | 305,100 | 140,000 | 4,500 | 449,600 |
| | 집행액 | 92,445 | 66,060 | - | 158,504 |
| 2025. 7. | 예산액 | 305,100 | 90,400 | 4,500 | 400,000 |
| | 집행액 | - | 83,901 | - | 83,901 |
| 2026 (안) | 예산액 | 305,100 | 90,400 | 4,500 | 400,000 |

자료: 법무부

83) 법제사법위원회, "2024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23. 11.
84) 이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도 재차 문제 제기되어 5,000만원이 추가 감액되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무부와 검찰청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금융거래정보 통보건수를 32만 550건으로,[85] 건당 통보비용을 1,500원에서 2,000원 수준으로 설정하여 예산액을 산출하였음. 그러나 실제 2024년 전체 통보건수는 8만 548건이었고, 건당 통보비용도 500원 수준으로 가능한 '모바일 통보' 비중이 상당하였으며, 이는 당초 예산액 산출 내역과 현격히 차이나는 부분임.

**<연도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건수>**

(단위: 건, %)

| 연 도 | 전체 통보(A) | 우편 통보 | 모바일 통보(B) | B/A |
|---|---|---|---|---|
| 2021 | 49,544 | 49,333 | 211 | 0.43 |
| 2022 | 67,342 | 62,798 | 4,544 | 6.74 |
| 2023 | 106,695 | 98,167 | 8,528 | 7.99 |
| 2024 | 80,548 | 73,462 | 7,086 | 8.80 |
| 2025. 6. | 37,541 | 32,889 | 4,652 | 12.39 |

자료: 법무부

또한, 2025년 6월 기준으로 전체 통보 건수 중 모바일 통보 건수 비율이 12.4%에 이르는 등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86] 향후에도 집행률이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85) 다만, 당시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액이 일부 감액됨에 따라 산출내역의 통보 건수 또한 10만 건 줄어든 22만 550건으로 변경되었음.

86) 통보 방식과 관련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비용절감 등 차원에서는 우편 통보보다는 모바일 통보 비중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일반수용비(210-01)는 예산편성 규모의 적정성 및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감시가 다른 비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음. 위 사례처럼 일반수용비(210-01)를 과다편성하는 경우, 범용성이 넓다는 비목 특성상 예산낭비 소지가 커지고, 이를 악용한 행정편의적 예산집행으로 국회 예산안 심의·의결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그만큼 커진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를 위하여 각 세부사업에 편성된 일반수용비(210-01)는 실소요에 맞추어 일정 부분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 영장심의위원회 등 개최경비를 실소요에 맞게 감액조정 필요

‘형사부 등 수사지원(1335-301)’ 사업에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87]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수당 등 일반수용비(210-01) 1억 3,300만원과 사업추진비(240-01) 2,300만원이 매년 편성되고 있음. 또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9조[88]에 따라 ‘수사기관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수용비(210-01) 3,600만원 및 사업추진비(240-01) 5,900만원도 매년 편성되고 있음.

그러나 이들 경비의 집행실적은 연례적으로 크게 부진한 실정인바, 매년 일정 예산 반복 편성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함.

---

87)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88)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9조(수사기관협의회)**
① 대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간에 수사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수사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수사기관협의회를 둔다.
② 수사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한다.
1. 국민의 인권보호, 수사의 신속성·효율성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2. 국가적 재난 상황 등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제1항의 어느 한 기관이 수사기관협의회의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③ 수사기관협의회는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제1항의 어느 한 기관이 요청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각 기관은 수사기관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사기관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협의회에서 정한다.

먼저, 영장심의위원회는 이전부터 개최실적 및 예산집행률이 크게 부진하였고, 이에 과거 예산안 및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어[89] 예산액이 상당 부분 감액되었음. 그럼에도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액 대비 4.8%에 불과한 645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는 감액 이후 현재 편성액도 여전히 실소요 대비 과다함을 보여주는 것임.

**<연도별 영장심의위원회 수당 등 예산집행 실적>**

(단위: 천원, %, 건)

| 구 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8. | 2026(안) |
|---|---|---|---|---|---|---|
| 예산액 (210-01) | 780,000 | 780,000 | 200,000 | 133,000 | 133,000 | 133,000 |
| **집행액** | **10,572** | **4,672** | **5,953** | **6,450** | **6,687** | |
| **집행률** | **1.4** | **0.6** | **3.0** | **4.8** | **5.0** | - |
| 개최실적 | 5 | 2 | 3 | 3 | 3 |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영장심의위원회 수당'의 경우 사법경찰관의 신청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있어야 심의를 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통상 검사가 영장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 후 영장을 청구하고 있어 그 신청 건수가 적으나, 향후 경찰의 신청 건수 증가에 대비하여 필요 최소한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89) 법제사법위원회, "2023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2024. 8. 등

다음으로, 수사기관협의회 또한 매년 한 차례만 열리거나 아예 열리지 않을 정도로 개최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검찰청은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한 '수사준칙'을 위반하고 있음. 이에 예산 집행 실적도 연례적으로 부진한바, 그럼에도 매년 같은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과다편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연도별 수사기관협의회 등 운영 예산집행 실적>**

(단위: 천원, 건)

| 구분 | 2022 | | 2023 | | 2024 | | 2025. 8. | | 2026(안) |
|---|---|---|---|---|---|---|---|---|---|
| | 예산 | 집행 | 예산 | 집행 | 예산 | 집행 | 예산 | 집행 | 예산 |
| 일반 수용비 | 36,000 | 10,000 | 36,000 | 18,582 | 36,000 | 19,754 | 36,000 | 4,483 | 36,000 |
| 업무 추진비 | 59,000 | 9,239 | 59,000 | 22,089 | 59,000 | 19,839 | 59,000 | 6,462 | 59,000 |
| 개최 실적 | 0 | | 1 | | 1 | | 0 | | -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수사기관협의회'의 경우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과 협의 등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수시로 수사기관 간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해당 예산으로 수사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외에 특사경 협의·간담회, 형사법 관련 학술대회, 검찰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학계·법조계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예산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영장심의위원회 및 수사기관협의회 등 운영 관련 예산은 지속적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집행실적이 매년 저조한 상황인바, 향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집행규모가 단기간에 대폭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들 예산을 실소요에 맞게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추후 위원회 또는 협의회 개최실적·수요가 증가한다면 그에 맞추어 예산 증액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인 편성·집행이라 봄.

### (5) 공공수사(1335-302)

#### ▢ 예산안 개요

‘공공수사’는 선거사범, 국가안전위해사범, 불법집단행동사범 등 대상 공공수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사업추진비 등 제반 경비를 전국 검찰청에 지원하는 한편, 국가보안유공자 및 선거범죄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800만원(0.2%) 감액된 32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공공수사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 | 2025 | | 2026 | | |
|---|---|---|---|---|---|---|
| | 결산 | 본예산 | 추경예산 (A) |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공공수사 | 3,002 | 1,346 | 3,246 | **3,238** | △8 | △0.2 |
| ·공공수사 지원 | 502 | 522 | 522 | **528** | 6 | 1.1 |
| ·공공수사활동 경비 | 2,477 | 567 | 2,467 | **2,453** | △14 | △0.6 |
| ·포상금 지급 | 23 | 258 | 258 | **258** | - | - |

### ▢ 국가보안유공자 등 포상금 감액조정 검토 필요

2026년도 ‘공공수사’ 사업 예산안에는 ‘국가보안유공자포상금’(2억 4,388만원) 및 ‘선거범죄신고포상금’(1,362만원) 등을 지급하기 위한 포상금(310-03) 예산안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총 2억 5,75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음.

국가보안유공자포상금은 「국가보안법」[90]에 따라 국가보안 등 위해 사범을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사람(민간인) 및 위 사범을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정보기관 종사자(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며, 선거범죄신고포상금은 「공직선거법」[91] 및 「정치자금법」[92]에 따라 선거범죄 등 사건을 해결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임.

그러나 연도별 포상금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집행이 원활하여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집행률이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문제가 있음.

---

90) **「국가보안법」 제21조(상금)** ①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②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③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91) **「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92) **「정치자금법」 제54조(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은 정치자금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연도별 공공수사 포상금 예산집행 내역>

(단위: 천원, 명)

| 연 도 | 구 분 | 예 산 | 지 급 | |
|---|---|---|---|---|
| | | | 금 액 | 인 원 |
| 2021 | 국가보안유공자포상금(공무원) | 64,500 | 38,640 | 16 |
| | 국가보안유공자포상금(민간인) | 53,379 | 173,552 | 7 |
| | 선거범죄신고포상금 | 11,120 | 80 | 1 |
| | **소 계** | **128,999** | **212,272** | **24** |
| 2022 | 국가보안유공자포상금(공무원) | 64,500 | 59,840 | 39 |
| | 국가보안유공자포상금(민간인) | 53,379 | 131,300 | 4 |
| | 선거범죄신고포상금 | 45,121 | 380 | 1 |
| | **소 계** | **163,000** | **191,520** | **44** |
| 2023 | 국가보안유공자포상금(공무원) | 64,500 | 153,240 | 19 |
| | 국가보안유공자포상금(민간인) | 53,379 | 8,600 | 1 |
| | 선거범죄신고포상금 | 45,121 | 0 | 0 |
| | **소 계** | **163,000** | **161,840** | **20** |
| 2024 | 국가보안유공자포상금(공무원) | 133,500 | 8,400 | 1 |
| | 국가보안유공자포상금(민간인) | 110,379 | 14,800 | 1 |
| | 선거범죄신고포상금 | 45,121 | 0 | 0 |
| | **소 계** | **289,000** | **23,200** | **2** |
| 2025.9. | 국가보안유공자포상금(공무원) | 133,500 | 0 | 0 |
| | 국가보안유공자포상금(민간인) | 110,379 | 0 | 0 |
| | 선거범죄신고포상금 | 13,621 | 0 | 0 |
| | **소 계** | **257,500** | **0** | **0** |
| **2026(안)** | 국가보안유공자포상금(공무원) | 133,500 | – | – |
| | 국가보안유공자포상금(민간인) | 110,379 | | |
| | 선거범죄신고포상금 | 13,621 | | |
| | **소 계** | **257,500** | | |

자료: 법무부

특히, 2024년 법무부는 포상금 예산을 전년 대비 77.3%인 1억 2,600만원 증액하여 2억 8,9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2,300만원에 불과하여 집행률이 8.0%에 그쳤고,[93] 나머지 2억 6,600만원은 전부 형사보상금으로 전용하였음.

**<공공수사 포상금 2024년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2024년 | | | | | 2025년 | 2026년 |
|---|---|---|---|---|---|---|---|---|---|
| | 예산액 | 집행액 | 예산액 (전년대비) | 이·전용 등 | 예산 현액 | 집행액 | 불용액 | 예산액 | 예산안 |
| ○공공수사 | 3,109 | 3,106 | 3,276 (+167) | △273 | 3,003 | 3,002 | 1 | 3,246 | 3,238 |
| · 포상금 (310-03) | 163 | 162 | 289 (+126) | △266 | 23 | 23 | - | 258 | 258 |

* 주: 기타 비목 생략,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경 반영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러한 집행부진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이 3,150만원 삭감되기도 하였으나, 2025년에는 9월까지 아예 집행이 전무한 상황임.[94]

법무부는 해당 연도 사건 수, 정치·사회적 상황, 사건 내용, 수사단서 성격 등 외부적 요인에 따라 집행실적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예산 추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93) 특히, 이 중 '선거범죄포상금'의 경우 연례적으로 집행이 극히 저조한 문제가 있으나, 매년 지적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94) 다만, 2025년도 포상금은 연말 집행 예정이라는 것이 법무부 설명임.

그러나 이는 법무부 및 검찰청이 전년도 집행실적과 향후 소요 규모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충분히 수행하지 아니한 채 편성 규모를 과다하게 산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잔여 예산을 다른 사업 재원으로 이·전용하여 집행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2026년도 공공수사 포상금 예산안에 대해서는 최근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6)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1335-303)

#### ▢ 예산안 개요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는 주가조작, 개인정보 유출 등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등 제반 경비를 전국 검찰청에 지원하는 한편, 범죄신고자에게 안전가옥 제공 등 신변보호조치 및 특정범죄신고자 구조금·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국민생활침해 사범 수사와 관련된 특별사법경찰관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12억 7,000만원(8.8%) 증액된 157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 | 2025 | | 2026 | | |
|---|---|---|---|---|---|---|
| | 결산 | 본예산 | 추경예산 (A) |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 14,513 | 9,918 | 14,456 | **15,726** | 1,270 | 8.8 |
| ·국민생활침해 사범 수사 | 14,007 | 9,412 | 13,950 | **15,220** | 1,270 | 9.1 |
| ·범죄신고자 보호 및 피해자 지원 | 276 | 276 | 276 | **276** | - | - |
| ·특별사법경찰 관리 운영 | 230 | 230 | 230 | **230** | - | - |

### ▢ 특정범죄신고자구조금 감액조정 검토 필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4조[95]에 따르면, 국가는 범죄신고자 등[96](피해자 포함)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중대한 경제적 손실이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때 또는 이사·전직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범죄신고자등 구조금(특정범죄신고자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구조금은 기지출하였거나 지출 필요가 있는 치료비, 생활비, 이사 및 전직비용, 방범시설 설치비, 수사기간 중 범죄신고자 등 또는 그 친족 등 보호나 경호에 필요한 비용과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산정됨.[97]

2026년도 예산안에는 특정범죄신고자 구조금 지급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기타보전금(310-04) 6,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9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4조(범죄신고자등 구조금)** ① 국가는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전직(轉職)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조금의 금액은 보복의 위험성,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지출비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결정한다.

96)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범죄신고등"이란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진정(陳情)·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3. "범죄신고자등"이란 범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한다.

97)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9조(구조금의 산정)**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은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치료비, 생활비, 이사 및 전직비용, 방범시설 설치비, 수사기간중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등의 보호나 경호에 필요한 비용과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중 치료비, 이사비용, 방범시설 설치비와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 등의 보호나 경호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실비로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중 생활비·전직비용 및 위자료는 이를 합산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조금지급 대상자의 근무직종에 따라 구조결정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최저임금의 5배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도별 특정범죄신고자구조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집행액 및 지급건수 등 실적이 부진한 상황임.

**<연도별 범죄신고자등 구조금 예산액 및 집행액 현황>**

(단위: 천원, %, 건)

| 연 도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률 | 지급건수 |
|---|---|---|---|---|
| 2018년 | 77,000 | 8,363 | 10.9 | 2 |
| 2019년 | 77,000 | 10,138 | 13.2 | 2 |
| 2020년 | 77,000 | 28,400 | 36.9 | 8 |
| 2021년 | 77,000 | 900 | 1.2 | 1 |
| 2022년 | 77,000 | 0 | 0.0 | 0 |
| 2023년 | 77,000 | 37,100 | 48.1 | 6 |
| 2024년 | 62,000 | 27,820 | 44.9 | 5 |
| 2025년 8월 | 62,000 | 8,000 | 12.9 | 3 |
| **2026년(안)** | **62,000** | – | | |

자료: 법무부

구체적으로, 구조금은 과거부터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하였으며, 특히 2021년에는 90만원 지급 1건뿐이었고, 2022년에는 실적이 전무하였음. 이에 당시 우리 위원회 결산심사에서는 “구조금 지원제도의 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시정요구(제도개선)[98]를 채택하기도 하였음.

98) 우리 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당시 “법무부 및 검찰청은 일선 청 담당자들이 가지급을 포함한 범죄신고자등 구조금 제도를 숙지하고, 신청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는 등 구조금 지원제도의 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법무부는 담당자 교육 및 지급대상자 적극 발굴 등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이에 2022년 실적은 0건이었지만 2023년 집행률은 48.1%, 2024년은 44.9%로 이후 실적이 다소 개선되었다는 설명이나, 2025년에는 8월 말 기준 800만원이 집행되어 12.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2026년도 예산안을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편성하는 것은 과다한 측면이 있는바, 최근 집행실적 및 실제 소요를 감안하여 일부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아울러, 구조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요건 완화나 절차 간소화, 범죄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신청절차 안내 확대 등 노력을 병행하도록 할 필요도 있어 보임.

### (7) 마약수사(1335-304)

#### ▢ 예산안 개요

‘마약수사’는 마약수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등과 장비 구입·차량임차 등 비용를 전국 검찰청에 지원하는 한편, 대검찰청이 주최하는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99])’와 마약류 불법거래 관련 실시간 정보공유 및 대응을 목표로 설립된 ‘아·태지역마약조정센터(APICC[100])’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10억 700만원(10.5%) 증액된 105억 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마약수사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 | 2025 | | 2026 | | |
|---|---|---|---|---|---|---|
| | 결산 | 본예산 | 추경예산 (A) |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마약수사 | 7,600 | 7,823 | 9,584 | **10,591** | 1,007 | 10.5 |
| • 마약사범 수사 | 7,298 | 7,415 | 9,176 | **10,191** | 1,015 | 11.1 |
| •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 138 | 138 | 138 | **138** | - | - |
| • 아태지역마약조정센터운영(APICC) | 164 | 270 | 270 | **262** | △8 | △3.0 |

99) Anti-Drug Liaison Officials' Meetin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100) Asia-Pacific Information & Coordination Center for combating drug crimes

### ▢ 가상자산 추적도구 도입 예산안 신규편성 관련 신중검토 필요

법무부는 2026년도 마약수사 사업 예산안에 ‘가상자산 추적도구’ 도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430-01) 10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101] 이는 마약사범들이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고자 가상자산을 마약 거래 필수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사범 추적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하여 검찰이 직접 가상자산 거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추적장비(소프트웨어)를 구매하려는 것임.

다만, 마약수사 사업에는 기존에도 ‘가상화폐 추적수사지원’을 위하여 10억원에 가까운 일반수용비(210-01)가 편성되고 있는바, 그 집행실적도 크게 저조한 상황에서 유사 목적 예산을 다시 대규모로 신규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가상화폐 추적수사지원’은 가상화폐 빅데이터 전문업체[102]가 제공하는 가상화폐 추적 및 피의자 특정 서비스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추적 수사를 지원받는 용역임.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검찰청 자체 인력이 가상자산 추적도구를 사용하여 거래추적을 직접 수행하더라도 고난도 자금세탁 기술이 적용된 가상자산 거래 등과 같이 직접 추적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업체의 수사 지원이 불가피하므로, ‘가상자산 추적도구’ 및 ‘가상화폐 추적수사지원’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임.

---

101) 10억 5,000만원 = 1억 500만원* × 10계정(서울중앙2, 인천2, 부산2, 수원1, 광주1, 대전1, 대구1)
* 美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 社 추적장비의 한국 독점공급 업체 견적가

102) 위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 社

그러나 실제 ‘가상화폐 추적수사지원’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4억 4,000만원 규모 예산을 신규편성한 2024년에는 3억 4,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준수한 편이었으나, 예산을 9억 9,000만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한 2025년에는 오히려 9월 기준으로도 집행액이 7,500만원에 그쳐 집행률이 7.6%에 불과한 상황임.[103]

**<마약수사 내 가상화폐(자산)추적 관련 예산 편성 ·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 2024 | | 2025. 9. | | 2026(안) |
|---|---|---|---|---|---|
| | 예산 | 집행 | 예산 | 집행 | 예산 |
| 가상화폐 추적수사지원 | 440,000 | 345,000 | 990,000 | 75,000 | 860,000 |
| 가상화폐 추적수사 전문교육 | – | – | 359,040 | 351,860 | 359,040 |
| 가상자산 추적도구 | – | – | – | – | 1,050,000 |
| **합 계** | 440,000 | 345,000 | 1,349,040 | 426,860 | 2,269,040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추적도구’ 예산안을 대규모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과다편성 및 중복편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바, 그 적절성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만일 반드시 두 사항이 모두 필요하다면, 신규편성 예산액 외에 기존 ‘가상화폐 추적수사지원’ 예산액 중 일부를 감액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103) 법무부는 이에 대하여 마약범죄 위장거래 등에 사용되는 수사비(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가 2025년도에 전액 삭감되는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마약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8)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1335-305)

### ▢ 예산안 개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는 사건관계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분석하는 진술분석관 채용·운영 등을 지원하는 한편,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 범죄 수사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전국 검찰청에 지원하고, 성범죄 피해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8,500만원(2.3%) 증액된 37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 | 2025 | | 2026 | | |
|---|---|---|---|---|---|---|
| | 결산 | 본예산 | 추경예산 (A) |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 3,328 | 2,760 | 3,702 | **3,787** | 85 | 2.3 |
| ·진술분석관 운영 | 979 | 1,153 | 1,153 | **1,347** | 194 | 16.8 |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지원 | 2,349 | 1,607 | 2,549 | **2,440** | △109 | △4.3 |

### ▢ 연례적 실적부진 내역사업에 대한 예산안 감액조정 검토 필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수사’는 디지털성범죄 등을 비롯한 각종 범죄로부터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검찰청 소관 여러 수사업무 중에서도 특히 그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개별 내역사업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이 집행실적이 매년 부진한 경우가 다수 있었는바, 그럼에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감액조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먼저, ‘디지털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 관련 전문화 교육’ 사업의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

본 내역사업은 이른바 딥페이크(deep fake) 성범죄 등 관련 수사실무 매뉴얼을 발간하고, 전담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와 함께 문제상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매년 예산이 9,100만원씩 편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매년 집행액이 1,000만원을 하회하는 등 실적이 저조함. 특히, 본 내역사업은 처음 실시된 2021년에는 3,681만원, 2022년에는 1,106만원이 집행되었으나, 그 이후 집행실적이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는 문제가 있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수사 내 일부 내역사업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천원)

| 구 분 | 2023 | | 2024 | | 2025. 9. | | 2026(안) |
|---|---|---|---|---|---|---|---|
| | 예산 | 집행 | 예산 | 집행 | 예산 | 집행 | 예산 |
| 디지털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관련 전문화 교육 | 91,000 | 7,122 | 91,000 | 7,712 | 91,000 | 9,680 | 91,000 |
| 스토킹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 | 67,000 | 1,441 | 67,000 | 14,365 | 67,000 | 0 | 67,000 |
| 피해자 재활을 위한 심리, 예술치료 | 22,800 | 3,254 | 15,800 | 3,600 | 13,800 | 0 | 13,800 |

자료: 법무부

다음으로 ‘스토킹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 및 ‘피해자 재활을 위한 심리, 예술치료’도 집행률이 매년 저조하게 나타남.

‘스토킹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전담 검사·수사관 등 역량을 강화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나, 2024년에는 예산액 6,700만원 중 1,437만원만 집행되어 21.4% 집행에 그쳤고, 2025년에는 9월까지 집행액이 전혀 없음.

또한,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등 피해자의 트라우마 극복 및 사회적응을 위해 실시하는 ‘피해자 재활을 위한 심리, 예술치료’ 사업도 2024년 기준 집행률이 22.8%로 저조하며, 이 역시도 2025년에는 9월까지 집행액이 없음.

법무부는 이와 같은 부진이 각 내역사업에 대한 일선 청의 인지 부족 및 수사·공판 등 사건처리 업무 부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위축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함.

그러나, 이는 동일·유사한 사정의 계속 반복으로 당장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선 그 사정에 맞게 해당 예산을 감액편성하고 추후 상황이 개선되면 소요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위 내역사업들에 대해서는 2026년도 예산안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9) 형사보상(1337-302)

#### ▢ 예산안 개요

‘형사보상’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구속 피의자 및 검사가 기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재심·비상상고 등 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구속 피고인 등을 대상으로 그 구금·형집행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억원(4.8%) 증액된 440억원으로 편성되었음.

**<형사보상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 | 2025 | | 2026 | | |
|---|---|---|---|---|---|---|
| | 결산 | 본예산 | 추경예산 (A) |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형사보상 (310-01) | 77,219 | 42,000 | 42,000 | **44,000** | 2,000 | 4.8 |

### ▢ 형사보상금 예산안 편성규모 재검토 필요

형사보상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104]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무죄 판결 여부 등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정확한 연간 지급 규모 산출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위 법률 제21조의2[105]에 따라 검찰청이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적' 지출에 해당하고, 기한 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특성도 있음.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47조제1항[106] 단서는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등은 예외적으로 예산 이용(移用)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도 매년 예산총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보상금' 등 항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

10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따른 구치(拘置)와 같은 법 제473조부터 제4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속은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

10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보상금 지급기한 등)** ①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검찰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06)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타 비목으로부터 자체 이용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107]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청은 형사보상금 부족분 발생 시 자체적으로 소속기관 인건비 등으로부터 매년 예산을 이·전용[108]하여 집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형사보상금 지급분 부족으로 과다 이·전용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그럼에도 법무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20억원(4.8%)만 증액하여 440억원 규모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그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형사보상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2026년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연 도 | 예산액 (A) | 이·전용 등 | 예산현액 (B) | 집행액 (C) | 집행률 (C/A) | 집행률 (C/B) | 불용액 |
|---|---|---|---|---|---|---|---|
| 2022 | 40,000 | 2,323 | 42,323 | 42,323 | 105.8 | 100.0 | - |
| 2023 | 40,000 | 16,852 | 56,852 | 56,851 | 142.1 | 100.0 | - |
| 2024 | 40,000 | 37,225 | 77,225 | 77,219 | 193.0 | 100.0 | 6 |
| 2025.7. | 42,000 | 33,500 | 75,500 | 71,461 | 170.1 | 94.7 | - |
| 2026(안) | 44,000 | - | | | | | |

자료: 법무부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2024년에는 '제주 4·3 사건'에 대한 재심 등과 관련하여 형사보상금 지급 소요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당초 편성된 예산액 400억원만으로는 충당이 어려웠음. 그로 인해 법무부와 검찰청은

107)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4. 1. p.231
108) 자체 이용권 위임범위에 해당하는 경비는 자체 전용도 가능함(위 지침 p.234).

검찰국 소관 거의 모든 사업으로부터 당초 예산액 대비 93.1%에 달하는 총 372억 2,500만원을 이·전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음.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법무부는 2025년도 형사보상금을 전년 대비 20억원만 증액하여 420억원으로 편성하였는바, 그에 따라 2025년에도 5월 말경부터 이미 형사보상금에 부족분이 발생하여 '검찰청 운영 인건비(7002-101)' 및 '검찰청 시설운영(1333-300)' 등으로부터 335억원을 이·전용하였음.

'제주 4·3 사건'에 대한 재심 등은 사건 발생 시점 자체가 매우 오래전이고 보상 대상자 수가 많아 보상액이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당사자 신청과 재판 등 절차를 거쳐 최종 보상 여부가 결정되므로 그 지급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다 이·전용 문제는 과거에도 유사 지적이 수차례 제기되었던 사안인바,[109] 법무부는 형사보상금 부족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에서도 문제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하여 매년 이·전용 등 규모가 오히려 급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2026년도 예산안에 재차 전년 대비 20억원만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109) 특히 2023년에는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본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제기한 바 있음.

## (10)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총액, 7018-202)

### ▢ 예산안 개요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총액)’는 검찰청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중 총액인건비제도를 적용받는 항목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600만원(0.1%) 증액된 315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음.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총액) 예산안(비목별)>**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 | 2025 | | 2026 | | |
|---|---|---|---|---|---|---|
| | 결산 | 본예산 | 추경예산 (A) |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총액) | 29,885 | 31,498 | 31,498 | **31,524** | 26 | 0.1 |
| ·일용임금 (110-04) | 206 | 510 | 510 | **510** | - | - |
| ·특근매식비 (210-05) | 92 | 92 | 92 | **118** | 26 | 28.3 |
| ·일숙직비 (210-06) | 2,825 | 3,043 | 3,043 | **3,043** | - | - |
| ·복리후생비 (210-12) | 7,822 | 8,361 | 8,361 | **8,361** | - | - |
| ·기타운영비 (210-16) | 3,335 | 3,437 | 3,437 | **3,438** | 1 | 0.0 |
| ·직책수행경비 (250-02) | 14,961 | 15,572 | 15,572 | **15,572** | - | - |
| ·특정업무경비 (250-03) | 14 | 13 | 13 | **15** | 2 | 15.4 |
| ·고용부담금 (320-09) | 630 | 471 | 471 | **471** | - | - |

### ▢ 검찰청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 예산안 일부 감액조정 필요

「변호사법」 제21조의2[110]에 따르면, 변호사가 단독으로 개업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를 받아야 함. 이를 위해 법무부 및 검찰청에서도 매년 실무수습 변호사를 일정 수 채용하여 법률사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이들 실무수습 변호사는 각 부서 및 기관에서 소송지원, 법률자문, 소관 법령해석 등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무부 전체적으로 예산이 매년 13억원 정도 편성되고 있음. 이번 2026년도 예산안에도 검찰청 소관으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일용임금(110-04) 5억원, 고용부담금(320-09) 5,200만원 등 총 5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검찰청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예산은 최근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일부 감액조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

110) **「변호사법」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하 “법률사무종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제6호에 한정한다)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1명 이상이 재직하는 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에 한정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3.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5. 국제기구, 국제법인, 국제기관 또는 국제단체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
6. 대한변호사협회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024년도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실적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법무부는 당초 실무수습 변호사 총 86명을 채용할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62명만 채용하는 데 그쳤음. 이는 검찰청 등 채용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부서·기관별 세부 실적에 따르면, 법무실을 비롯한 각 부서는 계획을 대부분 달성하였으나, 검찰청은 당초 35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실제로는 19명만 채용하여 계획 대비 절반 수준의 실적을 보였음. 2025년 9월 기준으로는 채용인원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음.

**<부서 · 기관별 실무수습 변호사 최근 4년간 채용실적 및 2026년 계획>**

(단위: 명)

| 부서 · 기관 | 2022 | | 2023 | | 2024 | | 2025. 9. | | 2026 |
|---|---|---|---|---|---|---|---|---|---|
|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계획 |
| 합 계 | 72 | 57 | 74 | 60 | 86 | 62 | 71 | 60 | 80 |
| 법무실 | 31 | 29 | 31 | 30 | 32 | 32 | 26 | 26 | 32 |
| 인권국 | 5 | 4 | 5 | 4 | 4 | 2 | 1 | 1 | 4 |
|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 2 | 3 | 3 | 5 | 5 | 2 | 2 | 2 | 2 |
| **검찰청** | **29** | **18** | **29** | **18** | **35** | **19** | **35** | **25** | **35** |
| 검찰국 | 3 | 3 | 3 | 3 | 3 | 3 | 3 | 3 | 3 |
| 국제법무국 | – | – | – | – | 3 | 3 | 3 | 3 | 3 |
| 교정본부 | – | – | 2 | – | 3 | 1 | – | – | – |
| 범죄예방정책국 | 2 | – | 1 | – | 1 | – | 1 | – | 1 |

자료: 법무부

검찰청의 채용실적 부진은 2023년 및 2022년에도 마찬가지였는바, 이는 민간 법무법인 등에서 이루어지는 실무수습에 비해 근무여건과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할 뿐만 아니라, 국가송무업무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법무실과 달리 검찰청 실무수습에서는 변호사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험 쌓기가 쉽지 않다는 등 이유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적극 지원하지 않음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음.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정원 감소에 따른 국가소송 대응 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소송업무 등 피해자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지식을 갖춘 실무수습 변호사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점, 2025년에는 실무수습 변호사에 대한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을 통하여 채용인원이 상승한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이 매년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 계획 및 관련 예산을 과다 설정하고 있고, 그로 인해 관련 예산의 이·전용 및 불용 등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바, 검찰청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예산은 일부 감액조정이 필요하다고 봄.

## 바. 국제법무국

### (1) 국제법무국 총괄

#### ▢ 예산안 개요

‘국제법무국’은 세계적 수준의 국제법무업무를 수행하고, 정부부처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도록 법무부 법무실 내 국제법무과, 국제분쟁대응과를 통합하여 2023년 8월 8일 출범하였음.

‘국제법무국’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국제법무활동(1400) 프로그램을 신규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나, 2026년도 예산부터는 법무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법무실’의 법무활동(1000)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편성함.

2026년도 국제법무국 기본경비 및 주요사업비 예산안은 2025년도 대비 8,500만원(1.3%) 증액된 66억 8,900만원임.

**<국제법무국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 | | 2026 | | |
|---|---|---|---|---|---|
| | 본예산 | 추경예산 (A) |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합 계 | 6,604 | 6,604 | **6,689** | 85 | 1.3 |
| 주요사업비 | 6,117 | 6,117 | **6,191** | 75 | 1.2 |
| 기본경비 | 487 | 487 | **498** | 11 | 2.3 |

### ▢ 법무활동 프로그램으로의 통합에 신중할 필요

2024년 및 2025년의 「국제법무활동(1400)」은 '국제 중재 및 소송, 국제법제 협력, 통상 분쟁 대응 등' 고도의 국제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특수성을 요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었으며, '국가송무수행, 국가배상금 지급, 법조인력 양성, 법무 검토 등'의 활동을 하는 「법무활동(1000)」과는 다른 국제법무 분야의 고유한 정책목표를 위해 신규편성되었음.

그러나, 법무부는 2026년 예산부터 실제 운영 과정에서 국내 법무활동과 국제 법무활동이 정책 목표와 기능 면에서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성과관리 지표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통합 운영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법무활동과 국제법무활동을 통합·편성하였음.

다만, 지난 2년간 신설 조직의 예산을 별도 프로그램으로 편성·운영한 것은 국회가 새로운 조직의 역할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명확히 파악하려던 취지도 있었는바 국제법무활동을 법무활동으로 통합하는 것은 국제법무활동에 대한 책임성 약화의 측면과 이전 국회에서 예산 심의·확정한 별도 프로그램을 통한 사업추진 취지와 부합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첫째, '프로그램'은 「국가재정법」 상 '장・관・항・세항・목' 중 '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111]되는데, 「국가재정법」 제46조[112]에서 예산 전용집

111) 2008년 예산 및 기금편성지침 p.176

112)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행은 '항'의 하위단위인 단위사업(세항) 간 허용하고 있고, 프로그램(항) 사이의 예산의 이용(移用)집행은 「국가재정법」 제47조[113]에서 특정한 경우 '국회의 의결'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구분하고 있음. 「국가재정법」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책임성·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관·항 상호 간 이용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취지를 고려할 때, 프로그램 사업의 통합편성은 그 취지와 목적이 명확할 필요가 있음.

---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을 한 때에는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13)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자체적으로 이용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용의 승인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용 또는 이체한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 또는 이체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이용 또는 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8년 예산 및 기금편성지침〉

**<참고 2>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른 코드 설정**

□ 기존의 "(회계)-장-관-**항**-세항-세세항" 체계를 새로운 "분야-부문- **프로그램**-단위사업-(회계)-세부사업" 체계로 전환

○ **모든 회계·기금이**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코드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에서 **공통 사용**

□ **프로그램간, 단위사업, 세부사업간 코드번호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별 사업등록 번호를 부여**

둘째, 「2026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상 예산 성과를 파악하는 '성과관리 프로그램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예산 프로그램'과 일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이 통합·확정될 경우 「국가재정법」 제85조의6[114]에 따른 성과관리보고서 작성의무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국제법무활동에 대한 성과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음.

〈「2026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의 성과관리 프로그램 선정 방법〉

**2.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 선정**

◇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연계성, 포괄성, 동질성, 책임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구성

**(1) 성과관리 프로그램의 구성 원칙**

□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연계성, 포괄성, 동질성, 책임성 기준에 부합하도록 선정

**(2) 성과관리대상 프로그램 선정**

□ **(성과관리 대상) 성과관리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예산 프로그램과 일치**하도록 설정

□ (예산 소관과 사업 추진주체가 이원화된 경우)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가 프로그램을 성과계획 목표체계에 포함하여 설정

따라서 법무부는 2027년 예산안 편성 시 '국제법무활동'과 '법무활동'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

11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생 략)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 (2)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 지원(1032-300)

#### ▢ 예산안 개요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지원(1032-300)은 정부부처 등이 당사자인 주요 국제소송 법률지원 기능 강화 및 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 대상 범위 확대 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600만원(1.2%) 감액된 5억 1,000만원임.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 결산 | 2025년 본예산(A) | 2026년 예산안(B) | 증감 (B-A) | (B-A)/A |
|---|---|---|---|---|---|
|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지원 | 360 | 516 | **510** | △6 | △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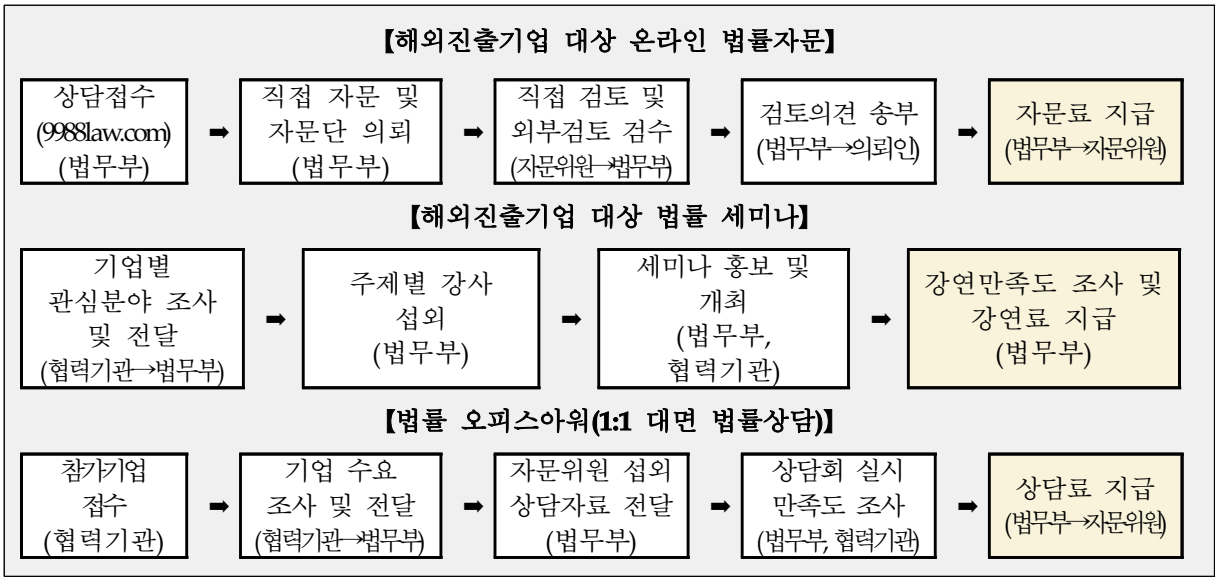
#### ▢ 해외진출기업 법률자문을 하나의 세부사업에 통합하여 지원할 필요

내역사업인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은 해외진출기업에 대하여 법률지원 강의를 하고, 온라인 법률지원, 외국정부와의 MOU 등을 체결하는 사업임. 법무부는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6,400만원 감액한 2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2024년 2억 200만원과 비교할 때 7,100만원 증액된 것인데, 2024년에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대상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임.

2024. 6. 3. 경제관계장관회의('24. 6. 3.)에서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115]에 따라 법무부는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 졸업 후 지원 절벽을 겪는 중견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방안을 검토한바 있음.

그에 따라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2024. 7. 1.)하여 중견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2025년 법률자문 상담을 2024년 40개 기업에서 2025년 60개 기업으로 확대하며,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온라인 법률지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해외진출기업 대상 법률자문, 세미나 등 진행과정>**




자료: 법무부

115) **(법률 자문)**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지원대상을 초기 중견기업(3년)*까지 확대하고 수출바우처(산업·중기부)와 연계강화
* (현행) 중소기업만 대상 → (개선) 중소기업 + 초기 중견기업(졸업 후 3년 이내)

그런데, 법무부는 이미 타 세부사업인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1431-301)” 사업을 통하여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는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법무 분야 전문가(213명)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임.

자문위원단의 법률자문 진행을 위한 예산으로 자문료 7,100만원[일반자문(30만원)×170건 + 전문자문(100만원)×20건]이 편성되어 있는데, 법무부에 따르면 이는 온라인 법률자문만을 위해 편성된 예산임.

**<각 세부사업별 해외진출기업 대상 법률지원 사업 편성내역 비교>**

|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지원(1032-300) |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1032-301) |
|---|---|
| o 일반수용비(210-01) : 270,000천원<br>가.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강의 등 개최 (78,160천원)<br>• 강사료 36만원×6회=2,160천원<br>• **법률자문 상담료 등 1,000천원×72회= 72,000천원**<br>• 동시통역비용 등 2,000천원×2회=4,000천원<br>나.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책자 등 발간 (39,200천원)<br>다. 해외진출기업(중견기업 등) 온라인 법률지원 (89,000천원)<br>• **일반자문료 80건×300천원+50건×500천원 = 49,000천원**<br>• **전문자문료 1,000천원×40건 = 40,000천원**<br>o 임차료(210-07) : 6,000천원<br>• 강연장 대관료 2건×3,000천원 = 6,000천원<br>o 국외업무여비(220-02) : 49,000천원<br>가.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현지 설명회 참석 (23,440천원)<br>• 2,930천원×2명×4개국=24,000천원<br>나.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외국정부와의 법무협력 강화(25,635천원)<br>• 2,136천원×6명×2개국=25,635천원<br>o 사업추진비(240-01) : 12,000천원<br>가. 해외진출기업 강의 지원(4,800천원)<br>• 400,000원×12회=4,800천원<br>나. 국외업무 지원경비 (7,020천원)<br>• $5,400×1회=7,452천원 | o 일반수용비(210-01) : 86,600천원<br>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 (81,000천원)<br>• **자문료 : 374천원×190회=71,000천원**<br>• 자료발간 : 10,000천원×1회=10,000천원<br>o 사업추진비(240-01) : 1,000천원<br>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간담회 (1,000천원)<br>• 1,000천원x1회=1,000천원 |

자료: 법무부 제공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따라서, 현재 국제법무국에서 수행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은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지원(1032-300)” 세부사업에서 수행중인 1:1 대면 법률자문과,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1032-301)” 세부사업에서 수행중인 온라인 법률자문으로 이원화하여 추진중인바, 전자의 소관 부서는 국제법무지원과이고 후자는 국제법무정책과임.

해외진출기업 대상 법률자문은 사업 수행방식에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목적·취지·성과목표 등이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으로 보임. 같은 사업을 수행 주체와 세부사업 항목만을 구분하여 수행하는 것은 사업 수행과정의 비효율성과 예산의 중복 편성·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사업성과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 규정」이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국제법무지원과 산하에 설치하도록 규정[116]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지원(1431-300)” 사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법무부 또한 해외진출기업 법률자문 사업은 실제로 하나의 부서(국제법무지원과)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국 신설로 인한 조직 개편과정에서

116)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중견기업 및 공기업의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분쟁과 지방자치단체·경제자유구역 등의 외자유치 관련 분쟁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국제법무국 국제법무지원과 산하에 둔다.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 이관이 병행되지 못하여 예산이 두 개의 세부사업에 나뉘어 편성되었고, 2026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정부안 협의에서 누락되어 그 이관이 지연되었다는 입장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기획재정부와 조속히 협의하여 국제법무지원과 소관 세부사업(정부 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지원)으로 통합 편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특히, 2025년도 예산검토 과정에서도 이와 동일한 지적이 있었으나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통합편성이 지연되고 있는바, 기재부와 협의하여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1032-301)” 세부사업에 편성된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법률자문 예산 8,660만원에 대한 신속한 이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3)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1032-301)

#### ▢ 예산안 개요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1032-301)은 국제거래규범 성안·도입, 해외 법무 요인 등과의 법무분야 국제협력, 기업·청년 해외진출지원, FTA, BIT[117] 등 통상·투자 협정 관련 법률지원,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중앙당국으로서[118] 아동반환을 위한 행정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800만원(1.1%) 증액된 7억 4,300만원임.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 결산 | 2025년 예산(A) | 2026년 예산안(B) | 증감 (B-A) | (B-A)/A |
|---|---|---|---|---|---|
|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 671 | 734 | **742** | 8 | 1.1 |

117)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국가간 협정
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 투자보장협정) : 외국인투자의 보호를 위하여 자본 유입국과 투자국 간에 체결된 협정

118)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협약의 적용을 받는 1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중앙당국”이란 협약 제6조에 따라 지정되어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각 체약국의 국가기관을 말한다.
**제4조(중앙당국의 지정)**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 ▢ 유사 성격의 예산 통합 및 정비 노력 필요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의 내역사업인 “국제거래 규범 성안·도입” 사업에서는 UNCITRAL 등 국제회의에 정부대표단으로 참석하는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 회의체인 ‘국제거래법 연구단’ 운영사업을,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에서는 법률시장 개방 및 홍보사업을, “통상협상 법률지원” 사업에서는 ‘국제법무자문위원회’ 운영사업을, “공무직 보수”로 국제법 전문위원을 각각 운영하고 있음.

법무부는 4개의 내역사업에 국제법 연구 및 홍보 관련 예산을 운영하고 있음. 특히, 국제거래법연구단, 국제거래법학회, 국제법무자문위원회, 국제법 자문위원에 대한 운영 및 활동경비를 각각 편성하고 있으며, 2026년 예산에는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 및 활동경비로 1,234만원, 국제거래법학회 활동경비로 160만원, 국제법무자문위원회 운영비로 641만원, 국제법 전문위원 보수로 1억 2,76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음.

〈 국제법 연구 등 지원 사업 편성내역 〉

| 국제거래 규범 성안 · 도입<br>(국제거래법 연구단 운영) |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br>(법률시장 개방 및 홍보) |
|---|---|
| o 일반수용비(210-01) : 26,447천원<br>**나.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 (9,347천원)**<br>• 회의 등 운영경비=9,347천원<br>o 사업추진비(240-01) : 4,700천원<br>**가. 국제거래법연구단 활동경비 (3,000천원)**<br>• 간담회 500천원×1회=500천원<br>• 관계기관 업무협의 500천원×1회=500천원<br>• 대외교섭비 2,000천원×1회=2,000천원<br>**나. 국제거래법학회 활동경비 (1,600천원)**<br>o 정책연구비(260-02) : 10,000천원<br>가. 국제거래규범 관련 연구용역 (1,000천원)<br>• 10,000천원×1회=10,000천원 | o 일반수용비(210-01) : 81,225천원<br>라. 법률서비스 선진화 및 홍보 등 (14,000천원)<br>**• 법률시장 개방 전문가 사례금 = 500천원**<br>• 법률시장 리서치 비용 = 2,800천원<br>o 국내업무여비(220-01) : 4,004천원<br>가.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홍보 (4,004천원)<br>• 167천원×2명×12회=4,004천원<br>o 국외업무여비(220-02) : 49,000천원<br>가.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홍보 (14,691천원)<br>• 4,822천원×2명×1회=9,644천원<br>• 2,524천원×2명×1회=5,047천원 |
| **통상협상 법률지원<br>(국제법무자문위원회 운영)** | **공무직 보수<br>(국제법 전문위원 보수)** |
| o 일반수용비(210-01) : 30,430천원<br>**가. 국제법무자문위원회 운영 (6,418천원)**<br>• 회의 164만원×1회=1,640천원<br>• 자료발간 1,778천원×1회=1,778천원<br>• 자료구입 1,000천원×3회=3,000천원<br>o 사업추진비(240-01) : 3,297천원<br>**나. 국제법무자문 간담회 (2,000천원)**<br>• 1,000천원×2회=2,000천원 | o 상용임금(110-03) : 178,917천원<br>**나. 국제법 전문위원(127,627천원)**<br>• 63,813천원×2회=127,627천원 |

자료: 법무부 제공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국제거래법연구단'은 UNCITRAL 등 국제회의에 정부대표단으로 참석하는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 회의체로 제규범 세부 쟁점 분석 및 회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우리 정부대표단의 협상역량 강화방안을 논의함. '국제법무자문위원회'는 법무자문위원회의 특별분과위원회로,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법률 제정 등 국제법무에 관한 정책자문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국제거래법학회’는 국제거래법의 기술적 연구와 연구자 교류를 위해 설립된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가 주무관청으로서 관리·감독하고 있어 별도의 활동경비를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국제법무정책과에서는 국제법 전문위원 2명을 공무직으로 채용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사업과 ‘국제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사업은 구성원이 유사하고 사업 목적 또한 국제협약 또는 국제법무에 대한 분석과 자문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동일한 것으로 보임. 또한, 국제법 자문을 위해 국제법자문위원 2명을 공무직으로 채용하며, 비영리법인인 ‘국제거래법학회’의 활동비를 별도로 편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 자문을 위한 예산을 여러 사업에 중복편성하는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동일 목적 예산을 유사함에도 분산 편성하는 경우 사업 추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내역사업별 성과목표가 모호해져 전체 사업에 대한 객관적 성과 평가가 어렵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재정사업의 효과성 검증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함.

따라서, 법무부는 기능이 중복되는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사업과 ‘국제법무자문위원회’ 운영사업을 하나의 통합된 자문·연구 체계로 일원화하고, 국제법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직 전문위원 채용 예산 등 국제법 자문 관련 예산을 통합 사업 내의 세부 항목으로 편입하여 예산 항목 간의 분절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4)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ODA, 1032-302)

▢ 예산안 개요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은 ODA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법제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하고 우리의 법제 모델을 수출·전수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에 친숙한 해외 투자환경 및 현지 진출기반을 조성하는 등의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600만원(00.0%) 증액된 2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 | 2025 | | 2026 | | |
|---|---|---|---|---|---|---|
| | 결산 | 본예산 | 추경예산 (A) |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ODA) | 125 | 150 | 150 | 216 | 66 | 44 |

## ▢ ODA 대상 국가 편중 문제 검토 필요

법무부의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ODA)'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법제정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다만, 최근 사업 추진 경과 및 2026년 예산안 편성의 산출 근거상 특정 국가(캄보디아)에 대한 지원이 장기적·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법무부는 2019년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ODA) 사업 시작 이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특정국가(캄보디아)를 대상으로 법제정비를 지원하고 있음.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 사업추진 경위 중 캄보디아 지원 내역>**

**2) 사업개요 -** ② 추진경위

- **'20. 12. '캄보디아 중재·조정법제 개선 방안' 연구용역 실시, 지난 5개년 '법제정비지원 사업 결과 종합 자료집' 발간**
- **'23. 4. 캄보디아 고위급 공무원 초청하여 조정법제 개선방안 연구결과 전달 및 우리나라 조정 실무 소개**
- **'23. 12. 캄보디아 정부 주도의 분쟁해결기구(약칭 'NADR') 설립 지원을 위한 한국-캄보디아 법무부 공동 세미나 개최**
- **'24. 9. 캄보디아 조정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3월)을 토대로 NADR 소속 조정인 및 사무국원을 초청하여 단기 집중 교육 및 관련기관 견학 실시하고, 법무부 고위급을 초청하여 캄보디아의 조정기본법 제정을 위한 양국 공동연구 실시 합의 및 후속 사업 논의정비 지원 사업 자체평가**
- **'24. 11. NADR의 효과적 운영방안을 주제로 현지 세미나 실시**

## <2021년~2025년 연도별 세미나 개최 내역>

| 연도 | 일자 | 장소 | 참석자 | 주요 안건 및 내용 |
|---|---|---|---|---|
| 2021 | 12. 20. | [초청] 한국 (서울) | (대한민국) 법무부 3명, 교수 1명, 외국변호사 1명, UNCITRAL RCAP **(캄보디아)** 법무부차관 등 16명 | 캄보디아 조정 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물을 전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싱가포르·베트남 조정기관들의 동향 및 실무 노하우 공유 |
| 2022 | 12. 13. | [초청] 한국 (서울) | (대한민국) 법무부 2명, 한국조정학회장, 대한상사중재원장,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장 **(캄보디아)** 법무부차관 등 법무부 공무원 12명 | 싱가포르조정협약 도입을 비롯한 아태지역 국가들의 조정제도 발전방안 논의 |
| 2023 | 4. 25.~ 26. | [초청] 한국 (서울) | (대한민국) 법무부 3명, 대한상사중재원 사무총장, 교수 1명, 변호사 1명 **(캄보디아)** 차관 등 법무부 공무원 12명 | 한국의 법원연계형 조정제도 설명 및 관련 실무 노하우 공유, 국제상사조정 도입 필요성 등 논의 |
| | 12. 4.~ 8. | [현지] 캄보디아 (프놈펜) | (대한민국) 법무부 2명, 한국조정학회장, 교수 1명, **(캄보디아)** 차관 등 법무부 공무원 15명 | 양국 조정제도 설명을 통한 비교 및 분석, 캄보디아 신설 대체적 분쟁해결기구인 'NADR' 운영 방안 논의 등 |
| 2024 | 9. 24.~ 28. | [초청] 한국 (서울) | (대한민국) 법무부 10명, 교수 2명, 대한상사중재원 사무총장, 서울중앙지법 민사조정센터장 및 상임조정위원, 상임조정법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및 조사관, 심사관 등 **(캄보디아)** 분쟁해결기구(NADR) 소속 조정인 및 사무국원 15명 | 한국의 선진 조정법제 소개, 단기 집중 교육을 통한 캄보디아 조정인 역량 강화, 한국의 각종 조정 관련 시설 소개 및 경험 공유 등 |
| | 11. 28. | [현지] 캄보디아 (프놈펜) | (대한민국) 법무부 2명, 교수 1명 **(캄보디아)** 차관 등 법무부 공무원, NADR 조정인 등 | 캄보디아 대체적 분쟁해결기구(NADR)의 효과적 운영 방안을 위한 제언, 캄보디아 조정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 등 |
| 2025 | 7. 22. ~ 25. | [초청] 한국 (서울) | (대한민국) 법무부 7명, 교수 4명 **(캄보디아)** 차관 등 법무부 공무원, 고등법원장, NADR 조정인 등 10명 | 캄보디아 조정기본법 제정 및 상사법원 설립 지원 관련 세미나 및 조정기본법 공동연구진 대면회의, 법원행정처 및 서울회생법원 견학 등 |

자료: 법무부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 사업은 특정 국가(캄보디아) 및 특정 분야(조정·중재 법제)에 대한 장기적·집중적 지원이 두드러짐.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적 지원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경우, 이는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특정 국가와의 외교적·경제적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편중된 지원[119]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또한, 본 사업의 성과지표인 ‘국제소송지원 및 국제투자분쟁 대응’은 그 산정 방식이 ‘관련 공문, 보고서 등’ 단순 행정 산출물의 건수에 기반하고 있어, 법제정비지원 ODA 사업의 직접적 성과인 대상국의 법령 제·개정 건수나 법률 인프라 개선도와는 거리가 있음. 즉, ‘개발도상국의 법치주의 확립 및 우리 기업에 친숙한 환경 조성′이라는 최종 ODA 목표 달성 여부 판정에 있어 협력 대상국의 법령 제·개정이라는 객관적인 중간 성과지표를 배제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분석이 어려움.

따라서, 법무부는 ODA 사업의 편중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대상 국가 및 분야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국제소송지원 및 국제투자분쟁 대응′ 지표 외에 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 담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119) 법무부는 현행 사업이 우리기업에 친숙한 조정법제를 캄보디아에 법제화하여 기업의 해외 진출 편의를 돕고, 분쟁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추후 집행에 있어 수원국에 대한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임.

## 사. 교정본부

### (1) 교도소 행정지원(1531-300)

#### ▢ 예산안 개요

‘교도소행정지원’은 교정시설 운영을 위한 공무직 인건비, 교정기관 신축에 따른 이전 등을 지원하고, 민영교도소 및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억 700만원(1.4%) 증액된 522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교도소행정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 | 2025 | | 2026 | | |
|---|---|---|---|---|---|---|
| | 결산 | 본예산 | 추경예산 (A) |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교도소행정지원 | 48,089 | 51,516 | 51,516 | **52,223** | 707 | 1.4 |
| ·교정기관 행정지원 | 7,301 | 9,620 | 9,620 | **7,382** | -2,238 | -23.3 |
| ·공무직 처우개선 | 27,953 | 29,533 | 29,533 | **32,182** | 2,649 | 9.0 |
| ·민간이전 사업 | 12,835 | 12,363 | 12,363 | **12,659** | 296 | 2.4 |

#### ▢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운영경비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

“민영교도소”는 교도소 과밀화, 국가의 재정부담 문제에 대응하여 교

도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의 처우향상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민영교도소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120] 현재 1개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에는 398명이 수용되어 있음.[121]

**〈「소망교도소」 운영현황〉**

□ **설립일자:** 2010. 12. 1.
□ **설립근거**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설립목적**
○ 교도소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의 처우 향상과 사회 복귀를 촉진(민영교도소법 제1조)
○ 수용자, 출소자 나아가 그 가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의 화해, 피해자 및 사회와의 화해, 자신의 내면과의 화해를 통하여 진정한 교화에 이르게 함(재단법인 아가페 정관 제1조)
□ **소재지**: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아가페길 140
□ **수용인원:** 정원 400명, 현원 398명 (수용률 99.5%) (2025.10.1. 기준)
□ **주요 기능 및 역할**
○ 주요 기능: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업무 수행
○ 수용 대상: 일반경비처우급(S3급) 이상, 범수 2범 이하, 형기 7년 이하 수형자 중 잔여형기 1년 이상 수용자로서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 남자(조직폭력, 마약류 사범 등 제외)
□ **운영예산:** 법정민간대행사업비 100억 1,800만원(2025년 기준)
□ **법무부와 소망교도소 간 위탁계약 경과**
○ 2003. 2. 최초계약: 수용인원(300명), 계약기간(12년간 위탁, ~2015년)
○ 2014. 1. 재계약: 수용인원변경(300 → 350명)
○ 2014. 12. 재계약: 계약기간갱신(계약종료에 따라 20년 갱신, ~2035년)
○ 2017. 1. 재계약: 수용인원변경(350 → 400명)

자료: 법무부

120)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도소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收容者)의 처우 향상과 사회 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21) 2025. 10. 1. 기준

법무부는 민영교도소법 및 동법 시행규칙[122]에 근거하여 민영교도소와 체결한 「민영교도소 설치 운영 등 교정업무 위탁계약서」(이하 "위탁계약서")[123]에 그 운영경비 산출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일반회계에 속하는 해당 연도 교정행정 예산의 총액(A)에서 해당 예상에 계상된 수용인원(B)을 나눈 금액인 "수용자 1인당 수용경비"(C)에 민영교도소 수용정원(D)과 보조율(E)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함.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지원액 산정방식>**

| 지원액 = 수용자 1인당 수용경비(C)[124] × 민영교도소 수용정원(D) × 보조율(E) |
|---|

2026년도 예산안에 교도소 행정지원 사업 중 민영교도소 운영경비는 법정민간대행사업(320-08)으로 전년대비 2억 2,200만원 증액된 102억

12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운영 경비)** ①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하는 교정법인에 대하여 매년 그 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지급 경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 투자한 고정자산의 가액(價額)
2. 민영교도소등의 운영 경비
3. 국가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드는 경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운영 경비)** ① 법 제23조에 따라 교정법인에 지급할 경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일반회계에 속하는 해당 연도 교정행정 예산의 총액과 그 예산에 계상된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1인당 수용경비를 산정하고, 위탁수용 대상자의 인원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교도작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은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3) **「민영교도소 설치·운영 등 교정업무 위탁계약서」 제64조(운영경비)** ① "갑"은 매년 "을"에게 민영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소정의 경비를 지급하며, 이 운영경비는 「국가재정법」상 일반회계에 속하는 교도행정예산에서 지급한다(이하 생략).
**제65조(예산반영 방법)** ①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되는 일반운영경비는 「일반회계 교도행정예산」에서 당해 예산에 계상된 총수용인원으로 산출되는 수용자 1인당 수용경비에 민영교도소 수용정원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제66조(운영경비 지급)** ① "갑"은 제6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확정된 예산의 90%까지 "을"에게 지급할 수 있다(이하 생략).

124) 교정행정 일반회계 예산총액(A,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제외 잔액) ÷ 예산편성기준 수용인원(B)

4,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교정행정 일반회계 총예산(A,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제외) 1조 7,350억원에서 예산 편성기준 상의 국영교도소 총 수용인원(B)인 61,000명을 나눈 1인당 수용경비(C)에 민영교도소 수용정원(D) 400명과 보조율(E) 90%를 곱한 금액임.

**<2025년 · 2026년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예산 산출 근거>**

| 2025년도 예산 | 2026년도 예산안 |
|---|---|
| 1,655,753,000,000원 / 59,500명<br>× 400명 × 90%<br>**= 100억 1,800만원** | 1,735,060,000,000원 / 61,000명<br>× 400명 ×90%<br>**= 102억 4,000만원** |

자료: 법무부

해당 지원액의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위 "수용자 1인당 수용경비"(C) 산출 과정에서 반영하는 해당 연도 교정행정 예산의 총액(A)에 민영교도소의 수용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금액, 예컨대 법무부 교정본부의 인건비 및 경상경비,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 직장보육시설 운영 사업, 국외업무여비 등[125]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126]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18년부터 소망교도소 운영과 무관한 금액을 해

125) 소망교도소는 2010년에 개소한 교도소로서 노후하지 않고, 수용정원이 400명으로 일정하며, 남성만을 수용하고 있으므로 수용정원 증대 목적의 노후 국영 교정시설 리모델링 비용이나 여성수용자 위생용품 등은 민영교도소 운영과 관련성이 낮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교정행정 예산의 총액(A)에 포함되어 수용자 1인당 수용경비(C)에 반영됨.

12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검토보고(Ⅰ)", 2019. pp.68~70., 국회 예산정책처,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2016. 10., pp.50-54.

당 연도 교정행정 예산의 총액(A)에서 제외하여 산출한 수용자 1인당 수용경비(C)를 바탕으로 민영교도소 운영경비를 산정·지원해 왔음.

그러나 이에 대하여 법률 및 위탁계약서 상 근거가 없음에도 민영교도소 운영과 무관한 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하고 지급하는 것은 민법상 부당한 계약 변경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어 옴.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지원액 산정방식 관련 법령 및 계약서 규정>**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운영 경비)** ①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하는 교정법인에 대하여 매년 그 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지급 경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 투자한 고정자산의 가액(價額)
2. 민영교도소등의 운영 경비
3. 국가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드는 경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운영 경비)** 교정법인에 지급할 경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일반회계에 속하는 해당 연도 교정행정 예산의 총액과 그 예산에 계상된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1인당 수용경비를 산정하고, 위탁수용 대상자의 인원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민영교도소 설치·운영 등 교정업무 위탁계약서」 제65조(예산반영 방법)** 예산에 반영되는 일반운영경비는 「일반회계 교도행정예산」에서 당해 예산에 계상된 총수용인원으로 산출되는 수용자 1인당 수용경비에 민영교도소 수용정원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민영교도소법은 민영교도소에 연간 지급할 경비의 기준은 ① 투자한 고정자산의 가액(價額), ② 민영교도소등의 운영 경비, ③ 국가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드는 경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일반회계에 속하는 “해당 연도 교정행정 예산의 총액”과 그 예산에 계상된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1인당 수용경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계

약서는 “일반회계 교도행정예산”에서 당해 예산에 계상된 총수용인원으로 산출되는 수용자 1인당 수용경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시행규칙의 “해당 연도 교정행정 예산의 총액”, 위탁계약서 상 “일반회계 교도행정예산” 이라는 용어는 그 구체적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민영교도소법이 운영경비의 지급기준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은 이를 규정하지 아니하여 시행규칙 및 위탁계약서 해석과 관련한 이견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법무부는 민영교도소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에 운영경비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민영교도소법 시행규칙 및 위탁계약서 개정을 추진하여 운영경비 지원 예산의 지급기준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 (2)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1531-304)

### ▢ 예산안 개요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은 대체복무 인원에 대한 급식비, 피복비, 일반수용비 등 대체복무제 운영비를 지원하고, 대체복무 운영을 위한 합숙시설 및 근무장소 등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3억 1,500만원(13.4%) 감액된 149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 | 2025 | | 2026 | | |
|---|---|---|---|---|---|---|
| | 결산 | 본예산 | 추경예산 (A) |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 | 14,777 | 17,241 | 17,241 | **14,926** | △2,315 | △13.4 |
| • 대체복무 운영경비 | 12,063 | 14,772 | 14,772 | **14,745** | △27 | △0.2 |
| • 대체복무 시설개선 | 2,398 | 2,438 | 2,438 | **150** | △2,288 | △93.8 |
| • 대체복무 물품구입 | 316 | 31 | 31 | **31** | 0 | 0.0 |

### ▢ 대체복무 예비군 훈련비 지급을 위한 적정예산 검토 필요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하여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체복무자를 교도소 등에서 36개월간 합숙근무하도록 하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체복무법”)이 2019년 12월 31일 제정되어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음.

이에 동 사업은 대체복무법에 따른 대체복무제도 시행 예산을 편성·집행해온 것인바, 법무부는 2025년 10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54개 기관 중 34개 기관에서 대체복무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대체복무시설 운영기관 현황(2026년 신규 포함)>**

| 연번 | 기관 | 대원 정원 | 예비군 정원 | 연번 | 기관 | 대원 정원 | 예비군 정원 |
|---|---|---|---|---|---|---|---|
| 1 | 목포(교) | 54명 | 6명 | 19 | 전주(교) | 40명 | |
| 2 | 대전(교) | 96명 | 8명 | 20 | 울산(구) | 38명 | |
| 3 | 의정부(교) | 42명 | | 21 | 영월(교) | 48명 | |
| 4 | 군산(교) | 56명 | | 22 | 영월교육센터 | - | |
| 5 | 천안(교) | 78명 | 8명 | 23 | 청주(교) | 51명 | |
| 6 | 부산(교) | 42명 | 6명 | 24 | 춘천(교) | 48명 | 6명 |
| 7 | 대구(구) | 42명 | | 25 | 화성직훈(교) | 72명 | 6명 |
| 8 | 포항(교) | 50명 | 8명 | 26 | 여주(교) | 78명 | 6명 |
| 9 | 안동(교) | 48명 | | 27 | 통영(구) | 36명 | |
| 10 | 충주(구) | 42명 | | 28 | 인천(구) | 66명 | 6명 |
| 11 | 서울(구) | 96명 | | 29 | 제주(교) | 30명 | |
| 12 | 원주(교) | 48명 | | 30 | 서울남부(구) | 77명 | 6명 |
| 13 | 진주(교) | 48명 | | 31 | 서울남부(교) | 62명 | 6명 |
| 14 | 순천(교) | 66명 | | 32 | 광주(교) | 43명 | |
| 15 | 경북2(교) | 36명 | | 33 | 서울동부(구) | 44명 | |
| 16 | 경북1(교) | 36명 | | 34 | 수원(구) | 44명 | |
| 17 | 공주(교) | 46명 | | 35 | 대구(교) | 72명 | |
| 18 | 김천소년(교) | 40명 | | | | | |
| ○ 대체복무 운영기관 : (2025) 34개 기관 → (2026) 35개 기관(+1개 기관)<br>○ 대체복무 인원 : (2025) 1,743명 → (2026) 1,815명(+72명)<br>○ 대체복무 예비군 소집예정인원 : (2025) 700명 → (2026) 1,100명(+400명) | | | | | | | |

주: 예비군 정원은 1회 소집 인원임
자료: 법무부

대체복무법에 따르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으로서의 임무수행 또는 훈련을 대신하여 예비군 대체복무를 실시하게 되므로, 소집 해제된 다음 해부터 6년 동안 매년 3박 4일씩 합숙 복무를 수행하게 됨.[127]

**<연도별 대체복무 운영현황>**

| 연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
| 운영기관 수 | 3개 | 13개 | 20개 | 25개 | 31개 | 34개 | 35개 |
| 대체복무 정원 | 106명 | 651명 | 1,054명 | 1,377명 | 1,612명 | 1,743명 | 1,815명 |
| 예비군 인원 | – | – | 11명 | 61명 | 133명 | 668명 | 1,100명 (예상) |

주: 2025년은 10월 기준
자료: 법무부

연도별 대체복무 예비군 운영현황을 보면, 2022년 11명이었던 대체복무 예비군 훈련 인원은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의 증가와 함께 점차 증가하여,

12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예비군대체복무)**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으로서의 임무수행 또는 훈련을 대신하여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이하 "예비군대체복무"라 한다)하도록 소집하며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1.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2.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위한 통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6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장소로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 절차·기간 및 복무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병무청 훈령)」 제37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기간 등)** ① 예비군대체복무 소집기간은 제31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연차가 1년차부터 6년차까지 해당하는 경우 각 연차마다 3박4일로 한다. 이 경우 연차별로 부과되는 소집기간을 해당 연도에 무단불참, 연기 등의 사유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소집기간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부과한다.

2025년 10월 기준 668명이 대체복무 예비군 훈련을 수행하였으며, 법무부에 따르면 2026년 대체복무 예비군인원은 1,1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법무부는 대체복무 예비군 훈련 지원을 위하여 2026년 예산안에 급식비 4,600만원, 귀가여비 1,000만원, 훈련보상비 7,600만원 총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25 · 2026년 대체복무 예비군 훈련 지원 예산 세부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5년 예산 산출내역 | 2026년 예산안 산출내역 |
|---|---|---|
| 대체복무 예비군 훈련 지원 | ○ 급식비(210-04)<br>가. 대체복무 예비군 급식비<br>・700명×13,000원×3일 = 27백만원<br>○ 국내여비(220-01)<br>가. 대체복무 예비군 귀가여비<br>・700명×14,900원= 10백만원<br>○ 손실보상금(310-01)<br>가. 예비군 훈련보상비<br>・700명×27,300원×4일 = 76백만원 | ○ 급식비(210-04)<br>가. 대체복무 예비군 급식비<br>・1,100명×14,000원×3일 = 46백만원<br>○ 국내여비(220-01)<br>가. 대체복무 예비군 귀가여비<br>・700명×14,900원= 10백만원<br>○ 손실보상금(310-01)<br>가. 예비군 훈련보상비<br>・700명×27,300원×4일 = 76백만원 |
| 합계 | 113 | 132 |

자료: 법무부 자료 재구성

그런데, 법무부는 2026년 대체복무 예비군 훈련인원을 1,100명으로 예상하고 있음에도, 예비군 귀가여비 및 훈련보상비는 2025년 예산과 동일하게 700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음.

대체복무 예비군 귀가여비 및 훈련보상비는 예비군법 및 동법 시행

령128)에 따라 지급하는 준 의무지출성 경비로서, 대체복무 예비군 동원 훈련을 위한 적정 예산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28) **「예비군법」 제11조(훈련비 등 지급)**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27조(훈련비 등 지급)** ① 법 제11조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훈련비·교통비 등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지역예비군 중 중대 이상의 부대(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대를 포함한다)와 직장예비군 중 어민예비군 중대 이상의 부대에 대해서는 부대운영을 위한 부대운영비를 지급하고, 그 부대의 장에게는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3)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1532-300)

#### ▢ 예산안 개요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은 수용자의 일상물품, 급식비, 피복비 등 직접비용을 지원하고, 교정시설 공공요금 및 수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19억 9,400만원(4.1%) 증액된 3,023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 | 2025 | | 2026 | | |
|---|---|---|---|---|---|---|
| | 결산 | 본예산 | 추경예산 (A) |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 299,909 | 290,348 | 290,348 | **302,342** | 11,994 | 4.1 |
| • 수용관리 직접경비 | 144,833 | 146,512 | 146,512 | **154,447** | 7,935 | 5.4 |
| • 수용관리 간접경비 | 151,595 | 141,019 | 141,019 | **145,078** | 4,059 | 2.9 |
| • 수용자 호송경비 | 3,470 | 2,806 | 2,806 | **2,806** | 0 | 0.0 |
| • 수용자 사회봉사, 참관 등 경비 | 11 | 11 | 11 | **11** | 0 | 0.0 |

#### ▢ 가석방 활성화 등 수용시설 과밀화 해소 노력 필요

2022년 이후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미결수용자 뿐만 아니라 형 확정 수형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25년 10월 기준 수용률은 126.2%에 달함.

<연도별 수용정원 및 1일 평균 수용인원>

(단위: 명, %)

| 연도 | 수용 정원 | 1일 평균 수용인원 | 수용률 | 수용 내용 | |
|---|---|---|---|---|---|
| | | | | 수형자 | 미결수용자 |
| 2021 | 48,980 | 52,368 | 106.9 | 33,548 | 18,109 |
| 2022 | 48,990 | 51,117 | 104.3 | 32,610 | 17,736 |
| 2023 | 49,922 | 56,577 | 113.3 | 35,007 | 19,957 |
| 2024 | 50,250 | 61,366 | 122.1 | 38,473 | 21,331 |
| 2025.10. | 50,230 | 63,388 | 126.2 | 40,377 | 21,522 |

자료: 법무부

이는 2022년 이후 마약·민생침해 사범 등에 대한 정부의 강력대응 기조에 따라 검찰·법원 단계에서의 사건 처리인원 및 그에 따른 구공판인원이 증가하고, 종국적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 선고를 받는 수형자 수가 증가함에 따른 것임.[129]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수용자의 생활환경 및 교정·재사회화 기능을 저해하고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 악화 등을 초래함.

특히, 법무부는 2026년 예산안에 수용관리를 위하여 급식비·피복비·의료비 등 직접경비 1,544억 4,700만원, 공공요금 등 간접경비 1450억 7,800만원, 호송비 28억 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4년 1일 평균 수용인원 약 61,000명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임.

129) 검찰 기소인원: ('21) 538,576명→('22) 572,086명→('23) 603,496명
구공판인원: ('21) 170,936명→('22) 172,503명→('23) 187,264명
제1심 형사공판사건 1년 이상 유기징역 선고 인원: ('21) 34,312명→('22) 34,206명→('23) 36,915명

〈2025 · 2026년 교정시설 수용관리 예산 세부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5년 예산 산출내역 | 2026년 예산안 산출내역 |
|---|---|---|
| 직접 경비 | ○ 일반수용비(210-01)<br>가. 수용자 일상물품 지급<br>·54개 기관 × 168백만원 = 9,087백만원<br>○ 구호 및 교정비(320-06)<br>가. 급식비<br>·공통급식비:<br>59,500명 × 5,201원 × 365일 = 112,953백만원<br>·급식가산금: 1,249백만원<br>나. 피복비<br>·59,500명 × 126천원 = 7,497백만원<br>다. 의료비<br>·54개 기관 × 291백만원 = 15,726백만원 | ○ 일반수용비(210-01)<br>가. 수용자 일상물품 지급<br>·54개 기관 × 172백만원 = 9,296백만원<br>○ 구호 및 교정비(320-06)<br>가. 급식비<br>·공통급식비:<br>61,000명 × 5,326원 × 365일 = 117,365백만원<br>·급식가산금: 1,249백만원<br>나. 피복비<br>·61,000명 × 126천원 = 7,686백만원<br>다. 의료비<br>·54개 기관 × 326백만원 = 17,602백만원 |
| 합계 | 146,512 | 154,447 |
| 간접 경비 | ○ 공공요금및제세(210-08)<br>가. 건강보험 예탁금<br>·54기관 × 416백만원 = 22,489백만원<br>나. 교정시설 공공요금<br>·54기관 × 2,138백만원 = 115,428백만원<br>○ 유류비(210-08)<br>가. 교정시설 유류비<br>·54기관 × 40.8백만원 = 2,203백만원<br>○ 공사비(420-03)<br>가. 수용동 승압 및 간선공사<br>·10개소 × 78.6백만원 = 786백만원<br>○ 자산취득비(430-01)<br>가. 식품위생 안전장비 도입<br>·54기관 × 2.09백만원 = 113백만원 | ○ 공공요금및제세(210-08)<br>가. 건강보험 예탁금<br>·54기관×445백만원 = 24,049백만원<br>나. 교정시설 공공요금<br>·54기관 × 2,191백만원 = 118,314백만원<br>○ 유류비(210-08)<br>가. 교정시설 유류비<br>·54기관 × 35.7백만원 = 1,929백만원<br>○ 공사비(420-03)<br>가. 수용동 승압 및 간선공사<br>·10개소 × 78.6백만원 = 786백만원<br>○ 자산취득비(430-01)<br>·순감 |
| 합계 | 141,019 | 145,078 |
| 호송비 | ○ 국내여비(220-01)<br>가. 수용자 호송여비<br>·54개 기관 × 52백만원= 2,806백만원 | ○ 국내여비(220-01)<br>가. 수용자 호송여비<br>·54개 기관 × 52백만원= 2,806백만원 |
| 합계 | 2,806 | 2,806 |

자료: 법무부 자료 재구성

그러나, 수용인원의 급격한 증가로 2025년 10월 기준 1일 평균 수용인원은 63,388명에 달하여, 2026년 예산편성 기준인원인 61,000명보다 2,000명을 초과하고 있음.

현행법은 기초적인 수용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부담으로 규정하

고 있는바,[130] 이와 같은 수용자 증가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6년 수용관리를 위한 예산 집행과정 상의 차질이 우려됨.

**<연도별 예산편성 기준인원 대비 1일 평균 수용인원>**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5.9. |
|---|---|---|---|---|---|---|---|---|---|---|
| 예산편성 기준인원 | 49,500 (52) | 53,892 (52) | 56,495 (52) | 55,200 (52) | 55,200 (53) | 53,200 (53) | 52,500 (53) | 51,700 (54) | 55,200 (54) | 59,500 (54) |
| 1일 평균 수용인원 | 56,495 (52) | 57,298 (52) | 54,744 (52) | 54,624 (52) | 53,873 (53) | 52,368 (53) | 51,117 (53) | 56,577 (54) | 61,366 (54) | 63,079 (54) |
| 차이 | 6,995 | 3,406 | △1,751 | △576 | △1,327 | △832 | △1,383 | 4,877 | 6,166 | 3,579 |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교정시설의 수를 의미함
자료: 법무부

따라서 법무부는 2026년 예산집행 과정에서 수용과밀화 해소대책 마련 등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가석방은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 무기형의 경우 20년이 경과하면 신청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131][132] 실제로

---

1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①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한다.
②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음식물의 지급)** ①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상태, 나이, 부과된 작업의 종류, 그 밖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한다.
② 음식물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31)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132) 「가석방 업무지침」(법무부 예규 제1274호)은 수형자를 죄명, 형기, 범죄 내용 등에 따라 7개 유형(무기, 장기, 관리, 제한, 일반, 교통, 보호사범)으로 구분한 후, 경비처우급(1급~4급)과 재범예측지표(1~5급) 등을 반영하여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형기의 80%를 경과한 후 가석방된 수용자가 대부분이어서, 전체 가석방 허가자 중 형 집행률 80% 미만 가석방 허가자 비율은 20%를 넘지 못하였음.[133]

**<성인수용자 가석방 허가자 집행률별 현황>**

(단위: 명)

| 연도 | 합계 | 60% 미만 | 70% 미만 | 80% 미만 | 90% 미만 | 90% 이상 |
|---|---|---|---|---|---|---|
| 2020 | 7,876 (100%) | 0 (0.0%) | 50 (0.6%) | 1,323 (16.8%) | 4,449 (56.5%) | 2,054 (26.1%) |
| 2021 | 9,354 (100%) | 5 (0.1%) | 228 (2.4%) | 2,978 (31.8%) | 4,014 (42.9%) | 2,129 (22.8%) |
| 2022 | 10,281 (100%) | 38 (0.4%) | 1,585 (15.4%) | 4,300 (41.8%) | 3,268 (31.8%) | 1,090 (10.6%) |
| 2023 | 9,483 (100%) | 16 (0.2%) | 642 (6.8%) | 3,605 (38.0%) | 3,776 (39.8%) | 1,444 (15.2%) |
| 2024 | 11,115 (100%) | 12 (0.1%) | 1,185 (10.7%) | 4,156 (37.4%) | 4,408 (39.6%) | 1,354 (12.2%) |

자료: 2025 교정통계연보

**<수형자 출소사유별 현황>**

(단위: 명)

| 연도 | 계 | 형기종료 | 가석방 | 사면 | 기타 | 노역종료 |
|---|---|---|---|---|---|---|
| 2020 | 51,817 (100%) | 19,736 (38.1%) | 7,911 (15.2%) | 206 (0.4%) | 8,589 (16.6%) | 15,375 (29.7%) |
| 2021 | 35,844 (100%) | 17,910 (50.0%) | 9,390 (26.2%) | 110 (0.3%) | 3,695 (10.3%) | 4,739 (13.2%) |
| 2022 | 36,547 (100%) | 16,479 (45.1%) | 10,310 (28.2%) | 65 (0.2%) | 4,637 (12.7%) | 5,056 (13.8%) |
| 2023 | 48,576 (100%) | 16,928 (34.8%) | 9,525 (19.6%) | 24 (0.1%) | 9,169 (18.9%) | 12,930 (26.6%) |
| 2024 | 51,610 (100%) | 17,881 (34.6%) | 11,177 (21.7%) | 41 (0.1%) | 13,772 (26.7%) | 8,739 (16.9%) |

자료: 2025 교정통계연보

133) 형 집행률 80% 미만 가석방 허가자 비율: ('15) 5.3%→('16) 13%→('17) 18.1%→('18) 17.3% ('19) 20% →('20) 16.8%)→

2021년 코로나19 이후 형 집행률이 70% 이상 80% 미만인수용자에 대한 가석방 허가가 증가하긴 하였으나, 가석방 출소율이 60%에 이르는 일본 등과 비교할 때 적극적인 가석방제도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134]

특히, 정신질환·마약류사범 등에 대한 치료조건부, 출소 후 취업연계를 통한 조건부 가석방은 전체 가석방 대비 0.74%(2024년 기준)에 불과한바, 최근 마약사범 수용자 수의 증가추세[135] 등을 감안할 때, 조건부 가석방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조건부 가석방 허가자 현황>**

(단위: 명)

| 연도 | 합계 | 정신질환자 치료조건부 | 마약류사범 치료조건부 | 취업조건부 | 보호수용 조건부 |
|---|---|---|---|---|---|
| 2020 | 49 | 30 | 1 | 18 | - |
| 2021 | 53 | 24 | 11 | 18 | - |
| 2022 | 86 | 40 | 28 | 18 | - |
| 2023 | 99 | 42 | 31 | 20 | 6 |
| 2024 | 83 | 26 | 31 | 17 | 9 |

자료: 2025 교정통계연보

이와 관련하여, 가석방 또는 조건부 가석방 심사 시 수형자별 재범가능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특성의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석

134) **<일본의 연도별 가석방 출소율>**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총 출소자(명) | 21,032 | 19,953 | 18,923 | 17,793 | 17,115 |
| 가석방 출소자(명) | 12,299 | 11,640 | 11,195 | 10,830 | 10,636 |
| 가석방 출소율(%) | 58.5 | 58.3 | 59.2 | 60.9 | 62.1 |

자료: white paper on crime(범죄백서), 일본 법무성 연구훈련소

135) 마약류 수형자 인원(비중): ('22) 2,169(6.3%)→('23) 2,492(6.6%)→('24) 3,477(8.5%)

방심사위원회 심사체계의 전문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법무부차관) 포함 9명의 위원(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136] 실무상 각 교정기관의 분류심사과 담당 인력과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직원 9명이 가석방 관련 업무를 전담·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연간 약 16,000건 이상[137]의 가석방 심사업무를 지원하기에는 인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교정본부 내 실무인력이 별도 조직 없이 법무부 분류심사과 내의 팀 단위로 편성되어 있는 점, 가석방심사위

13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가석방심사위원회)** 「형법」 제72조에 따른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1조(가석방 적격심사)** ① 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제122조(가석방 허가)** ①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다.

137) **<최근 5년간 가석방 심사 및 허가 건수>**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심사 건수(건) | 12,203 | 13,035 | 13,794 | 14,214 | 16,401 |
| 허가 건수(건) | 7,876 | 9,354 | 10,281 | 9,483 | 11,115 |

자료: 법무부

원회의 외부위원들도 법학과, 경찰행정학과 교수 또는 변호사로 구성되어,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심사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임.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 및 경력사항>**

| 연번 | 경력사항 | 비고 |
|---|---|---|
| 1 | 법무부 차관 | 내부위원 |
| 2 | 법무부 검찰국장 | 내부위원 |
| 3 | 법무부 교정본부장 | 내부위원 |
| 4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내부위원 |
| 5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외부위원 |
| 6 | ○○대학교 법학과 교수 | 외부위원 |
| 7 |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외부위원(女) |
| 8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외부위원 |
| 9 | ○○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외부위원(女) |

자료: 법무부

따라서 법무부는 2026년 예산집행과정에서 현행 가석방 비율의 적정성 검토, 가석방심사위원회 지원인력 확대·전문성 강화 등 가석방 활성화를 적극시행하여 수용시설 확대와 더불어 현재 조건에서의 과밀화 해소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4) 교정교화(1532-301)

#### ▢ 예산안 개요

‘교정교화’는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 운영비, 구호 및 교정비, 활동비 등과 노후 교화시설의 센터 시설개선 및 장비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4억 4,300만원(12.6%) 증액된 129억원으로 편성되었음.

**<교정교화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 | 2025 | | 2026 | | |
|---|---|---|---|---|---|---|
| | 결산 | 본예산 | 추경예산 (A) |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교정교화 | 11,319 | 11,457 | 11,457 | **12,900** | 1,443 | 12.6 |
|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 8,998 | 9,712 | 9,712 | **11,014** | 1,302 | 13.4 |
| ·수용자 교정교화 시설 개선 | 1,815 | 1,239 | 1,239 | **1,380** | 141 | 11.4 |
| ·무의탁 출소자 지원 | 506 | 506 | 506 | **506** | 0 | 0.0 |

#### ▢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은 신중할 필요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은 법원이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138]

이에 법무부는 해당 세부사업을 통해 각 교정시설에서 마약 수용자에 대한 이수명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법무부는 현행 이수명령 부과 대상을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뿐만 아니라 판매·제조·소지한 사람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이수명령 교육 예산을 전년대비 11억 9,06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음.

---

13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사범"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하 "수강명령"이라 한다)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한다.
④ 법원이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⑥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⑦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마약류사범 행동의 진단·상담
2. 마약류 폐해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마약류사범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를 제51조의6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위탁할 수 있다.
⑨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025 · 2026년 마약수용자 이수명령교육 예산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 과정명 | 2025년 예산 | | 2026년 예산안 | |
|---|---|---|---|---|
| | 세부 산출근거 | 산출액 | 세부 산출근거 | 산출액 |
| 1) 기본과정 (40시간) | 강사료 회당 26만원 ×25회×54기관 | 351,000 | 강사료 회당 26만원 ×60회×54기관 | 842,400 |
| 2) 집중과정 (80시간) | 강사료 회당 26만원 ×35회×54기관 | 491,400 | 강사료 회당 26만원 ×80회×54기관 | 1,123,200 |
| 3) 심화과정 (134시간) | 강사료 회당 26만원 ×90회×4기관 | 93,600 | 강사료 회당 26만원 ×155회×4기관 | 161,200 |
| 합계 | | 936,000 | 합계 | 2,126,800 |

자료: 법무부 자료 재구성

다만,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이수명령 부과대상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마약류사범'으로, 마약류를 판매·제조·소지한 사람은 현행법상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음.[139]

이에 마약류를 판매·제조·소지한 사람도 '마약류사범'으로 보아 이수명령 부과대상을 확대하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140]이 발의되어 있으나, 해당 법안은 아직 소

139)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의2 제2항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의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은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함으로써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지 않은 자라면 설령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 관한 공범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여기서의 마약류사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재범예방이나 재활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140) 의안번호 제2210156호, 제안일자: 2025. 4. 28., 상정일: 2025. 8. 18.

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계류중으로, 2025년 10월 기준 심의가 개시되지 못한 상황임.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해당 개정 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 관련 사안으로 관계부처인 식약처와 법무부 모두 개정안에 이견이 없어 올해 안에 국회 심의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며, 현재 공백 상태인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육도 확대할 계획인 점, 최근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 수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집행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이수명령의 부과대상이 법률 및 판례상 명확한 점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 대상자 확대 관련 예산편성은 법률안의 국회 의결을 전제로 편성된 것으로 법률상 근거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법률안의 심의과정 및 내용을 참조하여 반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 범죄예방정책국

### (1)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1631-304)

#### ▢ 예산안 개요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은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범죄예방기관 청사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환경미화원 인력 운영, 보호관찰소 임차청사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1억 8,100만원(12.6%) 증액된 195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 | 2025 | | 2026 | | |
|---|---|---|---|---|---|---|
| | 결산 | 본예산 | 추경예산 (A) |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범죄예방기관시설운영 | 15,028 | 17,373 | 17,373 | **19,554** | 2,181 | 12.6 |
| • 청사시설 유지관리 | 6,757 | 8,412 | 8,412 | **10,368** | 1,956 | 23.3 |
| • 임차청사 지원 | 4,138 | 3,749 | 3,749 | **3,749** | 0 | 0.0 |
| • 공무직 인력지원 | 2,012 | 2,333 | 2,333 | **2,505** | 172 | 7.4 |
| • 청사 운영관리 | 2,120 | 2,879 | 2,879 | **2,932** | 53 | 1.8 |

### ▢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시설장비유지비 예산 배분의 균형성 제고 필요

법무부는 2026년 예산안에 시설장비유지비(210-09)[141] 비목으로 범죄예방기관 42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예산 9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2024년 내진설계 미적용 범죄예방기관 84개소 중 42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수행 후, 미수행한 42개소(2024. 12. 31. 기준)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마무리하기 위함임.

그런데, 2026년도 시설장비유지비 비목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2024·2025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소년원 오수정화시설·보일러·방송국·통신장비, 국립법무병원 의료장비, 보호관찰소 청사 등의 유지보수 예산이 모두 미편성되어, 2024년도에 3억 9,100만원, 2025년도에 4억 100만원이었던 유지보수 예산이 5,680만원 규모로 축소 편성되었음.

이는 내진성능평가 예산의 신규 편성에 따라 기존 유지보수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바, 감액 규모 등으로 미루어, 2026년도 범죄예방기관 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부실 우려가 있음.

정부예산지침에 따르면 시설장비유지비의 경우 전년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반영하되, 시설·장비의 유지·관리소홀로 인

141)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는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비,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기타 차량·비행기·선박 등 운반용 기구 유지비를 위한 예산에 해당함

한 대규모 수선 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소요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함.[142]

**<최근 3년간 시설장비유지비 예산 세부 편성내역>**

(단위: 천원)

| 2024년 예산 | | 2025년 예산 | | 2026년 예산안 | |
|---|---|---|---|---|---|
| 합계 | 1,149,090 | 합계 | 400,892 | 합계 | 968,882 |
| 1. 소년원 등 | 164,400 | 1. 소년원 등 | 164,400 | 1. 청사시설 장비 유지비 | 56,882 |
| 가. 오수정화시설관리 | 78,400 | 가. 오수정화시설관리 | 78,400 | 2. 내진성능평가 등 | 912,000 |
| 1) 오수정화시설 약품비 및 유지비 | 67,200 | 1) 오수정화시설 약품비 및 유지비 | 67,200 | | |
| 2) 지하 및 옥상 물탱크 청소비 | 11,200 | 2) 지하 및 옥상 물탱크 청소비 | 11,200 | | |
| 나. 보일러 세관(검사) 및 연관유지비 | 56,000 | 나. 보일러 세관(검사) 및 연관유지비 | 56,000 | | |
| 다. 방송국 유지보수 | 20,000 | 다. 방송국 유지보수 | 20,000 | | |
| 라. 통신장비 유지보수 | 10,000 | 라. 통신장비 유지보수 | 10,000 | | |
| 2. 국립법무병원 | 26,200 | 2. 국립법무병원 | 26,200 | | |
| 가. 의료장비 등 유지보수 | 26,200 | 가. 의료장비 등 유지보수 | 26,200 | | |
| 3. 보호관찰소 | 200,390 | 3. 보호관찰소 | 200,291 | | |
| 가. 건물(청사) 유지비 및 업무공간 조성 | 200,390 | 가. 건물(청사) 유지비 및 업무공간 조성 | 200,291 | | |
| 4.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 758,100 | 4. 증축 청사 유지보수 | 10,000 | | |

자료: 법무부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특수목적 사업이 아닌 일상적이고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유지관리비와 통신장비, 의료장비 유지보수 등 타 세부사업(소년원생수용, 치료감호자 수용관리[143] 등)이나 타 비목(관리용역비)에

142)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32

143) 세부사업코드: 소년원생수용(1632-300), 치료감호자 수용관리(1634-300)

서 집행가능한 내역에 대해 유지보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감액하여, 안전관련 법정소요인 내진보강사업에 재투자한 것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타 세부사업에 편성된 시설장비유지비는 기존에 수행하던 별도의 유지관리 사업목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해당 예산을 완전히 대체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바, 법무부는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을 과도하게 감액편성할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기관의 수요를 미리 파악하여 배정하는 등 노후 시설·장비의 유지·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필수 소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

따라서, 법무부는 향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소년원 등 범죄예방기관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필수 소요를 점검·산정하여 본 비목 내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설장비유지비 예산 배분의 균형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2) 소년원생수용(1632-300)

#### ▢ 예산안 개요

‘소년원생수용’은 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송치된 보호소년을 소년원에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고,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위탁된 소년을 대상으로 분류심사를 하며, 청소년자립생활관 및 창업비전센터 운영을 통해 무의탁 소년원 퇴원생의 사회정착 지원 등을 위한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5억 4,500만원(5.7%) 증액된 285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소년원생수용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 | 2025 | | 2026 | | |
|---|---|---|---|---|---|---|
| | 결산 | 본예산 | 추경예산 (A) |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소년원생수용 | 26,152 | 26,971 | 26,971 | **28,516** | 1,545 | 5.7 |
| ·교육과정 운영 등 | 9,366 | 9,058 | 9,058 | **9,331** | 273 | 3.0 |
| ·구호및교정비 지원 | 5,671 | 5,758 | 5,758 | **5,858** | 100 | 1.7 |
| ·공무직 등 인력지원 | 8,302 | 9,275 | 9,275 | **10,363** | 1,088 | 11.7 |
| ·출원생 자립지원 | 2,812 | 2,880 | 2,880 | **2,964** | 84 | 2.9 |

### ▢ 소년 수용인원 증가추세를 고려한 적정예산 편성 필요

법무부는 2026년 예산안에 소년원생 급식비, 의료비, 피복비 등을 위한 구호 및 교정비(320-06)[144] 예산을 전년대비 1억원 증액한 58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소년원생 급식비 단가를 기존 8,476원에서 8,679원으로 인상함에 따른 것임.

**<최근 5년간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수용 현황 등>**

(단위: 명)

| 시설명 | 2023 | | | 2024 | | | 2025. 9. | | |
|---|---|---|---|---|---|---|---|---|---|
| 구 분 | 정원 | 1일 평균 수용 | 수용률 (%) | 정원 | 1일 평균 수용 | 수용률 (%) | 정원 | 1일 평균 수용 | 수용률 (%) |
| 서울소년원 | 170 | 99 | 58 | 150 | 140 | 93 | 150 | 174 | 116 |
| 부산소년원 | 160 | 160 | 100 | 160 | 181 | 113 | 160 | 187 | 117 |
| 대구소년원 | 140 | 121 | 86 | 140 | 143 | 102 | 140 | 152 | 109 |
| 광주소년원 | 150 | 135 | 90 | 150 | 148 | 99 | 150 | 145 | 97 |
| 전주소년원 | 130 | 117 | 90 | 130 | 129 | 99 | 130 | 113 | 87 |
| 대전소년원 | 120 | 98 | 82 | 120 | 102 | 85 | 140 | 120 | 86 |
| 청주소년원 | 80 | 71 | 89 | 80 | 97 | 121 | 80 | 115 | 144 |
| 안양소년원 | 80 | 83 | 104 | 80 | 136 | 170 | 80 | 124 | 155 |
| 춘천소년원 | 110 | 95 | 86 | 110 | 108 | 98 | 110 | 112 | 102 |
| 제주소년원 | 40 | 29 | 73 | 40 | 29 | 73 | 40 | 30 | 75 |
| 소년분류심사원 | 170 | 184 | 108 | 170 | 232 | 137 | 170 | 242 | 142 |
| 합계 | 1,350 | 1,192 | 88 | 1,330 | 1,445 | 109 | 1,350 | 1,514 | 112 |

자료: 법무부

최근 3년간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9월 기준 전체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정원은 1,350명인데 비해, 1일 평균수

144) 재소자 및 유치인, 소년원생, 환자 및 요양자 등 단체급식 등으로 급식 제공이 불가피한 자에 대하여 적용

용인원 1,514명으로 평균 수용률이 112%로 과밀수용되고 있음.

특히, 안양소년원과 청주소년원의 경우 수용률이 각각 155%, 144%에 이르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에도 142%에 달하고 있음.

수용률 증가 원인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규 수용인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소년인구 자체는 매년 감소추세임에도 소년범죄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최저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년인구 10만명 당 범죄자 수는 677명(2021년)에서 812명(2023년)으로 20% 증가하였음.[145]

소년범죄 증가에 따라 법원에 접수된 소년사건 수 또한 증가하고 있는바, 특히 법원의 소년보호처분 중 소년원 송치인원이 2021년 대비 2023년에 약 79% 증가하여 소년원 과밀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146]

그런데, 최근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도 2026년도 구호 및 교정비 예산은 2025년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정원 1,350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음.

---

145) ※ 10~18세 소년인구 : 2014년 552만 → 2017년 481만 → 2020년 432만 → 2023년 418만
※ 소년범죄 : 2021년 54,017명 → 2022년 61,026명 → 2023년 66,758명
※ 소년인구 10만명 당 범죄자 수 : 2021년 677명 → 2022년 788명 → 2023년 812명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

146) ※ 법원 사건접수 : 2021년 35,438건 → 2022년 43,042건 → 2023년 50,094건
※ 소년원송치 인원 : 2021년 1,822명 → 2022년 2,368명 → 2023년 3,257명
(출처 : 법원행정처, 「2021~2023 사법연감」)

〈2026년도 구호 및 교정비 예산 세부 편성내역〉

(단위: 천원)

| 산출내역 | 금액 |
|---|---|
| 가. 소년원생 급량비 | 4,705 |
| • 소년원생 급식비 1,350명×8,679원×365일 | 4,277 |
| • 경축일, 수험생 등 특식가산 | 368 |
| • 이호송, 체험활동 간식비 등 | 60 |
| 나. 소년원생 의료비 | 735 |
| • 건강관리공단예탁금 | 294 |
| • 일반의료비 등 | 426 |
| • 출원생 진료비 | 15 |
| 다. 소년원생 피복비 등 | 418 |
| • 피복비 | 395 |
| • 귀주여비 | 23 |
| 합계 | 5,858 |

자료: 법무부

이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일 평균 수용인원이 예산편성 기준인원인 1,510명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2024년부터 예산편성 기준인원을 1,350명으로 조정함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1일 평균 수용인원 및 구호 및 교정비 편성·집행현황〉

(단위: 명, %, 백만원)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8. |
|---|---|---|---|---|---|---|
| 정원 | 1,360 | 1,360 | 1,350 | 1,350 | 1,330 | 1,350 |
| 1일 평균 수용인원 | 1,261 | 1,066 | 1,028 | 1,192 | 1,445 | 1,488 |
| 수용률 | 92.7 | 78.4 | 76.1 | 88.3 | 108.6 | 110.2 |
| 예산편성 기준인원 | 1,510 | 1,510 | 1,510 | 1,510 | 1,350 | 1,350 |
| 편성액 | 4,623 | 4,741 | 5,394 | 6,268 | 5,672 | 5,758 |
| 집행액 | 4,621 | 4,742 | 5,163 | 5,824 | 5,671 | 3,802 |

자료: 법무부

그러나, 2025년 9월 기준 수용률이 112%에 달하고 있고, 소년원 송치 인원의 꾸준한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구호 및 교정비는 소년원 등에 수용되는 소년의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이라는 점에서, 2026년도 해당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 급식관리위원회 및 채용관련 회의 외부위원 참석 활성화에 따른 예산집행률 제고 필요

법무부는 소년보호기관(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예규인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에서 급식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147]

소년보호기관의 원장이 급식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 기관의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영양 또는 조리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148]

---

147)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12조(기능)** 소년보호기관에 두는 급식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식의 품종선택과 그 수량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선택된 품종과 수량에 대한 함유 영양량의 검토에 관한 사항
3. 급식에 관한 위생 및 시설관리 그 밖에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148)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13조(구성)** ① 소년보호기관에 두는 급식관리위원회(이하 "급식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급식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은 당해 기관의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영양 또는 조리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전항에 따라 원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급식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영양사가 된다.
**제14조(위원장의 임무)** ① 급식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이에 따라 각 소년원에 설치된 급식관리위원회는 1~2명의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회의를 운영하며, 당해 사업에 급식관리위원회 참석 수당 예산이 매년 편성되어, 급식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지급됨.

**<2025년 기관별 급식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단위: 명)

| 구분 | 계 | 급식관리위원회 위원 | |
|---|---|---|---|
| | | 내부위원 | 외부위원 |
| 서울소년원 | 7 | 5 | 2 |
| 부산소년원 | 9 | 7 | 2 |
| 대구소년원 | 8 | 6 | 2 |
| 광주소년원 | 8 | 6 | 2 |
| 전주소년원 | 8 | 5 | 3 |
| 대전소년원 | 7 | 5 | 2 |
| 청주소년원 | 7 | 5 | 2 |
| 안양소년원 | 6 | 4 | 2 |
| 춘천소년원 | 7 | 5 | 2 |
| 제주소년원 | 7 | 5 | 2 |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 7 | 5 | 2 |
| 총계 | 81 | 58 | 23 |

자료: 법무부

그런데, 최근 3년간 급식관리위원회 개최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320만원의 수당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급식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급식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원장은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급식관리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22년 130만원, 2023년 220만원, 2024년 480만원으로 매년 저조한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이는 외부위원의 참석률 저조에 기인하는바, 2024년의 경우 전체 개최회의 132건 중 외부위원 수당 집행건수는 48건으로 외부위원 참석률이 4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급식관리위원회 회의 개최횟수 및 수당 집행 내역>**

(단위: 천원)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8월 |
|---|---|---|---|---|
| 회의 개최횟수 | 103 | 106 | 132 | 88 |
| 수당 집행건수 | 13 | 22 | 48 | 86 |
| 수당편성액 | 13,200 | 13,200 | 13,200 | 13,200 |
| 수당집행액 | 1,300 | 2,250 | 4,850 | 8,600 |

자료: 법무부

이에 법무부는 2026년 예산안에 급식관리위원회 회의수당 예산을 66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는바, 해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26년 급식관리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석이 가능한 회의는 최대 66회까지인 것으로 보임.[149]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15조에 따라 급식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149) 회당 참석비 100,000원 기준, 정부예산지침은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음(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22.)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도록 규정하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외부위원의 회의참석률 저조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부위원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법무부는 각 소년보호기관별 비공무원 근로자의 채용을 위한 시험위원 및 채용점검위원회 수당을 매년 편성·집행해오고 있는바, 2024년 기준 채용인원은 39명임.

**<2024년 범죄예방시설 비공무원 채용현황>**

| 구분 | 채용인원(명) |
|---|---|
| 서울소년원 | 3 |
| 부산소년원 | 8 |
| 대구소년원 | 5 |
| 광주소년원 | 6 |
| 전주소년원 | – |
| 대전소년원 | 6 |
| 청주소년원 | 1 |
| 안양소년원 | 2 |
| 춘천소년원 | 1 |
| 제주소년원 | 4 |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 3 |
| 총계 | 39 |

자료: 법무부

해당 채용은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및 「법무부 비공무원 공정채용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서류전형, 면접시험 각 단계별 시험위원을 구성해 심사를 진행하고, 제한경쟁방식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150]

그런데, 최근 3년간 서류전형, 면접시험, 채용점검위원회 수당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집행률은 10~20%대에 머물러 있음.

**<채용관련 심사 회의 개최횟수 및 수당 집행내역>**

(단위: 천원, %)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8월 |
|---|---|---|---|---|
| 회의 개최횟수 | 29 | 19 | 40 | 22 |
| 수당편성액 | 44,000 | 44,000 | 44,000 | 44,000 |
| 수당집행액 | 10,450 | 8,550 | 12,044 | 7,350 |
| 수당집행률 | 23.8 | 19.4 | 27.4 | 16.7 |

자료: 법무부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의 경우 서류전형 17건, 면접시험 24건, 채용점검회의의 경우 2건을 집행하여, 채용점검회의 외부위원 수당 집행실적이 특히 저조함을 알 수 있음.

---

150) **「법무부 비공무원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제14조(심사위원 선정 등)** ① (생 략)
② 사용자는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각 전형별 심사위원 3분의 1 이상을 다른 공공기관 소속 직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요건의 적부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전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9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면접전형에서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22조(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① 사용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채용방식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채용점검위원회는 채용을 담당한 부서장 및 담당자를 제외한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등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사용자는 합격자 발표를 하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를 발표할 수 있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4년 채용관련 시험위원 수당 세부 집행내역〉

(단위: 천원)

| 수당집행액 합계 | 서류전형 | | 면접시험 | | 채용점검 | |
|---|---|---|---|---|---|---|
| | 집행건수 | 집행액 | 집행건수 | 집행액 | 집행건수 | 집행액 |
| 12,044 | 17 | 4,050 | 24 | 7,244 | 2 | 750 |

자료: 법무부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공무원 채용과 달리 비공무원 채용 시 각 단계별 시험위원을 구성할 때, 내부위원만으로 전형위원을 위촉하는 경우가 다수 있고, 특히 채용점검위원회의 경우에는 외부위원 포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전반적으로 외부위원 수당 집행률이 저조한 편이라는 입장임.

법무부는 2026년 예산안에 채용관련 시험위원 수당 예산을 전년대비 2,420만원 감액한 1,9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공무직 근로자 채용을 위한 면접심사나, 기간제 근로자(9개월 이상 2년 이하) 채용을 위한 면접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구성 시 「법무부 비공무원 공정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반드시 외부위원을 포함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5년의 경우에도 예산 4,400만원 중 8월 기준 집행액이 735만원으로 집행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2026년의 경우 외부위원 참석을 활성화시키는 등으로 예산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 출원생 외래진료비 지원 활성화 필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소년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을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고, 동조 제2항은 의료재활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소년원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151]

또한,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152]에 따라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하는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의료재활소년원”에 수용하여야 하며, 의료재활소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없음. 이에 따라 법무부는 “대전소년원”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음.[153]

---

15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소년원의 분류 등)** ①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을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재활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소년원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운영한다.

152)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153)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제2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의한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 소년원 : 서울소년원, 대구소년원, 전주소년원, 안양소년원
2.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 서울소년원, 부산소년원, 광주소년원, 청주소년원, 안양소년원, 춘천소년원, 제주소년원
3. 의료·재활교육 소년원 : 대전소년원
4. 특수단기교육 소년원 : 전주소년원, 청주소년원, 제주소년원

한편, 2020. 10. 20. 개정된 개정 보호소년법 제20조의3[154]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신청하는 경우 지정법무병원[155]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는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출원 후에도 계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지원함으로써 최대한 원만하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출원생 외래진료비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천원)

| 구분 |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8월 |
|---|---|---|---|---|---|
| 구호및교정비(320-06) | 편성액 | 115,000 | 115,000 | 15,000 | 15,000 |
| | 집행액 | 473 | 4,266 | 2,503 | 2,188 |
| | 집행률(%) | 0.4 | 3.7 | 16.7 | 14.6 |

자료: 법무부

이에 따라 법무부는 동 사업의 구호및교정비(320-06)로 출원생 외래진료비 예산을 매년 편성·집행하였음. 다만, 2022년 및 2023년은 총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여 각각 47만원 및 427만원이 집행되어 실집행률은 0.4% 및 3.7%로 나타났고, 2024년은 그간의 집행부진을 고려하여 1억원

15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출원생의 외래진료)** ① 의료재활소년원장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出院生)이 외래진료를 신청하는 경우 의료재활소년원에서 검사, 투약 등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신청하는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진료의 기간과 방법 및 진료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55) 서울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공주·춘천·나주·부곡병원 등 5개 기관

감액된 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50만원을 집행하여 16.7%의 집행률을 보임. 2025년도 8월 기준 218만원이 집행되어 여전히 부진한 상황임.

의료재활소년원에의 위탁 처분은 정신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최대 12개월까지만 위탁할 수 있어[156] 재범방지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출원 이후의 사후관리가 중요함. 이를 고려하여 「보호소년법 시행규칙」은 지원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 기간을 출원일로부터 10년까지로 장기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함.[157]

법무부는 위탁소년의 출원 시에 출원 1주일 전 학생에게 퇴원교육을 실시하고, 퇴원 후 외래진료 희망여부를 확인하며, 출원 당일 보호자에게 외래진료 절차 및 해당 병원을 안내하고 있는바, 나아가 보다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원실적을 제고하고 출원생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봄.

2026년도 출원생 외래진료비는 2025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1,5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법무부는 출원생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동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156) **「소년법」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①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

15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4(출원생의 외래진료의 기간·방법)** ①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진료기간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일부터 10년의 범위로 한다.

### (3) 갱생보호활동(1633-300)

#### ▢ 예산안 개요

‘갱생보호활동’은 무의탁·무연고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숙식제공, 직업훈련 및 취업·창업·주거·긴급지원, 가족희망사업, 심리상담 및 치료, 사회성 향상교육, 멘토링 및 사후관리 실시 등의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6억 1,200만원(3.4%) 증액된 484억 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갱생보호활동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 | 2025 | | 2026 | | |
|---|---|---|---|---|---|---|
| | 결산 | 본예산 | 추경예산 (A) |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갱생보호활동 | 48,124 | 46,856 | 46,856 | **48,468** | 1,612 | 3.4 |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건비 | 22,673 | 23,518 | 23,518 | **24,660** | 1,142 | 4.9 |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상비 | 358 | 341 | 341 | **538** | 197 | 57.8 |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비 | 28,816 | 26,694 | 26,694 | **26,895** | 201 | 0.8 |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자체수입 | △5,452 | △5,452 | △5,452 | **△5,452** | 0 | 0.0 |
| · 민간갱생보호법인 | 1,729 | 1,755 | 1,755 | **1,827** | 72 | 4.1 |

### ▢ 전남기술교육원 건립사업의 면밀한 사업계획수립 등 집행관리 철저 필요

갱생보호활동 사업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8개 민간 갱생보호법인에 민간경상보조 형식(수지차보전)으로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158]

법무보호복지공단은 2024년부터 “전남기술교육원” 건립 사업을 수행중인데, 해당 사업을 위하여 2026년 예산을 전년 대비 3억 8,500만원 증액한 26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전남기술교육원 건립 사업 개요>**

- 위치: 전남 목포시 연산동 775-1번지 등 7필지
- 사업 기간: 2024년~2026년(3년)
- 대지면적 : 3,365.2㎡
- 사업 규모 : 건축 연면적 1,558.4㎡(청사 3층 1269.9㎡, 기술동 1층 288.5㎡)
- 사업 예산: 총 공사비 6,029백만원
- 사업시행 방법: 직접시행
- 사업시행 주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건축용도 : 교육연구시설, 갱생보호시설
- 재원조달: 국가(국고보조금)

자료: 법무부

전남기술교육원 건립사업은 전남 서남권 전남지역(목포, 신안, 무안, 영암, 해남, 진도) 및 22개 시·군에 대한 효과적 갱생보호사업 추진을 위

15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보고의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회계 상황 및 사업 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94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및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하여 전남기술교육원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전남 목포시에 3층 청사와 1층 기술동을 포함한 연면적 1,558.4㎡의 건물을 신축할 예정임.

그런데, 당초 예산 최초 편성 당시에는 2024년 12월 실시설계 후 2025년 4월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실시설계는 이보다 8개월이 경과한 2025년 8월에서야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2025년 10월 기준 공사를 위한 입찰 및 계약단계에 머물러 있음.[159]

실시설계 지연 이유에 대하여 법무부는 BF 인증[160] 기준 충족을 위하여

159) 전남기술교육원 신축 공사(건축·기계, 전기, 통신, 소방) 용역의 경우 2025.9.9. 개찰 후, 2025. 9. 16. 낙찰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완료하였음(출처: 나라장터 입찰공고)

160) BF(Barrier-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등이 수행하는 인증제도를 의미함. BF 예비인증의 경우, 해당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절차,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설계 일부를 변경하였고, 인증 신청 후에도 인증서 발급까지의 기간과 예상한 기간 간 차이가 있어 공사일정이 지연되었다는 입장임.

**<사업단계별 당초 계획일정 대비 실제 추진현황>**

| 사업단계 | 당초 계획일정 | 실제 추진현황 | 비 고 (변동 사유 등) |
|---|---|---|---|
| 토지매입 | 2024. 7. | 2024. 7. | |
| 기본계획 | 2024. 9. | 2024. 10. | |
| 기본설계 | 2024. 12. | 2024. 12. | |
| 실시설계 | 2024. 12. | 2025. 8. | (2025. 1.) BF인증 기준 충족 위해 일부 설계변경<br>(2025. 4.) BF인증 신청<br>(2025. 8.) BF인증서 발급 |
| 공사 입찰 및 계약 | 2025. 2. | 2025. 9. | |
| 착공 | 2025. 4. | 2025. 10. | |
| 준공 | 2026. 8. | 2026. 10. | |
| 사용승인 | 2026. 10. | 2026. 12. | |

자료: 법무부

실시설계가 늦어짐에 따른 착공 지연 등 전반적인 사업절차 순연으로 2025년 10월 기준 2025년도 예산액은 전체 22억 5,000만원 중 1,600만원만 집행된 상황임.

**<전남기술교육원 건립 사업 예산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 도 | 예산액 | 집행액 | 이·전용 | 이월액 | 불용액 |
|---|---|---|---|---|---|
| 2024년 | 1,479 | 1,144 | - | - | 335 |
| 2025년 | 2,250 | 16 | - | - | - |
| 2026년 | 2,635 | - | - | - | - |

자료: 법무부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최종적인 준공 일정이 2026년 8월에서 2026년 10월로 2개월 정도 조정된 상황으로, 일정 변경은 BF 인증절차 승인과정에서 다소 지연된 것으로 사업 자체의 추진력이나 공정관리에는 문제가 없으며, 2025년 10월 시공사 선정 및 착공 이후 선금 70%를 집행할 예정이고, 12월 최종 잔금을 지급하여 2025년 예산 22억 5,000만원 전액을 집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이는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공사일정을 당초 계획 1년 4개월(2025년 4월~2026년 8월)에서 1년(2025년 10월~2026년 10월)으로 단축 계산한 것으로, 당초 계획인 1년 4개월의 공사일정을 감안할 경우 전남기술교육원 완공이 현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2026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소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남기술교육원 사업단계별 추진현황 및 향후절차를 파악하여 면밀하게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인바,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 제고라는 예산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집행관리 측면에서도 현실적인 사업기간을 제시하여 부실공사 위험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임.

따라서 법무부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수행하는 전남기술교육원 건립사업이 2026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고, 2026년 건립비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공사단계별 세부일정을 재점검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4) 보호관찰활동(1635-300)

#### ▢ 예산안 개요

‘보호관찰활동’은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실시 등에 소요되는 강사료,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억 9,300만원(2.9%) 증액된 175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보호관찰활동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 | 2025 | | 2026 | | |
|---|---|---|---|---|---|---|
| | 결산 | 본예산 | 추경예산 (A) |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보호관찰활동 | 16,006 | 17,102 | 17,102 | **17,595** | 493 | 2.9 |
|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집행 | 10,973 | 11,932 | 11,932 | **12,025** | 93 | 0.8 |
| • 보호관찰 장비 및 시설 | 1,877 | 1,777 | 1,777 | **2,157** | 380 | 21.4 |
| • 사업 지원 경비 | 3,152 | 3,393 | 3,393 | **3,413** | 20 | 0.6 |

#### ▢ 위기상황자 심리치료비 지원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 마련 필요

법무부는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한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이 있는 주취·

심신장애인·마약중독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면서 일정기간을 두고 치료받도록 하는 치료명령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161]

해당 제도는 치료명령에 따른 치료비용을 원칙적으로 치료명령 대상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가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162]

이에 따라 법무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163]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164]의 심리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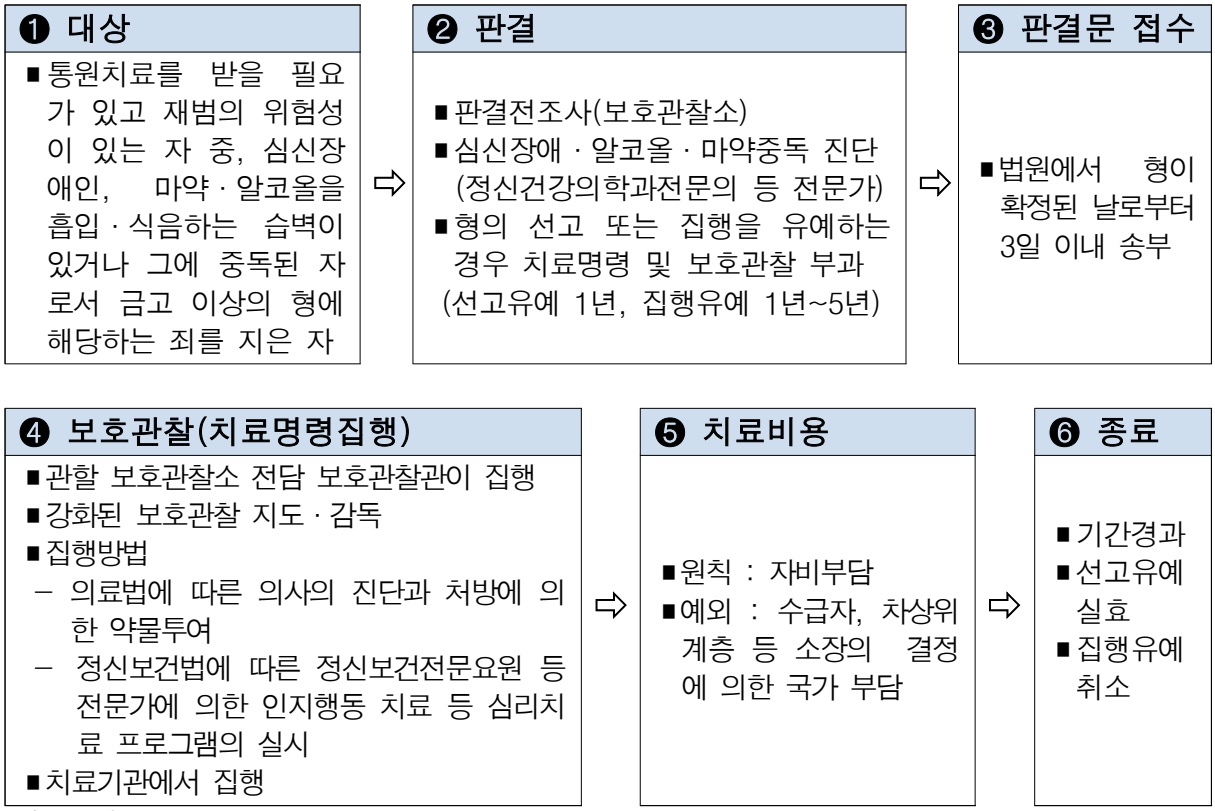
16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선고유예 시 치료명령 등)** ① 법원은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치료를 명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병과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기간은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1년,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치료기간은 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6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9(비용부담)** ① 제44조의2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②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치료비용의 국가부담)** ① 국가는 법 제44조의9 제1항 단서에 따라 피치료명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16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9. (생 략)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생 략)

164)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치료명령제도 절차〉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2022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심리치료비 예산만을 편성·집행하였으나, 2021회계연도 및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심리치료비 예산의 낮은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적165)에 따라 2023년부터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심리치료까지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법무부는 2024년 예산에 치료명령 대상자 심리치료비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210-01목) 1억 9,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편성액을 초과한 3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집행률 164.7%), 이는 2024년부터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까지 심리치료비를 지원함에 따라 급증한 것으로 보임.

**<치료명령 대상자 심리치료비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명, 천원)

| 구분 | 2022 | | 2023 | | | 2024 | | | 2025. 8. | | |
|---|---|---|---|---|---|---|---|---|---|---|---|
| |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위기 상황자 |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위기 상황자 |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위기 상황자 |
| 편성인원 | 161 | 114 | 249 | 59 | - | 140 | 19 | - | 140 | 19 | - |
| 지원인원 | 158 | 23 | 198 | 47 | 57 | 180 | 4 | 198 | 144 | 3 | 208 |
| 편성액 | 193,200 | 136,800 | 298,800 | 70,800 | - | 168,400 | 22,800 | - | 168,400 | 22,800 | - |
| 집행액 | 141,830 | 20,737 | 237,813 | 5,230 | 7,079 | 158,750 | 2,700 | 153,556 | 82,410 | 1,300 | 103,810 |

자료: 법무부

또한, 2023년도에는 위기상황자 57명에게 약 707만원이 지원되었으나 2024년도에는 198명에게 약 1억 5,355만원이 지급되어 위기상황자 1인당 지원액이 2023년 12만 4,000원에서 2024년 77만 5,500원으로 크게 증

165) 법제사법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추후 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심리치료비 예산을 현실화하여 편성하고, 보다 적극적인 집행 노력을 함으로써 저조한 집행률을 제고할 것

가하였음.

법무부에 따르면 이는 2023년에는 4분기부터 위기상황자 심리치료비 예산 집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1인당 심리치료 횟수가 1.2회에 그쳤으나, 2024년 1~4분기에는 1인당 7.8회의 심리치료가 이루어짐에 기인한 것임.

그러나, 2025년의 경우에도 위기상황자 심리치료비 지원인원은 전년과 유사하나, 집행액에 있어 약 5,0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도 1인당 지원금액이 전년대비 약 50% 수준으로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심리치료비 지원 대상별 치료 단가·횟수의 상한 등 예산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따라서, 법무부는 심리치료비 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자 수의 합리적 추계를 바탕으로 적정규모의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심리치료비 지원 대상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집행할 필요가 있음.

## 자. 법무연수원

### (1) 법무·검찰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5131-301)

#### ▢ 예산안 개요

‘법무·검찰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은 법무・검찰공무원 및 타기관 소속 공무원의 집합・사이버 교육을 통해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고도의 직무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00만원(0.1%) 증액된 15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법무・검찰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 | 2025 | | 2026 | | |
|---|---|---|---|---|---|---|
| | 결산 | 본예산 | 추경예산 (A) |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법무・검찰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 1,427 | 1,577 | 1,577 | 1,579 | 2 | 0.1 |

### ▢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 예산 편성 및 표절 논문 관리 철저 필요

법무연수원은 공무원 국외연수 보고서 표절 논란과 관련한 언론보도 및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표절검사 요청 등에 따른 논문 표절 시비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2023년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한국학술지 인용색인(KCI) 대신 표절검사 전문프로그램(카피킬러 캠퍼스)을 신규 구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외훈련을 마친 검사에게 논문 제출 전 논문표절 여부를 검사하게 하고 표절 검사결과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전문프로그램 도입 전 전체 평균 유사도(표절율)는 약 13.14%에서 도입 후 약 5.45%로 낮아져 표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음.

그런데, 관련 예·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을 최초 도입한 2023년에는 관련 예산 1,430만원을 편성하지 않아 “연수원 시설관리 및 운영(5131-300)” 세부사업비에서 예산을 전용하여 프로그램 구독비에 지출하였고,[166] 2025년 예산에도 미편성하여 “법무연수원 기본경비(7018-254)”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지출하였으며, 2026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구독비는 미편성한 상태임.

법무부는 논문표절 프로그램의 도입 성과인 표절억제 및 완성도 향상에 기여함과 아울러, 연구논문 표절관리를 효율화함으로써 표절 문제의

166) 최초 구독기간은 무료서비스 기간을 포함여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이므로, 2024년 구독료는 불필요한 상황임.

사전 차단 효과를 지속유지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구독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임.

**<최근 3년간 논문 표절검사 프로그램 구독 예·결산 내역>**

| 연도 | 예산 | 조정등 | 결산액 |
|---|---|---|---|
| 2023<br>~<br>2024 | 미반영 | 전용 14,300<br>연수원시설관리및운영 - 자산취득비<br>(5131-300-430-01)<br>→<br>법무·검찰공무원등교육운영및개선-자산취득비<br>(5131-301-430-01) | 14,300천원 |
| 2025 | 미반영 | 법무연수원 기본경비(7018-254)<br>임차료(210-07)를 사용 | 14,300천원 |
| 2026<br>예산안 | 미반영 | - | |

한편, 논문 유사도는 기관별로 기준이 다르나, 통상적으로 10%이하를 “적정수준”으로, 10~15%를 “주의수준”으로, 15% 이상인 경우에는 “경고 및 재검토 필요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법무부도 통상 15%를 초과하는 논문은 보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 검사 국외훈련 논문의 유사도 측정 구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68건 중 유사도 1~9%의 안정적 수준은 전체의 213개로 57.9%이고, 10% 이상의 구간은 155개 42.1%이며(아래표 음영 참조), 20% 이상의 표절율을 보이는 경우도 52개로 전체의 14.1%를 차지하고 있어, 논문 표절관리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5년간 검사 국외훈련 논문의 유사도 구간>

(단위: 건, %)

| 유사도 구간(%) | 논문 수 | 비율 | 합 계(비율) |
|---|---|---|---|
| 1~9<br>(적정수준) | 213 | 57.9 | 213(57.9%) |
| 10~19 | 103 | 28.0 | 155(42.1%) |
| 20~29 | 38 | 10.3 | |
| 30~39 | 8 | 2.2 | |
| 40~49 | 2 | 0.5 | |
| 50~59 | 3 | 0.8 | |
| 60~69 | 1 | 0.3 | |
| 합 계 | 368 | 100 | |

또한, 법무연수원은 논문표절 여부를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카피킬러)을 사용하여 1차적으로 점검한 뒤, 검사결과를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단에 제공하여 심층심사를 거쳐 최종 표절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하지만, 논문의 최종 표절여부 판단, 표절 적발 시 조치 여부 및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는 법무부 검찰국 소관 사항으로 법무연수원은 관련 사항을 전혀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

따라서, 법무부는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 구입 예산을 적극 편성하고, 표절이 확인된 논문의 통보 및 조치결과 회신 등 검찰국과 상호 협력 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규정 미비나 개정 필요사항을 보완하는 등 표절 논문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 2. 교도작업특별회계

### ◈ 세 출 ◈

#### (1) 교도작업(1535-300)

▢ 예산안 개요

‘교도작업’은 정부기관 및 기업 등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재료를 구입하여 수형자로 하여금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작업장려금을 지급하며,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는 등 일련의 교도작업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8억 9,900만원(4.7%) 증액된 650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교도작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 | 2025 | | 2026 | | |
|---|---|---|---|---|---|---|
| | 결산 | 본예산 | 추경예산 (A) |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교도작업 | 59,062 | 62,105 | 62,105 | 65,004 | 2,899 | 4.7 |

▢ 공무직 근로자 처우개선 등 채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동 사업의 상용임금(110-03목) 및 고용부담금(320-09목)은 교도작업 담당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및 4대 보험료 등을 위한 예산으로, 공무직

근로자는 직영작업의 품질관리·생산품 납품·사무보조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식품품질관리원, 운전원, 사무보조원 등이며 2025년 10월 기준 25명(정원 32명)이 근무 중임.

**<교도작업 담당 공무직 현황>**

(단위: 명)

| 연번 | 소속기관 | 인원 | 수행업무 |
|---|---|---|---|
| 1 | 강릉교도소 | 1 | 식품가공 교도작업 품질관리(진미채 등) |
| 3 | 공주교도소 | 5 | 식품가공 교도작업 품질관리(고추장 등) |
| 4 | | | 편직 교도작업 품질관리(수용자 피복, 양말 등) |
| 5 | | | 생산품 납품 · 운송 업무 등(고추장, 수용자 피복 등) |
| 7 | 광주교도소 | 2 | 생산품 납품 · 운송 업무 등(수용자 피복, 군수품 등) |
| 9 | 군산교도소 | 2 | 생산품 납품 · 운송 업무 등(침낭 · 이불 · 책상 등) |
| 11 | 대구교도소 | 1 | 사무보조(직영 교도작업 행정지원) |
| 12 | 대전교도소 | 1 | 생산품 납품 · 운송 업무 등(수용자 의류 등) |
| 13 | 목포교도소 | 1 | 생산품 납품 · 운송 업무 등(식탁, 침대 등) |
| 14 | 부산교도소 | 1 | 생산품 납품 · 운송 업무 등(생선묵 등) |
| 15 | 안양교도소 | 1 | 사무보조(교정작품 판매점 관리) |
| 16 | 여주교도소 | 2 | 식품가공 교도작업 품질관리(무말랭이 등) |
| 17 | | | 사무보조(직영 교도작업 행정지원) |
| 18 | 원주교도소 | 1 | 편직 교도작업 품질관리(원단생산, 수용자 피복 등) |
| 19 | 의정부교도소 | 2 | 사무보조(직영 교도작업 행정지원) |
| 20 | | | 생산품 납품 · 운송 업무 등 (면도기 등) |
| 21 | 전주교도소 | 2 | 생산품 납품 · 운송 업무 등(매트리스, 편백침대, 화장지 등) |
| 23 | 제주교도소 | 1 | 생산품 납품 · 운송 업무 등(어상자 등) |
| 24 | 천안개방교도소 | 1 | 사무보조(직영 교도작업 행정지원) |
| 25 | 천안교도소 | 1 | 생산품 납품 · 운송 업무 등(생선묵 등) |
| 합 계 | | 25명 | |

자료: 법무부 자료 재구성

공무직 근로자의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예산을 살펴보면, 2024년 상용임금의 경우 66%, 고용부담금의 경우 85%, 2025년 10월 기준 상용임금 53.1%, 고용부담금 28%의 집행률을 보였으나, 2026년 예산은 전년대비 각각 1억 800만원, 2,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이는 공무직 근로자의 잦은 퇴사 및 공백기간의 발생으로 상용임금 등이 불용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분을 반영한 증액편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공무직 근로자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편성 ·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연도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률(%) | 불용액 |
|---|---|---|---|---|---|
| 상용임금 | 2022 | 1,183 | 1,023 | 86.5 | 160 |
| | 2023 | 1,211 | 950 | 78.4 | 261 |
| | 2024 | 1,244 | 821 | 66.0 | 423 |
| | 2025.10. | 1,284 | 682 | 53.1 | - |
| | 2026(안) | 1,392 | - | - | - |
| 고용부담금 | 2022 | 228 | 152 | 66.7 | 77 |
| | 2023 | 236 | 185 | 78.4 | 51 |
| | 2024 | 242 | 206 | 85.1 | 36 |
| | 2025.10. | 251 | 70 | 28.0 | - |
| | 2026(안) | 276 | - | - | - |

자료: 법무부 자료 재구성

2024년부터 의정부교도소 등 5개 기관은 공무직 13명이 개인사정 등으로 퇴사하였으며, 광주교도소 등 8개 기관은 12명을 납품원 등으로 신규 채용하여 2025년 10월 기준 현원 7명이 부족한 상황임.

<2024년~2025년 교도작업 공무직 근로자 변동 현황>

| 구 분 | 정원 | 2024년 현원 | 퇴직 | 채용 | 2025년 현원 |
|---|---|---|---|---|---|
|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 공무직 | 32명 | 26명(△6) | 13명 | 12명 | 25명(△7) |

자료: 법무부 자료 재구성

교도작업 담당 공무직 근로자의 퇴사가 잦거나 신규 채용이 어려운 이유와 관련하여, 보안시설 내 근무라는 특수한 환경, 유사 산업현장 대비 낮은 처우 수준,[167] 근무기관에 따른 수당의 종류·지급 여부, 호봉제 적용여부,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총액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임금체계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됨.[168]

그러나, 교정기관별 식품·피복·가구·군수품 제작 등 다양한 교도작업이 행해지고 있고, 작업현장의 안전 및 질서 유지, 제품 납품 등을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잦은 이직은 교도작업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처우개선 등 채용 활성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공무직 근로자 5명이 배치된 공주교도소를 제외하고는 각 기관

167) “2024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중소제조업(매출억 30억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직종별 조사노임(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 일급기준)을 조사한 결과, 기타공학품질관리원(122)의 일급은 119,633원, 작업반장(129)의 일급은 135,398원임.

168) 한겨레, “11년차 월급 195만원인데…공무직 인상률 2.2%에 반발”, 최종검색일: 2025. 11. 3.,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58056.html; 뉴스1, “공무직 3년차와 15년차 임금 격차는 '7만원'…손솔 의원 "근속 인정해야"”, 최종검색일: 2025. 11. 3., https://www.news1.kr/life-culture/general-cultural/5931058

별 교도작업 담당 공무직은 1~2명 내외로 소수여서 휴가·결원 시 업무 중단 또는 과부화될 근무환경에 놓여있음.

따라서 법무부는 향후 예산 집행과정에서 교도작업 담당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을 통하여 채용을 활성화하고 그에 따라 해당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공무직 근로자 정원 확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시설보완(1535-302)

#### ▢ 예산안 개요

‘시설보완’은 교도작업 운영에 필요한 작업장 신·증축 및 환경개선, 시설장비 설치·개량·교체 등 유지관리를 통한 교도작업의 효율성·생산성을 제고하려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6억 7,300만원(94.3%) 증액된 75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시설보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 | 2025 | | 2026 | | |
|---|---|---|---|---|---|---|
| | 결산 | 본예산 | 추경예산 (A) |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시설보완 | 5,076 | 3,897 | 3,897 | 7,570 | 3,673 | 94.3 |

#### ▢ 여성수형자 교도작업장 확대방안 모색 필요

최근 여성수형자의 급격한 증가추세[169] 등을 감안하여 법무부는 2025년 2월부터 경북북부제3교도소에 여성수형자를 수용해 오고 있음.

「형법」 제67조는 “징역은 형무소 내에서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여 교도작업을 형벌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법 제69조제2

169) 여성 수용자 수용인원 현황 : (’22) 4,272명 → (’23) 4,946명 → (’24) 5,486명 → (’25) 5,552명 2025. 5. 기준 전국 교정시설 여성수용자 수용률 평균 138% (법무부)

항에서는 벌금과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도록 하고 있어,[170] 작업부적격자가 아닌한 징역형 수형자나 벌금·과료 미납자는 교도작업을 의무적으로 행하여야 함.

그러나 이전에 남성수형자만을 수용해 온 경북북부제3교도소에는 여성수형자가 작업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작업부과 적격 여성수형자 중 114명이 교도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171][172]

**<경북북부제3교도소 여성수형자 교도작업장 신축 사업 개요>**

- 위치: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2(지목: 대)
- 면적: 약 1,183㎡(철골조)
- 사업기간: 2026. 1. ~ 2026. 10.
- 총 건설비: 3,636백만원
- 배경: 2025.2. 경북북부제3교도소 기능전환(남자→남녀 수용)에 따른 여성수형자 노역의무 이행을 위한 교도작업장 신축 필요
- 내용: 여성수형자용 관급 속옷 생산 직영 교도작업장으로 활용

자료: 법무부 자료 재구성

170) **「형법」 제67조(징역)**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
**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한다.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71) 2025년 10월 27일 기준

172) 법무부에 따르면, 여자수형자 작업장 부족으로 43명이 거실작업(수세미제작) 중임.

이에 법무부는 여성수형자의 노역의무 이행을 위한 여성 교도작업장 신축을 위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 36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음.

해당 예산의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36억 3,600만원은 건축면적 1,183㎡를 법무시설기준규칙상 작업장의 1인당 최소 면적인 12.4㎡에 여성수형자 작업인원 95명을 곱하여 산출하였고, 이에 최근 3년간 평균 작업장 공사단가 250만원/㎡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임.

**<경북북부제3교도소 여성수형자 교도작업장 건축비 세부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내역 | 금액 |
|---|---|---|
| 설계비<br>(420-02) | ■ 공사비(2,957백만) × 건축부문설계 요율❶(3.58%)<br>❶ 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105 |
| 공사비<br>(420-03) | ■ 신축 면적(1,183㎡❶) × 공사비 단가(2.5백❷)<br>❶ 1,183㎡ = 작업인원(95명) × 법무시설기준규칙 기준 1인당 최소 면적(12.4㎡)<br>❷ 최근 3년간 작업장 평균 공사비 단가(1㎡ 기준, 2.5백만) | 2,957 |
| 감리비<br>(420-04) | ■ 공사비(2,957백만) × 건축공사감리 요율❶(1.09%)<br>❶ 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32 |
| 자산취득비<br>(430-01) | ■ 원단제조장비(1식) × 설치비용❶(542백만원)<br>❶ 복수 견적에 따른 최저 견적가 | 542 |
| 합계 | | 3,636 |

자료: 법무부

그러나, 2025. 10. 기준 경북북부제3교도소의 여성수형자 현원 299명 중 작업부과 적격자는 278명으로, 직업훈련 및 운영지원 작업 수행인원을 제외하더라도 교도작업 참여인원은 최소 95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작업인원이 실제보다 과소계상된 측면이 있음.

<경북북부제3교도소 수용현황>

( ‘25.10.27. 기준, 단위: 명)

| | 정원 | 현원 | 작업부과 부적격자 | 작업부과 적격자 | | | | |
|---|---|---|---|---|---|---|---|---|
| | | | | 총계 | 교도작업 | 직업훈련 | 운영지원 | 미작업 |
| 남자 | 508 | 614 | 246 | 368 | 201 | 16 | 103 | 48 |
| 여자 | 312 | 299 | 21 | 278 | 118 | 30 | 16 | 114 |
| 총계 | 820 | 913 | 267 | 646 | 319 | 46 | 119 | 162 |

자료: 법무부

유사시설인 청주여자교도소의 경우, 195명의 작업인원이 근무하는 6개 작업장[173]의 전체 면적은 1,399㎡로, 1인당 평균 작업장 면적은 7.2㎡임. 해당 기준을 적용할 경우,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최대 약 164명까지만 작업이 가능하게 됨(1,183㎡/7.2㎡=164.3).

<청주여자교도소 교도작업장 면적 및 일평균 작업인원>

| 연번 | 작업장명 | 작업종류 | 작업장 면적 (㎡) | 작업인원 (명) | 1인당 평균 면적 (㎡) | 작업내용 |
|---|---|---|---|---|---|---|
| 1 | 봉제 | 직영 | 270 | 39 | 6.9 | 수용복제작 |
| 2 | 집중1 | 위탁 | 253 | 29 | 8.9 | 도자기무늬제작 |
| 3 | 집중2 | 위탁 | 199 | 30 | 6.6 | 자동차배선조립 |
| 4 | 집중3 | 위탁 | 182 | 28 | 6.5 | 의류봉제 |
| 5 | 집중4 | 위탁 | 171 | 29 | 5.9 | 정수기필터부품조립 |
| 6 | 집중5 | 위탁 | 324 | 40 | 8.1 | 자동차시트봉제 |
| 합계 | | | 1,399 | 195 | 7.2 | |

자료: 법무부

173) 수용거실 내 작업(수세미 제작), 개방교도소 작업(정수기필터 부품조립), 외부통근 작업(자동차 부품조립)은 제외함.

법무부는 이와 관련하여, 기존 경북북부제3교도소 남자 수용자 일부를 타 교정시설로 분산 이송하고, 남성 수형자 작업장의 유휴공간을 여성 수형자가 사용하고 있어 실제 미작업자는 114명으로 현재 면적의 작업장 신축으로 미작업자 해소가 가능하며, 그 외에도 여성수형자 교도작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형(농촌 일손 제공 등) 외부통근 작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남성수형자와 여성수형자는 교도작업. 생산품목, 필요 설비, 작업환경 등이 상이한바, 여성수형자가 작업할 수 있는 별도 작업공간 마련을 위한 당초 사업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남성수형자 유휴 작업공간 활용 및 지역사회 연계 외부통근작업은 현장의 정역집행률 제고 노력으로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는 과도적 보완 수단에 그쳐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여성수형자 수용 추세에 상응하는 전용 작업공간의 체계적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최근 여성수용자 수용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경북북부제3교도소 여성수형자 수 역시 증가 예상되므로, 법무부는 장기적 정역집행률 제고를 위한 여성수형자 교도작업장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 지 출 ◈

### (1)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1135-301)

#### ▢ 계획안 개요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은 당사자 신청 또는 검사 직권에 의해 수사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피해자의 손실을 조기에 복구함으로써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모하는 사업임.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억 7,300만원(6.9%) 감액된 32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 | 2025 | | 2026 | | |
|---|---|---|---|---|---|---|
| | 결산 | 당초계획 | 수정계획 (A) | 계획안 (B) | 증감 (B-A) | (B-A)/A |
| ○ 기능별 분류(합계) | 3,424 | 3,450 | 3,450 | 3,277 | △173 | △5 |
| ·형사조정위원 수당 - 일반수용비(210-01) | 3,351 | 3,363 | 3,363 | 3,200 | △163 | △4.8 |
| ·형사조정위원 교육 - 일반수용비(210-01) | 24 | 24 | 24 | 24 | 0 | - |
| ·공증수수료 - 일반수용비(210-01) | 7 | 21 | 21 | 11 | △10 | △48 |
| ·형사조정 지도감독 -사업추진비(240-01) | 42 | 42 | 42 | 42 | 0 | - |

### ▢ 형사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한 관련 예산 계상 필요

형사조정은 가해자에게 범죄피해자의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하도록 중재하고 형사절차에서 상대적 약자인 피해자를 절차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피해회복 및 가해자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회복적 사법제도라는 의미가 있음.

구체적인 조정절차를 살펴보면, 각급 검찰청에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에 재산범죄 또는 사적분쟁 등의 사건이 회부되면 가해자와 피해자, 형사조정위원이 참여하여 사건을 조정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 사건 담당 검사에게 형사조정결정문 등 자료를 송부하면 검사가 조정결과를 고려하여 처분하고 있음.

그동안 적은 형사조정 예산 투입으로 수십 배의 피해액을 회복하고 '한국 형사조정 표준안'이 국제사회의 표준모델로 채택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의뢰건수, 조정성립건수 및 성립율 등 정량적인 성과지표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2022 회계연도 법무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본 사업은 '미흡'을 받아 지출구조조정 대상이 되었고, 이에 법무부는 고소사건 외에 일반형사 사건 적극 발굴, 팸플릿 제작 등 홍보 강화, 형사조정위원 교육 강화를 통하여 성립건수 등 실적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음.[174]

그러나 2022년 이후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당사자의 형사조정 의뢰건

174) 법무부, 「2022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22면

수 및 처리건수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한 점, 형사조정 성립건수 및 형사조정 성립율은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며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175]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22 회계연도 법무부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이후에도 형사조정 실적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176]

**<최근 3년간 형사조정 현황>**

| 구분 | 의뢰건수 | 처리건수(A) | 성립(B) | 불성립 | 진행중 | 성립률(B/A) |
|---|---|---|---|---|---|---|
| 2022 | 70,878 | 59,969 | 36,719 | 22,070 | 10,923 | 61.2 |
| 2023 | 69,528 | 59,243 | 36,935 | 21,078 | 10,270 | 62.3 |
| 2024 | 68,220 | 58,268 | 36,860 | 20,278 | 8,555 | 63.3 |

자료: 법무부

한편, 2022회계연도 이후 법무부는 형사조정위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형사조정 가이드북 발간 및 배포, 온라인 기초교육, 고검 권역별로 찾아가는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음.

**<형사조정위원 교육 추진 경위>**

- 2022. 5. 형사조정 가이드북 책자 발간 및 배포, 형사조정 활성화 지시
- 2022. 11. 형사조정위원 대상 형사조정 온라인 기초 교육 실시(549명)
- 2023. 10. ~ 11. 고검 권역별로 찾아가는 형사조정위원 전문화 집합 교육 실시(548명)
- 2023. 12. 형사조정위원 전문화 교육 개발 교재(형사조정을 위한 핸드북) 발간 및 배포
- 2024. 11. ~ 12. 고검 권역별로 찾아가는 형사조정위원 전문화 집합 교육 실시(611명)

자료: 법무부

175) 성립률(처리건수 대비 성립건수)이 소폭이나마 지속 증가한 것은, 처리 건수의 지속적인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176) 오히려 의뢰건수는 및 성립건수는 2022년 대비 2024년에 지속 하락하였음.

형사조정 기법에는 지식적인 측면과 더불어 노하우 등 비정형적인 측면도 있을 것임.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수백명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식 온라인 교육 또는 고검 권역별로 이루어지는 강의식 집합교육 뿐만 아니라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심도있게 이루어지는 실습형 교육 병행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권역별 교육대상을 고검 단위에서 지청 단위로 확대한다면 소수의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습형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하여 형사조정의 질적 측면을 향상시켜 성립건수 및 성립률 등의 성과지표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무부는 일반형사 사건 적극 발굴 및 대국민 홍보, 형사조정위원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에 관련된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면밀한 집행을 통하여 조정 성립건수 및 조정 성립률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공증수수료 예산 증액 검토 및 집행률 개선방안 마련 필요

‘공증수수료 예산(210-01)’은 형사조정 성립 후 집행력 확보를 위해 검찰청 수사관 등에게 공증수수료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1,000만원(△48%) 감액된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형사조정 공증은 피해금 변제에 대하여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합의 시 그 합의에 강제집행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

치지 않고도 합의 내용의 원활한 이행을 담보하여 형사조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임.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민사의무의 이행으로서 공증으로 집행력 부여가 가능한 조정내용에 대하여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공증을 연계하고 그 수수료 지원을 각급 검찰청의 재무회계담당자에게 요청하면, 조정의 당사자(사건의 피고소인 및 고소인)는 우선 공증 수수료를 납부한 후 영수증과 수수료를 입금받을 계좌 사본을 형사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각급 청의 재무회계담당자로부터 실비를 보전받게 됨.

**〈형사조정 공증 연계 및 그 수수료 지원 절차〉**

| |
|---|
| ① 형사조정위원회가 각급 청에 공증수수료 지원의뢰 요청 ⇒ ② 당사자가 공증수수료의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형사조정위원회에 제출 ⇒ ③ 각급 청에서 당사자에게 추후 실비보전 |

자료: 법무부

그런데, 형사조정 공증수수료 지원 예산의 2022년도 이후 최근 3년간의 집행률은 모두 40% 미만이고 집행 건수도 매년 100건 미만을 보이고 있어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임. 이처럼 저조한 집행 실적의 원인으로 조정 당사자들의 공증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 부족, 선지출 후 실비 보전에 대한 당사자들의 부담감 등이 있고, 법무부는 저조한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본 사업의 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감액한 것으로 보임.

<2022년부터 2024년 형사조정 공증수수료 집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 집행건수 | 편성액 | 집행액 | 집행률(%) |
|---|---|---|---|---|
| 2022 | 83 | 30 | 7 | 23.3 |
| 2023 | 74 | 30 | 7 | 23.3 |
| 2024 | 91 | 21 | 7 | 33.3 |

자료: 법무부

그러나, 형사조정 공증수수료 지원은 형사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형사조정 성립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177]. 따라서, 집행률 저조를 이유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이고 소극적인 사업 예산편성으로서 법무부가 추진 중인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1038-300)' 취지와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년 대비 감액폭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임. 따라서, 형사조정 공증수수료 지원 예산 감액은 신중히 심사할 필요가 있고, 법무부는 공증수수료 집행실적 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대전지검은 공증을 담당하는 법무법인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발생한 모든 공증수수료를 개별 공증의 당사자가 아니라 총액으로 법무법인에게 직접 지원함으로써 당사자는 공증수수료 납부 및 환급에 관여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방식인데,[178] 향후 이와 같이 형사조정 당사자의 공증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제도 이용 유인을 높일 방식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전국단위로 확대 적용 및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177) 법무부도 형사조정 성립률 제고 방안으로서 형사조정과 공증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178) 중부일보, 「대전지검 비대면 원격 형사조정 첫 시행 '호응'」, 2020. 11. 3.

## (2)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1135 - 300)

### ▢ 계획안 개요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1135-300)’은 범죄피해자 상대 상담과 경제·의료지원 등을 제공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를 지원하고,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치유 지원시설인 ‘스마일센터’의 위탁운영을 지원하며, 범죄피해자에게 치료부대비용 등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다양한 경제·심리·법률적 지원을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 및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원기관 연계협력 강화 및 피해자맞춤형 지원체계를 실현하려는 사업임.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63억 8,100만원(29.8%) 증액된 278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 | 2025 | | 2026 | | |
|---|---|---|---|---|---|---|
| | 결산 | 당초계획 | 수정계획 (A) | 계획안 (B) | 증감 (B-A) | (B-A)/A |
| ○ 기능별 분류(합계) | 19,914 | 21,442 | 21,442 | **27,823** | 6,381 | 29.8 |
| ·원스톱솔루션센터 설치·운영 | 2,552 | 1,343 | 1,343 | **1,085** | △258 | △19.2 |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운영 | 4,477 | 5,267 | 5,267 | **5,488** | 221 | 4.2 |
| ·스마일센터 운영 | 7,913 | 8,571 | 8,571 | **11,410** | 2,839 | 33 |
| ·범죄피해자 치료비, 생계비 | 3,255 | 4,413 | 4,413 | **4,804** | 391 | 8.9 |
| ·범죄피해자 간병비 등 | 555 | 708 | 708 | **708** | 0 | - |
| ·범죄피해 현장정리 | 429 | 409 | 409 | **409** | 0 | - |
| ·범죄피해 법률구조 | 412 | 412 | 412 | **412** | 0 | - |
| ·범죄피해자지원사업 | 324 | 320 | 320 | **317** | △3 | 0.9 |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 - | - | - | **3,190** | **3,190** | 신규 |

### ▢ 원스톱솔루션센터 설치·운영의 성과관리 시스템 마련 필요

법무부 인권국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지원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 인력이 입주한 '원스톱솔루션 센터' 설치를 추진하면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2024년 7월 서울에 첫 센터(이하 '서울 센터')[179]를 설립하였음.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2억 5,800만원(19.2%) 감액된 10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원스톱솔루션센터 설치 · 운영 계획안(비목별)>**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 2024 | 2025 | | 2026 | | |
|---|---|---|---|---|---|---|
| | 결산 | 당초계획 | 수정계획 (A) | 계획안 (B) | 증감 (B-A) | (B-A)/A |
| · 원스톱솔루션센터 설치 · 운영 | 2,552 | 1,343 | 1,343 | 1,085 | △258 | △19.2 |
| -상용임금(110-03) | 101 | 211 | 211 | 232 | 21 | 10 |
| -일반수용비(210-01) | 300 | 134 | 134 | 107 | △27 | △20.1 |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48 | 228 | 228 | 178 | 42 | 84 |
| -특근매식비(210-05) | 3 | 2 | 2 | 2 | 0 | - |
| -임차료(210-07) | 254 | 291 | 291 | 241 | △50 | △17.2 |
| -유류비(210-08) | - | 5 | 5 | 3 | △2 | △40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53 | 174 | 174 | 160 | △14 | △8 |
| -복리후생비(210-12) | 2 | 3 | 3 | 3 | 0 | - |
| -일반용역비(210-14) | 33 | - | - | - | 0 | - |
| -관리용역비(210-15) | - | 41 | 41 | 41 | 0 | - |
| -국내여비(220-01) | 10 | 15 | 15 | 15 | 0 | - |
| -사업추진비(240-01) | 32 | 32 | 32 | 32 | 0 | - |
| -일반연구비(260-01) | - | 100 | 100 | - | △100 | △14 |
| -고용부담금(320-09) | 10 | 41 | 41 | 46 | 5 | 12.2 |
| -설계비(420-02) | 70 | - | - | - | 0 | - |
| -공사비(420-03) | 1,284 | - | - | - | 0 | - |
| -감리비(420-04) | 56 | - | - | - | 0 | - |
| -자산취득비(430-01) | 296 | 66 | 66 | 22 | △44 | △66.7 |

179) 대방역 인근 '서울시 여성플라자' 3층 소재.

현재 서울센터는 주무기관인 법무부와 14개 참여기관(검찰, 경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을 포함하여 소속 인력 51명이 상주하고, 그 중 법무부 소속 인원은 12명(공무원 6명, 공무직 6명)임.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기에 상담사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수요를 파악하여 참여기관 담당자들과 연계하면 법률, 심리치료, 고용, 금융 상담은 서울센터에서 직접 지원하고, 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주거지원, 안전조치, 불법영상 삭제 등의 서비스는 원소속 기관(검찰청, 경찰청, 서울시 등)으로 연계 및 사례관리를 하는 방식임.

**<원스톱솔루션 센터 참여기관 및 지원내용>**

| 참여기관 | 인원 수 | 지원내용 |
|---|---|---|
| 검찰 | 12 | · 범죄피해구조금 안내 · 접수<br>·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 경제적지원(5주 이상) 안내 · 접수<br>· 이전비 지원, 주거지원 등 안내 · 접수 |
| 경찰 | 2 | · 위치확인장치 지급,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임시숙소 제공<br>· 민간경호 지원 등 |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2 | · 취업지원, 실업급여 지원 연계<br>· 직업상담, 직업교육 지원 등 |
| 서울특별시 복지지원팀 | 1 | · 기초생활수급 관련 안내 · 연계<br>· 긴급복지 지원, 사회적약자 지원 복지 안내 · 연계 등 |
| 서울특별시 일자리센터 | 2 | · 서울시 보유 일자리 상담, 구인구직 등록(직업상담사) |
|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안심센터 | 1 | ·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br>· 수사 · 재판 모니터링, 신뢰관계인 동석, 법정동행 등 지원<br>· 법률지원, 심리상담 지원, 의료지원 등 |
| 서울특별시 스토킹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 13 | · 법률지원, 심리치료 지원, 의료지원<br>· 보호시설 연계, 이주비 지원<br>· 민간경호 지원 등 |

| | | |
|---|---|---|
| 법률홈닥터 | 6 | · 범죄피해자 법률적 문제 상담<br>· 법률서류 작성 지원<br>· 복지서비스 연계 |
| 진술조력인 | 2 | · 성폭력 · 아동학대 · 장애인학대 · 인신매매범죄 등 피해자의 의사소통 중개 · 보조(19세 미만, 장애 등으로 의사소통 어려운 경우)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 | · 범죄피해자의 민 · 가사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
| 피해자 국선변호사 | 1 | · 범죄피해자 법률적 문제 상담<br>·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1 | ·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사례관리 실시<br>· 각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원스톱 전담인력을 통한 전국 연계<br>· 긴급생계비, 치료비, 학자금,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5주 이하)<br>· 수사, 재판기관 동행 · 모니터링 등 |
| 스마일센터 | 2 | ·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br>· 스마일센터 임시숙소 연계 |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br>(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하나미소금융재단) | 2 |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저리의 서민금융상품 대출, 신용회복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등 제공 |
| **총 인원** | **51** | **-** |

자료: 법무부

우리 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결산검토보고서에서는 원스톱솔루션 센터가 접수건수를 제외한 범죄유형별 센터 이용자 수, 지원종류별 서비스 지원건수, 피해자특성(연령별, 성별) 및 지원현황, 이용자만족도 조사 등 센터 운영의 성과와 관계된 통계를 집계·분석하지 않아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180] 그러나, 위와 같은

180) 법제사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토보고서(법무부소관)」, 383~384면

지적에도 2026년도 계획안에는 2026년도부터 센터 운영 성과와 관련된 통계의 집계·분석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지금도 센터 운영의 성과 관련 통계가 집계·분석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2026년도부터 3년간 추진되는 사업인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의 2년차 사업인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사업'이 2027년도 중에 완료되면 그 후 성과 관련 통계를 집계·분석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는 원스톱솔루션센터장에게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관련 통계 관리·분석에 관한 업무를 명시적으로 분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서울센터의 운영 초기부터 성과 관련 통계를 집계·분석해야 추후 추가 개소 등에 대한 의사결정 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몇 년이 소요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비로소 성과 측정을 시작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법무부는 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기 이전에도 한시적으로 서울센터의 성과 관련 통계를 집계·분석할 수 있도록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소요 예산안을 반영하여야 할 것임.

**▢ 원스톱솔루션센터 추가 개소 예산 미반영으로 인한 사업 차질 우려 해소 필요**

법무부는 원스톱솔루션센터를 전국 지역 거점에 확대 설치(추가 개소)하기로 하면서 여성폭력 범죄 신고율, 범죄 발생률, 피해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을 선정하고, 서울센터의 운영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참여 여부 및 예산·직제 등에 대하여 협의를 마친 후 설치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음. 구체적으로 2026년도 계획안에 서울센터 개소시(2024년) 단가를 적용하여 약 31억원[181]의 추가 개소 예산을 편성하고, 2025년 12월에 센터 개소 관련 직제 및 예산을 확보하고 유관기관 참여 확대를 협의한 후, 2026년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장소 및 참여기관 선정, 센터 시설 공사에 착수하여 동년 12월에 센터 첫 추가 개소를 완료할 계획이었음. 이후에는 해마다 한 개씩 추가 개소를 진행하여 2029년까지 전국에 총 5개의 원스톱솔루션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였음.

**<원스톱솔루션 센터 추가 개소 계획(안)>**

| 세부사업 | 25년 | 26년 | 27년 | 28년 | 29년 |
|---|---|---|---|---|---|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지역 주요 거점 추가 개소 | · 센터 추가 개소 관련 직제 · 예산 요구(12월)<br>· 유관기관 참여 유도 · 확대 협의(12월) | · 장소 및 참여기관 선정, 센터 시설공사 (1~11월)<br>·통합지원센터 개소(12월) | · 지역 거점 센터 추가 개소 지속 추진 (12월) | · 지역 거점 센터 추가 개소 지속 추진 (12월) | · 지역 거점 센터 추가 개소 지속 추진 (12월) |

자료: 법무부

그런데, 위와 같은 추가 개소 관련 예산은 2026년도 계획안에 반영되

181) 법무부에 따르면 설치비 2,015백만원, 운영비(6개월) 962백만원, 인건비(6개월) 123백만원임.

지 아니하였음.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6년도 예산으로는 추가 개소 관련 활동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게 되어 추가 개소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전국에서 서울센터만 장기간 운영될 경우 서울과 다른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 만일 추가 개소 관련 예산이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서울센터의 운영 성과 관련 측정 결과의 부재 및 추가 개소 계획의 미진함[182]이라면 향후 추가 개소 자체의 타당성 확보가 미흡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예산 미반영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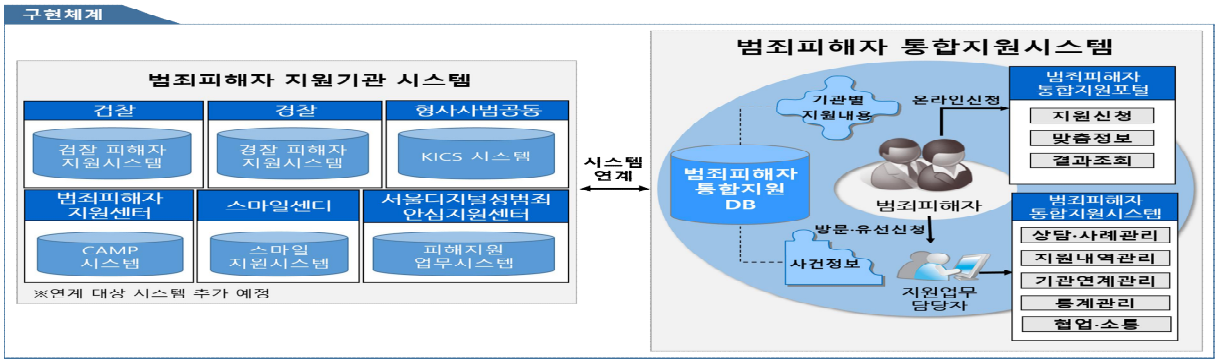
따라서, 법무부는 서울센터의 객관적 운영성과를 즉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및 구체적이고 명확한 추가 개소 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등 추가 개소 관련 예산이 적기에 편성 및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임.

###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일정 지연 예상에 따른 예산액 조정 필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은 정부부처, 산하·민간단체, 지자체 등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서비스를 서로 연계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임. 예컨대, KICS(형사사법포털) 및 검찰, 경찰, 범죄피

182) 현재 법무부에서는 추가 개소 관련 예산이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음.

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등 20여 개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를 통해 지원 업무를 효율화하고, 통합 사례관리를 통하여 지원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며, 대국민 포털을 통한 온라인 피해상담 및 통합피해지원 서비스 구축으로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자료: 법무부

본 사업은 3년 동안 총 3차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업무시스템, 대국민 포털 및 시스템 연계 구축(1차, 2026년 예정)',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2차, 2027년 예정)', '챗봇형 민원 지원 서비스 구축(3차, 2028년 예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1차 사업 예산은 2026년도 계획안에 31억9,000만원으로 신규편성되었으며,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6년도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비목 | 내용 | 산출 근거 | 총금액 (단위: 백만원) |
|---|---|---|---|
| 일반 연구비 | 통합지원 시스템 | 응용기능 개발(FP): 753,722,795원<br>DB 설계 및 이관: 277,320,113원 | 1,737 |

| | | | |
|---|---|---|---|
| (260-01) | 개발비 | **연계 컨설팅 및 개발: 325,367,096원**<br>음성녹취 개발: 99,000,000원<br>문자판독 개발: 283,000,000원<br>※ 2024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 |
| | 감리 | ※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름 | 246 |
| | 개인정보 영향평가 |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가산정 가이드」(2024) 준용 | 107 |
| 자산 취득비 (430-01) | 하드웨어 구축비 | 센터망 연계 등 네트워크 공사: 30,000,000원<br>**※ 서버, DB 등 국정자원관리원 입주 예정** | 30 |
| | **소프트웨어 구축비** | **업무 자동화(음성인식, 문자판독) 솔루션 도입: 220,000,000원**<br>**업무용 · 시스템 SW도입: 850,000,000원**<br>**문서협업, 검색엔진, 사용자인증, DBMS, DB접근제어, DB/서버 모니터링 등** | **1,070** |
| **합계** | | | 3,190 |

자료: 법무부

한편,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이전될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 중 '시스템 소프트웨어(SW)' 구입 예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중앙관서와 협의를 거친 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예산안에 계상하도록 요구하여야 함.[183] 본 사업의 경우 서버, 데이터베이스(DB) 등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될 예정이므로, 법무부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총 SW 구입 소요 총 19억 5,006만 5,200원 중 시스템 SW(WAS[184], DB, DBMS[185]) 구입액인 3억 3,040만원은 2026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음. 또한 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심사

183)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46면

184)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Web Application Server)로, 인터넷상에서 HTTP를 통해 사용자 컴퓨터나 장치에 애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 실행환경과 DB 접속기능, 업무처리 비즈니스 로직 기능 등을 제공 또는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임.

185)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atabase management system)으로, 다수의 사용자들이 데이터베이스 내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도구의 집합임.

과정에서 의무적 감액 대상이 아닌 업무용 SW[186]로서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구축에 관련된 핵심 프로그램인 EBS/EAI Adaptor[187] 구입액 소요 5억 3,000만원도 미반영된 것으로 보임.[188] 이에 따라 SW 구입비는 법무부가 당초 제출한 총 SW 구입 소요 대비 약 9억원 감액된 10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당초 소요>**

| 구분 | 내용 | | 소요예산(원) | 비고 |
|---|---|---|---|---|
| S/W | 업무용 SW | 협업시스템 | 214,500,000 | |
| | | 사용자인증 | 34,800,000 | |
| | | UI/UX | 149,248,000 | |
| | | 레포팅툴 | 65,120,000 | |
| | | 키보드 | 246,400,000 | |
| | | 보안 | 67,900,000 | |
| | | DB 암호화 | 54,583,200 | |
| | | DB 접근제어 | 127,600,000 | |
| | | 시스템 접근제어 | 4,554,000 | |
| | | 검색엔진 | 151,360,000 | |
| | | **EBS/EAI Adaptor (시스템연계 솔루션)** | **320,000,000**<br>**210,000,000** | **2026년도 예산안에서 제외** |
| | | 음성인식(STT) | 110,000,000 | |
| | | 자동문서 인식 솔루션(RPA) | 110,000,000 | |
| | **시스템 SW** | **WAS** | **28,000,000** | **2026년도 예산안에서 제외** |
| | | **DB** | **56,000,000** | |
| | | **DBMS** | **246,400,000** | |
| **합계(부가세 포함)** | | | 1,950,065,200 | |

자료: 법무부 제출 자료로, 당초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정 당국에 제출한 소요임.

186) 시스템 SW를 제외한 모든 SW

187) 기관 내외의 여러 통합플랫폼이나 다른 어플리케이션 간의 통신 프로토콜, 데이터 포맷 등을 변환 또는 연결하여 연계를 활성화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임.

188) 법무부에 따르면, 정보화사업 정부 예산안 편성 결과는 당초 소요 대비 감액 시 감액 사유 및 세부 감액 내역은 통보되지 아니함.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감액분 총액에 대해서만 통보받아 구체적 감액 내역은 알지 못하는 상황임.

법무부에 따르면 EBS/EAI Adaptor는 유관기관 간 서비스 연계 구축을 위한 필수 요소로, 구입 예산이 미반영된 현재의 2026년도 계획안에 의하면 당초 1차 계획에 포함된 '유관기관 간 시스템 연계 구축 사업'은 연내 추진이 불가하고 사업추진 시점을 2027년도 이후로 미루어야 함. 이에 따라 일반연구비(260-01) 통합지원시스템 개발비 내역 중 서비스 연계 구축 관련 인건비 등을 포함하고 있는 '연계컨설팅 및 개발' 예산 3억2,536만7,096원도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189]

'유관기관 간 시스템 연계 구축'은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 간 데이터 공유 및 지원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이를 기반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을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오프라인 플랫폼인 '원스톱 솔루션 센터' 운영의 내실화 및 확대에 큰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됨. 나아가 이러한 사업 추진 지연은 후속 사업인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지연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190] 서울센터 운영성과와 관련된 통계의 집계·분석 및 해당 통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할 추가 개소에 대한 의사결정 역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본 사업의 완전한 추진을 위한 필수 요소인 EBS/EAI Adaptor 구

189)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본 사업의 일반연구비 중 시스템개발비에는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음.

190) 법무부는 2027년도에 '유관기관 간 서비스 연계 구축'과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정보화사업의 경우 사업 자체의 복잡성 및 사업추진 과정상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들로 인하여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입장의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입 예산을 2026년도 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봄.